



AURI-정책-2012-4

##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

염철호 Youm, Chirl-Ho  
임유경 Lim, Yoo-Kyoung

(auri)

AURI-정책-2012-4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

지은이: 염철호, 임유경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2년 9월 8일, 발행: 2012년 9월 8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7,000원, ISBN: 978-89-97468-19-5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연구책임

염철호 부연구위원

| 연구진

임유경 연구원

| 연구보조원

양승철 인턴연구원, 이규철 조사원

---

| 내부연구심의위원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이민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외부연구심의위원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권문성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연구자문위원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소장

위진복 유아이건축사사무소 소장

양규응 법무법인 봄 대표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최교식 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이남식 대한건축사협회 본부장

류치열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장

김홍수 대한건축사협회 선임연구원

박재범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연구팀장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건축설계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노동 집약적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국가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육성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간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설계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특수구조 및 설비, 리노베이션, 도시설계,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트 등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분야화한 영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국민 건축서비스로 건축설계업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소규모 업체의 운영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 건축 사사무소 또한 국내 초고층 프로젝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해외 유명업체가 디자인을 수행하고 법규검토나 협가, 실시설계 등 현지 업체 수준의 업무만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축설계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축설계자가 설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그간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

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주제도가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자인적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를 육성하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적과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설계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가는 건축설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축설계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이 연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함께 요청 받은 건축사법인 제도 도입방안은 제도화를 위한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부록으로 포함하였음을 밝혀 둔다.

##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계 및 발주현황

건축설계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각 중앙부처 및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선 설계공모방식의 경우, 국토부, 조달청, 행안부 등이 각각 별도의 운영지침 등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격심사 관련 기준 또한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용역금액에 따라 능력과 가격의 평가비중이 다르며, 전체적으로 용역금액 10억 미만은 능력점수에 비해 가격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괄입찰방식은 그간 심의기준 강화로 무원칙적인 적용사례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현황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건축설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공건축설계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설계비 2억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2억 이상은 PQ방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한경쟁방식과 일반경쟁방식으로 구분할 경우, 실적이나 지역에 조건을 둔 제한경쟁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만이 설계용역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창의력·기술력 중심의 발주제도 보다는 편의 위주,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3장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설계공모는 건축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법에 설계공모 장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충분한 공모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이며, 과도한 제출물 요구로 참여자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설계공모를 대신하면서 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발주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에서는 설계안을 뽑는 설계 공모와 구분하여 설계자를 뽑는 프로포절 방식을 도입·운영 중이다. 프로포절 방식에서는 제안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A3 용지 2매 정도에 제안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과도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GSA에서는 Design Excellence Program을 운용 중인데 이 또한 제안서의 과도한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설계자의 포트폴리오 및 설계접근방법의 심사, 인터뷰 등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적으로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설계공모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제안공모방식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제안공모방식과 유사한 기술제안서 평가, 아이디어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 프로포절 방식, Design Excellence Program을 분석하여 제안공모방식의 적용대상, 절차, 운영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단계 공모방식을 활성화하고 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공모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행 각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설계공모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 제4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사업수행능력 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 보다는 가격점수에 의해 설계자가 결정되고 있으며,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은 창의성을 요하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사용역수행실적, R&D 투자실적, 신용도 등이 소형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근거법의 우선 적용대상인 지식서비스산업에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가격입찰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서 수행 능력의 평가비중을 가격점수평가비중에 비해 상향조정하고, 건축설계의 특성과 용역비 규모를 감안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설계의 특성과 업계의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도한 평가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설계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신진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설계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에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중 추진된 5개 사업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5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해 LH공사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강남 보금자리주택 A4블록을 함께 검토하였다.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로는 우선 공공건축 사업에 신진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신진건축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됨으로써 기존 설계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한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 및 참여자 자격기준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의 질 저하 및 업체의 영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상당 수 사업들이 설계공모 방식의 차별화 측면에서는 미흡했으며, 발주처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이 신진건축사 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자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신진건축사 참가 확대를 위한 공모 절차 및 제출물 등의 간소화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자 선정 보다는 도시와 건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고 신진건축사의 사기진작과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설계공모에서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그간 건축설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가격입찰방식 등의 개선방안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진행하는 수시과제로 발주제도 전반을 다루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충분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보다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설계업체 현황과 건축사의 실적·경력 현황 등에 대한 전수적인 현황파악과 발주처, 설계자 등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발주처가 실제 발주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제안공모방식은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일정 규모 이상에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하거나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건축설계, 발주제도,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TABLE OF CONTENTS

## 차 례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
3. 연구의 방법 .....	6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	7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	7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10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	11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16
5) 건축사무소의 빙익빈 부의부 구조 심화 .....	18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계 및 발주현황 .....	21
1. 발주방식별 법령현황 .....	21
1) 설계공모방식 .....	23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방식 .....	27
3) 일괄입찰방식 .....	31
4)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34
2. 설계용역 발주 현황 .....	36

<b>제3장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b>	<b>39</b>
1.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	39
1) 설계공모 발주시례 분석 .....	39
2)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	41
2. 제안공모방식 도입방안 .....	45
1) 미국과 일본의 제안공모 방식 .....	45
2) 제안공모방식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	59
3)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 .....	65
4) 제안공모방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 .....	75
3. 기타 개선방안 .....	82
1) 2단계 공모방식 활성화 .....	82
2)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도입 .....	83
4. 설계공모방식 개선을 위한 운영지침 개선방안 .....	85
<b>제4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b>	<b>99</b>
1. 현행 가격입찰방식의 문제점 .....	99
1) 사업수행능력 평가사례 분석 .....	99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의 문제점 .....	103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문제점 .....	106
3. 가격입찰방식의 개선방안 .....	108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	108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	112
<b>제5장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방안 .....</b>	<b>113</b>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개요 .....	113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	113
2) 추진방식 .....	115
3) 대상 프로젝트 개요 .....	117

2. 시범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	119
1) 모니터링 수행방안 및 주요 검토 사항 .....	119
2)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및 관련사례 사업별 추진 현황 .....	121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종합 분석 .....	147
4) 시범사업 운영 성과 .....	155
5)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운영의 한계 및 문제점 .....	157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개선방안 및 장기적 추진방안 .....	160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개선방안 .....	160
2) 신진건축사 발굴 및 육성 정책의 장기적 추진방안 .....	162
<b>제6장 결 론 .....</b>	<b>167</b>
1. 연구의 결론 .....	167
2. 향후 과제 .....	172
<b>참고문헌 .....</b>	<b>173</b>
<b>SUMMARY .....</b>	<b>176</b>
<b>부록. 건축사법인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다양화 방안 .....</b>	<b>179</b>

## 표차례

[표 1-1] 등록 건축사사무소의 규모별 개수와 비율 .....	18
[표 1-2]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건설기술자 평균보유인원 .....	19
[표 1-3]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평균 신축허가면적 비교 .....	19
[표 2-1] 건축설계 발주관련 법령 및 지침 .....	21
[표 2-2]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기준 비교 .....	24
[표 2-3]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	27
[표 2-4]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28
[표 2-5] 용역적격심사평가 방식 .....	30
[표 2-6] 기술자평가기준 .....	30
[표 2-7] 기술제안서평가기준 .....	30
[표 2-8] 발주공사유형 ①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32
[표 2-9] 발주공사유형 ②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32
[표 2-10] 발주공사유형 ③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33
[표 2-11] 발주공사유형 ④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33
[표 2-12]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33
[표 2-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방식 .....	34
[표 2-14]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방식 .....	35
[표 2-15]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07.01~'09.08) .....	36
[표 2-16] 2억 이상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07.01~'09.08) .....	37
[표 2-17] 2억 미만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07.01~'09.08) .....	37
[표 2-18]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최근 6개월) .....	37
[표 2-19] 2억 이상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최근 6개월) .....	38
[표 2-20] 2억 미만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최근 6개월) .....	38
[표 2-21] 일반경쟁방식과 제한입찰방식 분석 (최근 6개월) .....	38

[표 3-1] 설계공모에서의 자격(실적)제한 사례	41
[표 3-2]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방침 및 절차	54
[표 3-3]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각 단계별 제출도서 및 규정사항	56
[표 3-4]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	57
[표 3-5]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팀 인터뷰 평가 기준	58
[표 3-6] 기존 발주방식의 유형과 문제점	59
[표 3-7]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60
[표 3-8] 기존 발주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공모 방식의 효과	61
[표 3-9]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적용 대상	63
[표 3-10] 제안공모 방식 적용 대상	64
[표 3-11] 각 발주방식의 절차	67
[표 3-12] 제안공모방식 제안요청서의 포함사항	69
[표 3-13] 일본 프로포절 방식에서의 요청 과제 사례	72
[표 3-14] 일본 프로포절 방식에서의 제안서 사례	73
[표 3-15]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평가배점	75
[표 3-16]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관련 평가항목	75
[표 3-17] 일본 프로포절 방식의 참가표명서에 대한 평가방식의 평가항목	76
[표 3-18] 수행계획 및 방법 관련 평가항목	76
[표 3-19]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제출물 내용과 형식	76
[표 3-20] 제안공모에서의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관련 평가항목	78
[표 3-21] 제안공모에서의 수행계획 및 방법 관련 평가항목	79
[표 3-22] 제안공모방식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예시	81
[표 3-23] 설계공모 자격제한 금지 관련 지침개정 방안	85
[표 3-24] 설계공모기간 관련 지침개정 방안	86
[표 3-25] 심사위원 명단 공개 관련 지침개정 방안	87
[표 3-26] 제출물 간소화 관련 지침개정 방안	88
[표 3-27] 심사위원 자격 관련 지침개정 방안	89
[표 3-28] 입상작 비용 지급 관련 지침개정 방안	92
[표 3-29] 제안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개정 방안	95
[표 3-30] 제안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각 설계공모 관련 지침 재편방향	96
[표 4-1]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평가기준 구성 비교	100

[표 4-2] 사업책임기술자의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100
[표 4-3] 사업책임기술자 평가항목의 세부배점기준 비교	101
[표 4-4]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101
[표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의 세부배점기준 비교	102
[표 4-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102
[표 4-7]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방안	108
[표 4-8] 용역 규모별 PQ적용기준 개선안	109
[표 4-9] 건축설계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예시	110
[표 4-10] 건축설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예시	110
[표 5-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현황	117
[표 5-2]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모니터링 주요 대상	120
[표 5-3] 인천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및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 사업개요	121
[표 5-4]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1단계 제안서 도서작성 지침	123
[표 5-5]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2단계 작품심사 도판 포함 사항	123
[표 5-6]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설계설명서 포함 사항	124
[표 5-7]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설계 평가기준(제안서 심사)	124
[표 5-8]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설계 평가기준(2차 작품심사)	125
[표 5-9]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블록 사업개요	126
[표 5-10]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1단계 제출물 세부내용	127
[표 5-11]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2단계 제출물 종류	128
[표 5-12]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1단계 제안서 평가기준	128
[표 5-13]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2단계 설계 평가기준	129
[표 5-14]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	131
[표 5-15]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1단계 제출물 세부내용	132
[표 5-16]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2단계 제출물 종류	133
[표 5-17]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1단계 제안서 평가기준	134
[표 5-18]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2단계 설계 평가기준	134
[표 5-19] 자인정수장 환경개선사업개요	136
[표 5-20]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공모안 제출 구비서류 및 목록	137
[표 5-21]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공모 평가기준	138
[표 5-22] 한국도로공사 동충주 영업소 설계공모 개요	140

[표 5-23] 동종주 영업소 설계공모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기준	141
[표 5-24] 동종주 영업소 설계공모 심사용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141
[표 5-25] 동종주 영업소 평가기준 및 배점	141
[표 5-26]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사업개요	143
[표 5-27]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사업 1단계 제출물 종류	145
[표 5-28]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사업 2단계 심사 제출물 종류	145
[표 5-29] 설계 공모의 목표 및 방향	145
[표 5-30] 설계 공모의 평가 기준	145
[표 5-31] 1단계 과정과 2단계 과정 공모절차 비교	147
[표 5-32] 사업별 심사방식 비교	148
[표 5-33] 응모자 발표 기회 유무	149
[표 5-34] 설계비 보상 규정	150
[표 5-35] 사업별 공모절차 및 심사기준 비교	150
[표 5-36] 가점 및 감점 기준 비교	151
[표 5-37] 사업별 공모 제출물 종류	151
[표 5-38] 1단계 제안서 내용 및 표현 방식 비교	152
[표 5-39] 제출물별 조감도 허용 여부	153
[표 5-40] 제출물별 색채 사용 허용 여부	153
[표 5-41] 2단계 제출물 중 모형 양식 비교	154
[표 5-42] Europan 주제(1회~12회)	163
[표 5-43] Europan(1회~10회) 당선 프로젝트 중 시행건수 합계 및 비율	164
[표 부록 1-1] 전문직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시기	180
[표 부록 1-2] 건축사법 제5장(건축사사무소 등)의 조항	180
[표 부록 1-3] 건축사사무소 회사 형태 관련 건축사법 제·개정 연혁	182
[표 부록 1-4] 전국 건축사사무소 수 현황	183
[표 부록 1-5] 건축사 업무실적신고 방법 및 실적인정 범위	184
[표 부록 1-6] 건축사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 사항	189
[표 부록 1-7] 회사 형태와 전문직 법인과의 관계	191
[표 부록 1-8] 법무법인 및 합명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 도입 현황	192
[표 부록 1-9] 법무법인 및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 도입 현황	193
[표 부록 1-10] 유한책임회사의 개요	194

[표 부록 1-11] 법무법인 관련 변호사법 개정 연혁 .....	196
[표 부록 1-12] 변호사법 법무법인 관련 조문(법률 제10922호, 시행 2012.1.26) .....	196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	5
[그림 1-2] QBS 프로세스 도입 배경 .....	13
[그림 1-3] QBS에 의한 발주절차 .....	14
[그림 3-1] 프로포절 방식과 현상공모 방식의 비교 .....	46
[그림 3-2] 프로포절 방식의 절차 .....	47
[그림 3-3] 제안서에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 예시 .....	48
[그림 3-4] 제안서에 사용 가능한 이미지 예시 .....	48
[그림 3-5] 프로포절 방식의 심사회장 및 질의응답 모습, 최종 당선 설계 도판 .....	49
[그림 3-6]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절차 .....	53
[그림 3-7]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 .....	65
[그림 3-8]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	68
[그림 3-9] 설계범위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방식 .....	83
[그림 3-10]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입찰방식의 도입 개념 .....	84
[그림 5-1] 청라 · 영종도서관 공모 절차 .....	122
[그림 5-2] 청라 · 영종도서관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122
[그림 5-3] 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및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	126
[그림 5-4] 대구 테크노폴리스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127
[그림 5-5]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설계공모 공개심사 장면 (2012.9.12) .....	130
[그림 5-6]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	130
[그림 5-7]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공모 절차 및 일정 .....	132
[그림 5-8]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	135
[그림 5-9] 자인정수장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137
[그림 5-10] 자인정수장 환경개선사업 설계공모 당선작(가우스건축사사무소) .....	139
[그림 5-11] 동충주 영업소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140

[그림 5-12] 동충주 영업소 및 툴게이트 당선작 조감도	142
[그림 5-13] 강남 보금자리주택 A4블록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144
[그림 5-14] Europan(1회~10회) 당선 프로젝트 중 시행 건수	163
[그림 부록 1-1] 법무법인에서의 변호사 업무	197
[그림 부록 1-2] 법무법인 조직도 및 사원의 책임 유무	198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 지식서비스사업으로서 건축설계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 건축설계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국가차원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임

※ 건축설계산업 부가가치율은 66.8%(건설산업 44.6%, 서비스업 59.7%), 총 투입액 중 인건비 비중은 41.8%(건설 27.0%, 음식·숙박업 18.6%), 생산액 10억원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17.1인(금융·보험 10.4인)임

- ‘건축기본법’ 마련 및 국가 및 광역 지자체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건축문화의 진흥과 건축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설계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친환경, 특수구조 및 설비, 리노베이션, 도시설계,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트 등 건축설계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의 고도화·다양화

-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분야화한 영역을 발굴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국민 건축서비스로 건축설계업무를 발전시킬 필요

#### □ 건축설계산업의 열악한 산업구조

-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지속되어 왔음
  - 사업체 당 매출액은 엔지니어링 산업이 건축설계 산업에 비해 2.8 배 높은 수준이며, 1인당 매출액에 있어 엔지니어링 산업은 81백 만원, 건축서비스산업은 75백만원으로, 특히 건축설계관련 서비스 업이 7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sup>1)</sup>
-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사무소 수가 전체의 1.3%임에도 총 매출액 규모의 40% 정도를 독식하고 있어 나머지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sup>2)</sup>
  - 10,000여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중 직원 1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순위 1,500위 이하의 사무소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sup>3)</sup>
- 대형 건축사사무소 또한 국내의 초고층 프로젝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해외 유명업체가 디자인을 수행하고 법규검토나 허가, 실시설계 등 현지업체 수준의 업무만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축설계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 시급함
  -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획설계를 외국 건축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건축계의 자성과 반대 여론 형성 (11.11.19 동아일보 “초고층 시공 세계 1위 한국, ‘집안 설계’는 외국인 잔치”)

1)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p.74

2)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p.68

3) 전영철(2010),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

- 발주제도가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그간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주제도가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현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가 진행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두면서 건축설계가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와 건설기술용역을 선정하는 행위와 구분없이 진행
    - 해외의 경우, 건축설계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가격의 저렴함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여전히 설계자 선정에 있어 가격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
  - 참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발주제도
    - 설계공모, PQ, 텐키 등 참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력이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형건축사사무소나 신진건축사는 공모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
  - 디자인적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을 정착시키고 낙후된 건축설계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적과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전환할 필요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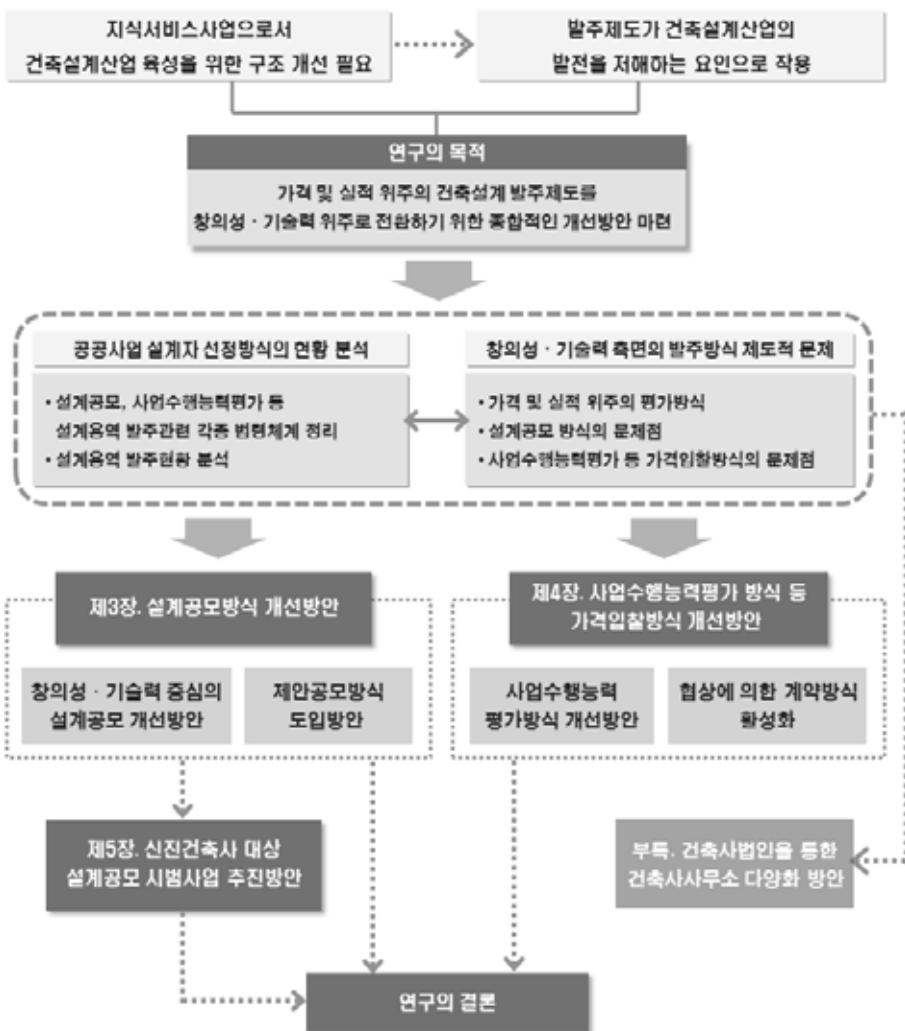
- 건축설계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가는 건축설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축설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실적 위주의 건축설계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2) 연구의 내용

- 공공사업 설계자 선정방식의 발주체계 분석 및 현황파악
  - 공공사업의 설계자 선정방식 관련 법령현황을 정리하고, 최근의 설계용역발주현황 실태를 분석
-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검토
  - 설계공모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창의적인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안공모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기타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을 포함한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검토
  - 최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사례 분석을 포함하여 가격입찰방식 관련 법령 등의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가격과 실적의 비중을 줄이면서 기술용역과 차별화된 창의성·기술력 관련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기준의 개정방안을 검토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방안 검토
  - 짧고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제시

- 건축사법인 제도 도입방안 검토 (부록)

- 법무법인 등 타 전문직 법인제도를 참고하여 개별 건축사가 법인화를 통해 건축설계 발주에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책임 하에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인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기본방향을 검토



[그림 1-1] 연구의 흐름

### 3. 연구의 방법

- 통계 및 문헌조사
  - 건축설계산업,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각종 연구보고서 등 정리
  - 소형건축사사무소의 문제점, 발주방식 등 제도적 문제점 관련 기사 및 학·협회 논의 내용 정리
-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 최근 6개월간 시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발주방식 특성 분석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관련 사업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 발주제도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 건설기술관리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 발주방식 관련 법제도 체계 정리·분석
  - 국토해양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각종 지침 및 평가 기준 등 정리·분석
- 해외사례 조사 · 분석
  - 일본과 미국의 발주체계 및 관련 법령 파악
  -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 및 미국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 제도 정리 및 시사점 도출
- 관련자 인터뷰 조사 및 자문회의 개최
  - 소형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사 대상 운영실태,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FGI실시
  - 연구자, 설계 실무자, 건축사협회, 관련 부처 등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 및 검토결과 검증

##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 □ 설계공모방식 관련

- 건축기본법 제정('09.07)
  - 법 제24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국토해양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10.01)
  -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제안서도 포함하여 설계공모의 방법을 다양화
  - 심사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 기타 공모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변경(건축설계경기→설계공모) 등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11.01)
  - 심사위원과 심사결과 공개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배점기준 조정을 통하여 심사의 실효성 제고
  - 친환경계획(저에너지·저탄소 계획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
  - 모형제작의 폐지 등 제출서류 간소화
  - 심사위원의 공모안 제출사와의 사전접촉 금지 및 심사결과를 사후 편파적으로 평가할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정('11.0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

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시행('12.04)
  -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전국 10개 사업의 설계공모 실시

#### □ 일괄입찰방식 관련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09.12)
  - 적용범위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추가
  -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에서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분리
-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10.04)
  -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턴키공사 발주남용 방지를 위한 성과평가관리체계 도입
  - 낙찰자 결정 시 지나친 설계품질 고려에 따른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 강구
  - 대안공사 발주방식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 초대형 공공공사 분할 발주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강화
  - 건설업체간 실질적 공동도급 운영을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
-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용어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10.07)
  - 기술제안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각각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변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에만 한정하던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10.12)
  -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을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
  -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을 허용
  - 규모기준 신설 (공동주택 및 학교 : 초고층 건축물만 가능, 다중 이용건축물 :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m<sup>2</sup>이상(막구조, 둠구조는 바닥면적 1만m<sup>2</sup>이상), 공용청사 : 연면적 3만m<sup>2</sup>이상)

#### □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관련

-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09.12)
  - PQ평가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
  - 평가항목을 업체현황, 신용도 등으로 가급적 단순화
  -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해외설계 실적, 설계VE가점 등 배제
  - 5억 미만 : PQ평가(참여기술자 등), 5~10억 : PQ평가 및 기술자 평가(설계팀 경력, 수행계획·방법 등), 10억 이상 : PQ평가 및 기술제안서 심사(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등)
-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 마련('10.02)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관련주체 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의 조기 활성화 도모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안 마련('12.08)
  - 'PQ 세부평가방법'을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5억 미만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 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 (시행령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하고 있는데, 건축계에서는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설계를 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설계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설계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설계공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특히 설계공모방식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지속
  - 우시용(1992), 한국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죄영배(1996), 건축설계 선정방식 및 설계경기에 관한 연구
  - 우경국(1996), 이제 현상설계는 하지 말자!
  - 우시용(2000), 현 설계경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7), 설계경기 및 기술공모방식 개선방안 연구
  - 주한종 외(2008), 국외 건축설계경기 관련기관 현황분석을 통한 건축설계경기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축설계 발주와 관련한 사항이 건설기술용역과 같이 다루어지면서 설계공모 보다는 가격 및 실적 위주로 발주가 진행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졌고,
  - 이에 따라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해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게 됨
  - 또한,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도 실천과제 중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방안으로서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시설물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시설물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

###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 ① 일본의 설계자 선정체계<sup>4)</sup>

- 일본에서는 공공건축의 설계는 결과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물품구입과 달리 설계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 □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 (1991년)

- 1991년 3월의 건축심의회 회답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은 물품구입 등과 같이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
  - “건축설계는 설계의 내용과 설계의 결과가 미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설계자에 의해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공청시설은 국민고유의 자산으로서 높은 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계료의 저렴함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을 적정히 심사한 후에 그 설계업무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 (1994년)

- 1994년 내각회의를 통과한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면서 경쟁적인 조달방식으로서 공사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채용하고, 설계·컨설팅업무에서는 공모형 방식을 채용할 것을 규정

##### □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 2005년에는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공

---

4) 염철호(2010),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제22호

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 시행

- 여기에서는 그간의 ‘가격만의 경쟁’에서 ‘가격과 품질에서 종합적으로 뛰어난 조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술제안을 요구하여 그 우열을 평가하고 보다 적절한 자와 계약함으로써 그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발주관련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조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한 자를 활용할 것을 규정
  - 공공기관 발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발주자 지원기관 인정제도’와 ‘공공기관 발주업무 지원 기술자 인정제도’를 지자체 단위별로 시행 중임
  - 특히 지원업무 중 기획단계의 기술심사 지원 업무로서 설계위탁을 위한 지침서 작성, 프로포절 등의 제출요강 작성, 기술심사 및 제안 평가(설계), 공사발주방식의 검토, 입찰조건 자료작성(설계)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
  - 또한, 국토교통성 및 지방정비국 영선부의 공공건축상담창구, 공공건축협회, (재)건축보전센터 등의 협회, 도도부현 담당부서, 관련 법인(건축기술센터, 주택공급공사 등)에서 공공공사 발주자 지원 상담창구를 운영 중임

## ②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 □ 브룩법과 QBS에 기반한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방식

- 미국의 경우, 41개 주에서 건축 서비스 관련 발주와 계약은 연방정부의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에 따른 자격조건기준 선정절차(Qualifications-Based Selection, QBS)를 운용하고 있음<sup>5)</sup>
- 브룩법의 주요내용은 건축서비스에 관한 발주와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

---

5) QBS와 관련한 사항은 2010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포럼의 김지엽 교수 발제자료 “미국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발주 및 계약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전혀 고려하지 말고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과 자격조건을 통해 입찰자를 선정하고 가격은 추후 협상으로 결정한다는 것임

- 연방정부가 건축서비스와 엔지니어링설계 서비스만을 위한 특별한 발주와 계약법(브룩법)을 도입한 이유는 건축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시공의 경우 초기 총공사비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의 조달과 마찬가지로 최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에 반하여,
  - 건축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주 전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비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정되는 건축가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능력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도 차이가 있고, 건축가에 따라 최종적인 설계안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임

#### USC Title 40, Chapter 11

##### 브룩 건축가-엔지니어 법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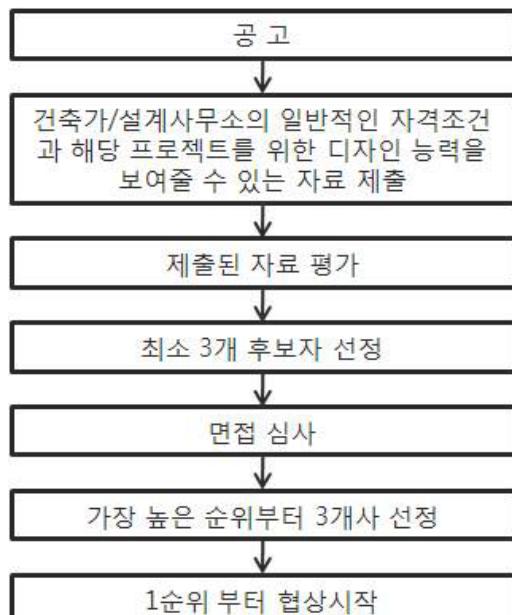
“미국연방정부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관한) 기본정책은 해당 건축서비스에 관한 모든 요구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요구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검증되는(demonstrated) 경쟁력(competence)과 자격조건(qualification)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임”

##### 자격조건기준 선정절차 (Qualification-based Selection Process)

[그림 1-2] QBS 프로세스 도입 배경  
※ 출처 : 김지엽(2010), “미국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발주 및 계약 관련 법과 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포럼 자료

## □ QBS에 의한 발주절차

- 건축서비스를 위한 공공발주는 해당 프로젝트의 개요와 작업범위, 선정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에 의해 시작
-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은 자신들의 매년 실적보고서를 비롯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 신청서들이 접수되면, 발주처는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자격, 그리고 경쟁력을 평가
- 평가를 통해 발주처는 평가점수가 가장 좋은 최소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면접심사를 통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결정
- 최종적으로 1순위부터 가격협상을 시작하여 설계비를 결정



[그림 1-3] QBS에 의한 발주절차

※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p.82

□ 공공발주와 관련한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규정<sup>6)</sup>

- FAR은 브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절차를 구현하고 절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칙으로 설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은 'Subpart 36.6'에 규정되어 있음
-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범위, 업체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설계 오류 또는 결함에 대한 책임, 공사비 예산 한계를 고려한 설계와 책임 등을 포함
- 특히 설계경기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
  -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조물 또는 기념관 등의 설계와 같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일 때
  - 개념 설계안을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설계경기가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

6) 김예상·한미파슨스(2009),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보문당, pp.56~67

####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에 따른 발주제도 개선 요구 증대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건축설계 발주와 관련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가시화
  -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이 추진되면서 건설기술의 정의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나, 건축설계 발주와 관련한 일괄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설계공모 등과 관련한 사항은 여전히 건설기술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더라도 건축설계발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음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서는 제9조 (발주방식의 다양화)에서 건축설계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발주방식과 공모방식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9조 (발주방식의 다양화)**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서비스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건축설계 발주와 관련한 제반사항 규정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구체적인 발주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진흥법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건축공사와 건축설계가 별개의 성격임을 강력히 규정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발주의 다양화와 공모방식의 필요성은 현재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건축설계발주방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대로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
  - 장기적으로는 건축공사와 건축설계는 전혀 별개의 발주방식임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축설계발주방식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관련 본 연구에서의 검토방향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체계 하에서 건축설계발주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기준의 개선방안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건축설계가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고 이를 규정하는 근거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건축설계에 대한 관련 조항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방안 제시

##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 □ 건축사사무소 규모의 양극화 심화

- 2012년 2월 말 현재 1인의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7,224개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인 이상의 건축사를 보유한 사무소는 111개(1.5%)로 나타남
- 1인 건축사사무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1.8%에서 2008년 92.7%, 2010년 94.0%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사사무소의 영세화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표 1-1] 등록 건축사사무소의 규모별 개수와 비율

도 부문	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 수	비 율										
전 국	1인	6,581	91.8	6,589	91.9	6,755	92.4	6,659	92.7	6,730	92.1	6,999	94.0
	3인 이상	163	2.3	156	2.2	142	1.9	127	1.8	119	1.6	121	1.6
서 울	1인	2,209	86.6	1,961	86.5	1,941	87.0	1,821	87.5	1,760	87.3	1,798	88.4
	3인 이상	91	3.9	88	3.9	84	3.7	72	3.5	67	3.3	69	3.4
경 기	1인	915	96.7	897	96.8	908	97.3	925	97.2	949	97.0	960	97.5
	3인 이상	5	0.5	6	0.6	5	0.5	5	0.5	5	0.5	6	0.5

※ 출처 : 김성홍(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작성, 월간 「건축사」 2009~2011년 자료 참조

### □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50% 정도가 건설기술자 1명 이하의 영세한 업체

- 대한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 숫자 집계 현황을 보면, 7,000번째 순위 이하의 건축사사무소는 1인 건축사이며, 5,000번 등위의 사무소들도 1명의 직원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국내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50%가 건설기술자 1명 이하의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sup>7)</sup>

7) 전영철(2010),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

[표 1-2]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건설기술자 평균보유인원

순위	평균인원
1 ~ 10	370.3
11 ~ 50	103.5
51 ~ 100	50.96
101 ~ 500	21.46
501 ~ 1,000	10.74
1,001 ~ 5,000	5
5,001 ~ 7,000	2.13
7,001 ~	1

\* 출처 : 전영철(2010)의 연구를 재구성.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자 전산자료

- 2009년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평균허가면적 통계와 평균설계비(2009년 기준 26,964원/m<sup>2</sup>)를 동시에 고려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현황을 예측하면 허가면적 1,500위 이하 8,000여개 사무소들은 거의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sup>8)</sup>
  - 1,001위~1,500위의 설계비는 약 3억1,275원, 약 30%의 용역비를 제하면 2억1,892원으로 직원 5명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신히 지급하고 건축사 본인의 생활비는 가져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

[표 1-3]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평균 신축허가면적 비교

허가면적 순위	평균 신축허가면적(m <sup>2</sup> )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10위(307.3인)	1,006,085	1,427,834	1,007,666	873,615	1,190,263
11~50위(130.3인)	388,900	487,328	463,668	328,380	284,441
51~100위(50.96인)	173,229	212,426	255,015	154,359	130,278
101~500위(21.46인)	64,674	70,118	93,094	56,524	44,119
501~1,000위(10.74인)	20,634	23,828	30,498	23,811	18,507
1,001~1,500위(5인)	11,210	13,250	16,388	14,695	11,599

8) 전영철(2010),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허가면적 순위	평균 신축허가면적(m2)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500~2,000위(5인)	7,348	8,860	10,744	10,317	8,084
2,001~3,000위(5인)	4,505	5,457	6,662	6,578	5,084
3,001~4,000위(5인)	2,377	3,000	3,666	3,723	2,700
4,001~5,000위(5인)	1,253	1,655	2,037	2,122	1,374
5,001~6,000위(2.13인)	658	855	1,126	1,171	639
6,001~7,000위(2.13인)	340	458	620	617	253
7,001~8,000위(1인)	127	233	346	310	74
8,001~9,000위(1인)	23	96	174	112	0
9,001~9,500위(1인)	0	0	65	0	0

※ 출처 : 세움터 허가전산자료(2010년 11월 5일). ( )는 2009년 기준 순위별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 □ 대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의한 공공건축시장 잠식

- 사무소 규모와 수행 프로젝트 규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교육·사회시설에는 대부분 대규모 이상의 사무소가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sup>9)</sup>
  - 통상적으로 아틀리에형 조직은 설계 인원 10~35명으로 구성되어 건축계의 디자인을 선도하는 참신한 작품을 다수 제시하고 있으나 대형화하고 있는 아파트나 정부 주도의 공공건축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실적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설계공모에서 요구되는 제출물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참가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면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대규모의 아파트설계, 중대규모의 공공발주 설계 등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9) 김성홍(2009), “2000년 이후 도시건축의 대형화와 건축사사무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0호, pp.121~130.

##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계 및 발주현황

1. 발주방식별 법령현황
2. 설계용역 발주 현황

### 1. 발주방식별 법령현황

- 건축설계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근거
- 또한 각 중앙부처 및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

[표 2-1] 건축설계 발주관련 법령 및 지침

발주방식	관계법령	기준, 지침 등
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li> <li>-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li> <li>-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대한 낙찰자 결정)</li> <li>-건축기본법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설계공모운영지침</li> <li>-행안부 설계공모 운영요령</li> <li>-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li> <li>-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li> </ul>

발주방식	관계법령	기준, 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시행규칙 제25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별표 9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li> </ul>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계약의 방법, 경쟁방법)</li> <li>-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li> <li>-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별표5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li> <li>-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li> <li>-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li> <li>-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li> <li>-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li> </ul>
일괄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li> <li>-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재부계약예규)</li> <li>-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부 고시)</li> <li>-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li> </ul>
협상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재부계약예규)</li> <li>-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 기준 (행안부 예규)</li> </ul>

## 1) 설계공모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설계공모를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설계공모 관련 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2011.1.1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설계 공모 운영요령,’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이 존재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의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5 제3호(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표 9 (건축설계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 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표 2-2]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기준 비교

구분	설계공모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설계공모 운영기준	한국건축설계 경기규준
공모 종류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일반입찰 -지역 제한입찰(특별 사유시) -지명입찰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공개설계경기 -제한설계경기 -지명설계경기 -아이디어설계경기
공모 일정	-90일 이상 -90일 미만 가능	-9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미만 가능	-90일 이상 -90일 미만 가능	
제출 도서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 -소규모사업에 대해 제출도서 완화 가능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	응모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는 심사 위원이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구분	설계공모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설계공모 운영기준	한국건축설계 경기규준
모형제작	별도 언급 없음	모형(필요시)	제출도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당선작에 대해서는 가능	모형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비용이 응모자들에게 지급
심사위원회 선정	<p>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공고 시 공개</p> <p>-단계별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 원칙</p> <p>-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의견 서면제출)</p>	<p>심사위원 명단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일 기준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p>	<p>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공고 시 공개</p>	<p>2단계로 진행되는 설계경기의 경우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모두 심사</p>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li> <li>-소속직원을 과반 수 이상 선정</li> <li>-당해 직무 및 전분분야 경력자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li> <li>-문화예술분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10인 이하 구성</li> <li>-공무원 및 공공 기관의 임직원 30% 이하 구성</li> <li>-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위촉 불가능</li> <li>-심사위원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 인원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li> <li>-심사위원회 진행은 비공개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6~11인 (디자인분과위원을 포함한 5~9인 + 수요기관 직원 1~2인)</li> <li>-전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li> </ul>	심사위원 수는 5~9인으로 허수로 구성
심사위원회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설계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li> <li>-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5년 이상 경력자</li> <li>-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li> </ul>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p>	<p>해당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p>	<p>건축 전문가로 구성하되, 주최자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분야 이외의 전문가를 포함</p>

구분	설계공모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설계공모 운영기준	한국건축설계 경기규준
	<p>해 전문분야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3급 이상 기술직력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p>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p>-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p>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당해분야 부교수 이상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 기관의 임원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당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			
설명기회부여	비공개 심의의 경우 필요시 설계자에게 설명기회 부여	공개설명회 개최 가능	심사대상자에게 설명기회 부여 의무화	별도 언급 없음
심사결과공개여부	<p>-심사 과정 및 결과(전문분야별 평가점수, 종합평가 점수, 평가서 등) 실명 공개 -필요시 실명은 비공개</p>	<p>-심사위원별 평가 점수표 및 평가 사유서 모두 공개 -심사위원회</p>	<p>-심사결과(전문분야별 평가점수, 종합평가 점수, 평가서 등) 실명 공개 -입상작 및 입상업체의 종합 평가점수만 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p>	별도 언급 없음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방식

### □ 적격심사관련 기준

- 적격심사 관련 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법무부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이 있음
  - 크게 고시금액(2.5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로 평가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준에서는 고시금 액(또는 2억원, 1억원) 미만일 경우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로 평가

[표 2-3]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구분	PQ	국토해양부		조달청		지자체		법무부	
		능력	가격	능력	가격	능력	가격	능력	가격
~1억원	미적용	30%	70%	10%*	90%	10%*	90%	10%*	90%
~2억원									
~고시금액**								30%	70%
~3억원	적용	50%	50%	30%	70%	30%	70%	30%	70%
~5억원									
~10억원		70%	30%	70%	30%	70%	30%	70%	30%
~30억원									
30억원~									

\*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2.5억, 행정안전부 3.8억이며, 본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건설 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건축설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조달청의 경우, 배점 5점의 설계공모 항목이 있으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이 10점으로 다른 기준보다 5점이 낮음

[표 2-4]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 항목	국토해양부		조달청	지자체	법무부			
	5,000만원							
	미만	이상						
설계공모 실적	-	-	-	5	-			
참여 기술자	50	50	50	50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	34	15	15	15			
경영상태	34	-	-	-	-			
신용도	4	4	10	10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	10	15			
업무 중첩도	12	12	10	10	10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5조에서는 용역금액의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과 평가방식별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5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만 실시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후 기술자평가 실시
  - 10억 원 이상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후 제안서평가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48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증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

나. 검증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라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별표 7 제1호에 따라 평가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검증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고,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별표 7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표 2-5] 용역적격심사평가 방식

용역비(억원)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	실시설계
~2.5	-	-
2.5~5	PQ	PQ
5~10	PQ → 기술자평가	
10~20	PQ → 제안서평가	PQ → 기술자평가
20~		PQ → 제안서평가

[표 2-6] 기술자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자 경력	30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10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5
	수행방법	10
	기술향상	-
	기타	5

[표 2-7] 기술제안서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기능성, 및 안전성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10
	건축계획의 예술성, 작품성 및 기능성	30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15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15
	경제성 및 공공성	10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5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5
	참여기술자 및 용역실적	10

### 3) 일괄입찰방식<sup>10)</sup>

- 일괄입찰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일괄입찰방식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재부계약예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부 고시), 건설 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을 적용함
  -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가 진행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적용범위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 (건축공사의 경우)
  - 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항에 따른 초고층건축물만 해당)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sup>2</sup>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 만m<sup>2</sup>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

10) 일괄입찰방식은 그간 관련 심의기준의 강화로 과거에 비해 설계의 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거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발주하는 사례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 현황만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연면적 3만m<sup>2</sup> 이상인 공용청사
-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 유형 ① :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표 2-8] 발주공사유형 ①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 · 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li> <li>■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li> </ul>
2) 복합공종으로서 분리발주시, 빈 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 비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li> </ul>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li> <li>■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li> <li>■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li> <li>■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 도</li> <li>■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 임소재가 불분명 사항</li> </ul>

- 발주공사 유형 ② :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  
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표 2-9] 발주공사유형 ②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 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 요한 부분과 규모</li> </ul>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 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 보증이 요구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li> <li>■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li> </ul>

- 발주공사 유형 ③ : 설계VE,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표 2-10] 발주공사유형 ③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li> <li>■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li> <li>■ 적용 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li> </ul>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li> </ul>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 발주공사 유형 ④ :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표 2-11] 발주공사유형 ④의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li> </ul>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li> <li>■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li> </ul>

-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표 2-12]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 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li> <li>■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li> </ul>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li> <li>■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li> </ul>

#### 4)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건축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공동으로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고 있음

[표 2-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방식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술·지식능력</li><li>■ 인력·조직·관리기술</li><li>■ 사업수행계획</li><li>■ 지원기술·사후관리</li><li>■ 수행실적</li><li>■ 재무구조·경영상태</li><li>■ 상호협력 등</li></ul>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표 2-14]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방식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객관적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 평가	용역 · 물품	60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입찰가격 평가			20	

## 2. 설계용역 발주 현황

### □ 설계용역 규모별 발주현황 분석(2007.1~2009.8)<sup>11)</sup>

-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용역은 총 6,350건, 636,157백만원(연간 2,381건, 238,559백만원) 규모로 나타남<sup>12)</sup>
- 건수기준으로 수의계약과 입찰이 각각 3,046건, 2,874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의계약을 제외할 경우 기타입찰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

[표 2-15]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07.01~'09.0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설계 공모	입찰			턴키	수의 계약
			PQ	기타입찰	소계		
건수 (%)	6,350 (100)	389 (6.1)	395 (6.2)	2,479 (39.0)	2,874 (45.2)	41 (0.6)	3,046 (47.9)
금액 (%)	636,157 (100)	205,613 (32.3)	156,058 (24.5)	120,614 (19.0)	276,672 (43.5)	94,194 (14.8)	59,679 (9.4)

- 용역비용 2억<sup>13)</sup>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2억 이상의 경우 설계공모와 PQ가 주된 발주방식인데 비해, 2억 미만의 경우 대부분 가격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특징이 있음
- 2억 이상 용역에서 설계공모 및 PQ심사가 건수기준으로 전체의 80% 이상, 금액기준으로 75% 정도를 차지
- 2억 미만 용역은 수의계약 및 가격입찰이 건수기준으로 전체의 95% 이상, 금액기준으로 8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1) 염철호 외(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33-35.

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발주된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용역을 조사함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용역비용 2억원(국가)을 기준으로 구분함

[표 2-16] 2억 이상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07.01~'09.0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설계 공모	입찰			턴키	수의 계약
			PQ	기타입찰	소계		
건수 (%)	640 (100)	252 (39.4)	299 (46.7)	41 (6.4)	340 (53.1)	41 (6.4)	7 (1.1)
금액 (%)	440,032 (100)	187,440 (42.6)	141,823 (32.2)	10,344 (2.4)	152,167 (34.6)	94,194 (21.4)	6,231 (1.4)

[표 2-17] 2억 미만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07.01~'09.0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설계 공모	입찰			턴키	수의 계약
			PQ	기타입찰	소계		
건수 (%)	5,710 (100)	137 (2.4)	96 (1.7)	2,438 (42.7)	2,534 (44.4)	0	3,039 (53.2)
금액 (%)	196,125 (100)	18,172 (9.3)	14,235 (7.3)	110,269 (56.2)	124,504 (63.5)	0	53,448 (27.3)

## □ 최근 6개월간 발주현황 분석(14)

- 건수기준으로 가격입찰이 139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공모는 25건으로 전체의 12.7%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가격입찰이 전체의 13%, PQ 또는 PQ+TP가 전체의 44%, 설계공모가 3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짐

[표 2-18]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최근 6개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입찰						설계공모	
		가격입찰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PQ		PQ+ TP	
		소액 수의	적격 심사	일반	제한	일반	제한	제한	일반
건수 (%)	198 (100)	102 (51.5)	37 (18.7)	3 (1.5)	2 (1.0)	14 (7.1)	13 (6.6)	2 (1.0)	14 (7.1)
금액 (%)	46,203 (100)	2,435 (5.3)	3,546 (7.7)	1,951 (4.2)	1,745 (3.8)	8,420 (18.2)	8,117 (17.6)	3,824 (8.3)	5,801 (12.6)

14) 2012년 5월 8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http://www.g2b.go.kr/>)에서 최근 6개월간의 설계용역 발주공고 198건을 대상으로 분석 (국방부 등 관련 사항을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발주는 제외)

- 용역비용 2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우선 2억 이상의 경우에는 PQ 또는 PQ+TP가 건수별로 54.7%, 금액별로 5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설계공모는 건수별로 33.9%, 금액별로 38.5%를 차지
- 2억 미만은 대부분 가격입찰(건수별 94.4%, 금액별 85.1%)로 이루어지며, 설계공모(건수별 4.8%, 금액별 13.9%)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표 2-19] 2억 이상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최근 6개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입찰						설계공모		
		가격입찰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PQ				
		소액 수의	적격 심사	일반	제한	일반	제한	제한	일반	
건수 (%)	53 (100)	0 (0.0)	2 (3.8)	3 (5.7)	1 (1.9)	14 (26.4)	13 (24.5)	2 (3.8)	12 (22.6)	6 (11.3)
금액 (%)	39,727 (100)	0 (0.0)	471 (1.2)	1,951 (4.9)	1,680 (4.2)	8,420 (21.2)	8,117 (20.4)	3,824 (9.6)	5,545 (14.0)	9,719 (24.5)

[표 2-20] 2억 미만 공공건축 설계용역 총괄표(최근 6개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입찰						설계공모	
		가격입찰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PQ			
		소액 수의	적격 심사	일반	제한	일반	제한	제한	일반
건수 (%)	145 (100)	102 (70.3)	35 (24.1)	0 (0.0)	1 (0.7)	0 (0.0)	0 (0.0)	2 (1.4)	5 (3.4)
금액 (%)	6,475 (100)	2,435 (37.6)	3,075 (47.5)	0 (0.0)	65 (1.0)	0 (0.0)	0 (0.0)	256 (4.0)	644 (9.9)

- 제한경쟁방식과 일반경쟁방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제한경쟁방식이 전체의 84.3%(167건)이며, 일반경쟁방식은 15.7%(31건)에 불과

※ 고시금액(3.1억) 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으며, 금액별로는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1] 일반경쟁방식과 제한입찰방식 분석 (최근 6개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경쟁	지역제한	실적제한
건수 (%)	198 (100)	31 (15.7)	154 (77.8)	13 (6.6)
금액 (%)	46,203 (100)	16,171 (35.0)	12,365 (26.8)	17,667 (38.2)

## 제3장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1.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2. 제안공모방식 도입방안
3. 기타 개선방안
4. 설계공모방식 개선을 위한 운영지침 개선방안

### 1.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 1) 설계공모 발주사례 분석

-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6대 광역시·도, 시·군·구 지자체에서 발주된 설계공모 현황 분석
  - 12년 5월 8일 현재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확인한 최근 6개월간의 설계용역 발주공고 198건 중 설계공모로 진행한 24건과 2010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설계공모 30건, 총 54건을 대상으로 선정

##### □ 공모기간 관련

- 설계공모 공고 후 제출까지의 공모기간은 최단 29일부터 133일까지 다양하며 평균 공모기간은 69.3일임
-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90일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경우는 총 54건 중 12건(0.22%)에 불과

#### □ 참가자격 관련

- 총 54건 중 14건(26%)이 자격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14건의 자격제한 중 실적제한 10건, 지역제한 4건(실적제한 1건 포함), 지명초청 1건으로 나타남
- 실적제한은 대부분 최근 5년 내 또는 10년 내 유사 시설에 대한 유사 규모 이상의 실적을 요구

#### □ 제출물 관련

- 제출도서의 경우, 대부분이 설계도판(A1, 3매~5매), 설계도면(A3, 15부~20부), 설계설명서(A4, 15부~20부)를 요구하고 있음
- 설계도판에 조감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로 조감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17곳, 모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4곳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CG) 작업 등에 대한 간소화 사례로서는 고잔2동 주민센터,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안산시), 회천2동 복합청사(양주시)와 남부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경기(충주시)가 있음
  - 회천2동 복합청사는 제출물을 도판 A1 3매, 모형 1점으로 한정하고 조감도, 투시도, 모형사진의 표현을 금하고 있음
  - 남부 노인복지관은 제출도서는 흑백만 사용하며, CG, 포토샵, 3D, 색채사용을 불허(접수불가)하고 있음

## 2)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 □ 설계공모 장려조항의 영향력 미흡

- 현행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공모 장려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한 실정임

#### 【건축기본법】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② 발주청은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설계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실적제한 등 자격제한 제한

- 설계공모 사례에서의 실적제한의 경우, 제한기간이 최근 5년내, 또는 10년내로 제각각이며, 실적규모 또한 건립규모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한과 규모에 대한 원칙이 불분명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제한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표 3-1] 설계공모에서의 자격(실적)제한 사례

사업명	발주처	규모	설계비	자격조건
독일 문화체험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1,000㎡	100 백만원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설계 공모에 당선된 실적이 있는 업체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16,500㎡	491 백만원	최근 3년 이내 수주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중 단일 건으로 연면적 16,500㎡ 이상 설계실적을 보유한 업체
북구 천곡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1,230㎡	80 백만원	최근 5년 이내(공모일 기준)에 연면적 1,000㎡ 이상 문화및집회시설 설계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부여 국민체육센터	충청남도 부여군	4,500m <sup>2</sup>	456 백만원	문화 및 집회시설 다목관람장 또는 체육관의 단일 건 연면적 4,000m <sup>2</sup>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이(공동도급시 지분율에 의함)이 있는 자
KIGAM 직장 어린이집 건립공사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600m <sup>2</sup> 내외	93 백만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600m <sup>2</sup> 이상의 노유자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실적이 있는 업체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2단계 및 대학원기숙사 설계공모	광주 과학기술원	30,430m <sup>2</sup>	불명	최근 5년간 단일계약으로 교육연구시설 중 4년제 대학교 시설(강의동, 체육관, 기숙사, 부속병원 등등 포함) 30,000m <sup>2</sup> 이상의 설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코레일유통(주) 본사 사옥 신축공사	코레일유통	52,480m <sup>2</sup>	3,600 백만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로 단일규모 연면적 15,000m <sup>2</sup> 이상 신축 설계용역 수행실적 보유업체
KAIST 학생기숙사 및 장영신 학생회관 신축 설계경기	한국 과학기술원	기숙사 11,461m <sup>2</sup> , 학생회관 3,481m <sup>2</sup>	841 백만원	최근 10년 간 단일건물로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 시설에 대한 7,500 m <sup>2</sup> 이상의 설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경상북도 영양군	7,405m <sup>2</sup>	1,400 백만원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단일계약으로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연면적이 2,500m <sup>2</sup> 이상인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밀양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밀양시	8,550m <sup>2</sup>	1,273 백만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계약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의 규모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2,000 m <sup>2</sup> 이상의 용역실적을 보유한 자

#### □ 충분한 설계공모 기간부여 미흡

- 현행 기준 등에서는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이며,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하가 가능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만 최소 일정으로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 규정
- 운영지침에 공모기간을 90일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경우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

#### □ 과다한 제출물로 인한 참여비용 부담 가중

- 현행 기준에서는 심사위원회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출물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 모형은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경우 제출도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형을 제외하고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만 모형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에서는 모형 제출 요구 시 적절한 비용을 응모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건축사사무소 확인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공모의 경우, 직접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50백만원~100백만원 정도의 비용지출 수반
- 설계공모 사례에서 대부분의 공모의 경우 설계도판은 색채 사용의 제약이 없고,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은 조감도와 투시도를 제외하고 색채 사용을 불가하고 있음
  - 컬러금지 조항은 제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기보다는 과다한 표현으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컬러와 흑백의 차이가 제출자의 부담에 미치는 차이는 그다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 지속

- 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공모 운영기준에서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에 대해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지속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율을 30%이하로 구성하고, 자체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위촉 불가능하도록 규정
-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심사위원 명단을 설계공모 시행시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박사 학위 등 소지자, 건설업무 관련 4급 또는 5급 공무원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조, 기계, 환경 등의 분야 전문가도 건축설계 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지속
-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경우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타 기준인 설계업무 관련 5급 이상보다 높음
-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기준은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보다 높은 기준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1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요함

□ 당선작에 대한 불합리한 설계변경 다발<sup>15)</sup>

- 설계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한 후, 기관장·계약담당공무원의 인식 변화 또는 사업예산에 맞춘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 요구사례 다수
- 설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현상설계 당선 또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불합리한 설계변경’을 겪은 적이 있으며, 약 45%가 수행한 사업 중 과반수이상의 사업에서 그러한 설계변경을 겪었다고 답변
- 또한 발주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에서 설계공모안의 실현성 문제 등 ‘과다설계’를 설계공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당선에 집착한 과도한 디자인 또한 추후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5) 염철호 외(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67

## 2. 제안공모방식 도입방안

### 1) 미국과 일본의 제안공모 방식

#### ①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sup>16)</sup>

- 일본에서는 공공건축 설계는 결과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물품구입과는 달리 설계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을 도입·시행

#### □ 프로포절 방식의 도입 경위

-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 (1994년)
  - 1994년 내각회의를 통과한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면서 경쟁적인 조달방식으로서 공사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채용하고, 설계·컨설팅업무에서는 공모형 방식을 채용할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에서는 설계자 선정에 프로포절 방식을 도입하여 그 후 방식의 보급과 운용상의 개선 등을 추진
  - 창조력과 기술력,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노하우 등 설계자의 능력과 경험 등 자질을 바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프로포절 방식임
  - 프로포절 방식은 기술력과 경험,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체제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현상공모 방식’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프로포절 방식’은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16)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22호, 2010



[그림 3-1] 프로포절 방식과 현상공모 방식의 비교

※ 출처 : 질 높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프로포절 방식,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자료

-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시행
    - ※ 그간의 ‘가격만의 경쟁’에서 ‘가격과 품질에서 종합적으로 뛰어난 조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술제안을 요구하여 그 우열을 평가하고 보다 적절한 자와 계약하는 등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환경배려형 계약법 (2007년)
  - CO2 배출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에는 관공사에 있어서 환경부하의 배려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한 환경배려계약법과 환경배려형계약법 기본방침이 제정
  - 공공건축물 설계에도 기술제안 항목의 1개 이상을 CO2 등의 저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 프로포절 방식의 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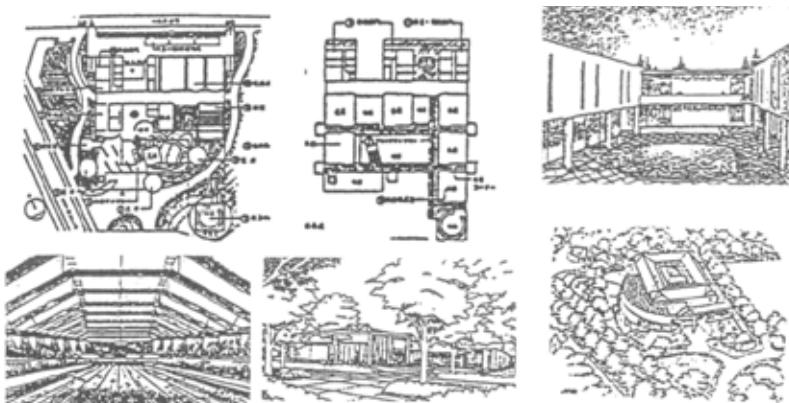
-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기술제안서 제출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설계업체 사전 등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기술제안서 수령 후 필요시 제안내용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안자가 각자의 제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공개심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그림 3-2] 프로포절 방식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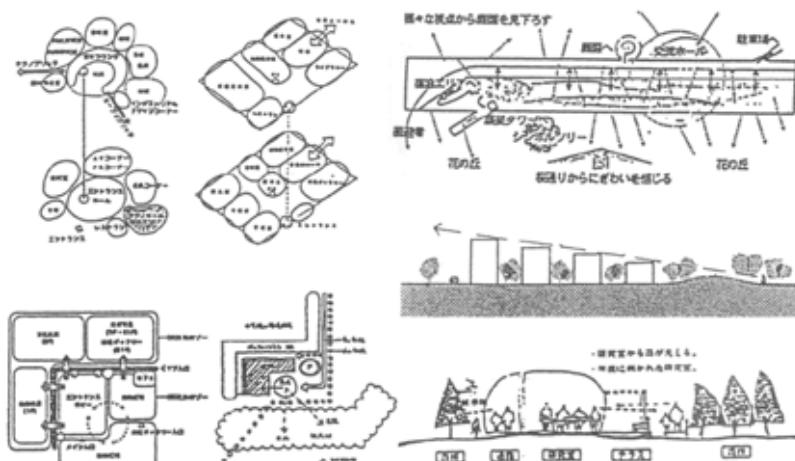
-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A3 2매 정도에 제안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최소한의 사진이나 이미지 등은 사용이 가능하나 설계내용의 구체적 표현, 투시도 등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7)</sup>
- 이를 통해 설계자와 발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CG 등의 표현에 좌우되지 않고 내용에 충실한 심사를 유도하고 있음

17)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의 추진 방식」 공공건축협회



[그림 3-3] 제안서에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 예시

※ 출처 :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의 추진 방식, 공공건축협회, p.33.



[그림 3-4] 제안서에 사용 가능한 이미지 예시

※ 출처 :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의 추진 방식, 공공건축협회, p.33.

- 프로포절 방식의 평가기준으로는 ①담당팀의 대응 (70점, 과제에 대한 제안의 명확성 · 독창성 · 실현성, 업무실시방침의 타당성, 공정계획 등 의 타당성 등), ②사무소의 실력 (15점, 주요업무실적, 동종 · 유사업무 실적, 보유 기술자수, 기술력 등), ③담당팀의 능력 (15점, 총괄책임자 및 주임기술자의 자격, 경험 및 업무실적 등) 등이 있음

- 프로포절에서 요구되는 과제로는 해당 건물의 설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주로 제시됨
  - ※ 삿포로시에서는 2009년의 동물원 곤충관 신축공사에서 '빛·온열환경의 계획적 컨트롤에 의한 다양한 사육조건에 대응한 시설정비'를 과제로 제시했으며, 2008년의 초등학교 개축공사 기본계획에서 '협소부지에서 아동의 학습환경을 향상시키는 시설계획에 대해서'를 과제로 제시
  - ※ 2009년의 키노카와시 신청사 건설설계에서는 '시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우며 이용하기 쉬운 청사에 대해서',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저감에 대해서', '방재거점으로서의 신청사의 지진대책에 대해서' 등이 과제로 제시
- 경우에 따라서는 2차적으로 공개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발주자는 공개심사를 위한 일정액의 작업비용을 제안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제안자는 A1 1매 정도의 도판과 설명용 데이터를 준비함<sup>18)</sup>



[그림 3-5] 프로포절 방식의 심사회장 및 질의응답 모습, 최종 당선 설계 도판

\* 출처 : 니케이 아키텍쳐, 900호, pp.48~49

#### □ 프로포절 방식의 참가표명서 평가기준 (예시)

- 사무소의 실력
  - 주요업무실적 : 최근 5~10년 정도의 실적건수 및 완성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3단계(ABC) 평가

18) 1959년에 준공된 유서깊은 청사건물(docomoно japan 등록 건축물)인 일본 치바현 오오타키초의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프로포절 방식 사례로 1차심사(104건 응모)를 통과한 5곳의 건축사사무소에 2차 공개심사 준비금으로 각각 10만엔(약1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공개심사는 각각 약 2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주민대표를 포함한 6명의 심사위원과 설계자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니케이 아키텍쳐, 900호, pp.48~49 참조 및 사진 발췌

- 수상실적 : 건축상 등 수상실적 평가
- 동종·유사업무 실적수
- 동종·유사업무 실적 적응성 : 프로젝트에 대한 적응성을 과거 실적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3단계(ABC) 평가
- 기술자 수 : 사무소의 실력을 자격을 고려한 기술자 수로 평가
- 유자격자 수 : 사무소의 실력을 유자격자 수로 평가
- 담당 팀의 능력
  - 자격 및 경험 : 자격계수에 경험연수를 곱하여 평가
  - 업무실적 : 프로젝트에 대한 담당팀의 적응성을 기술자 실적 건수 및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3단계(ABC) 평가
  - 업무 중첩도 : 수행 중인 업무 중첩도를 종합적으로 3단계(ABC) 평가
  - 협력 사무소 : 협력사무소 사용의 타당성, 그 능력을 종합적으로 3단계(ABC) 평가

#### □ 프로포절 평가방식 (예시)

- 담당 팀의 대응(업무의 실시방침·수법 및 제안)
  - 제안의 적확성·독창성·실현성
  - 업무실시방침의 타당성, 공정계획·동원계획의 타당성
  - 추진의지
- 사무소의 실력
  - 주요업무실적, 동종·유사업무 실적, 기술자 수, 기술력, 업무 중첩도 등
- 담당 팀의 능력
  - 총괄책임자 (자격·경험, 업무실적, 중첩도)
  - 주임기술자 및 담당 기술자 (분야별 자격·경험, 업무실적, 중첩도)

## ② 미국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

### □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에 의한 발주방식<sup>19)</sup>

-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는 연방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구매활동을 관리하며, 산하부서인 PBS(Public Building Service)가 연방정부 직원들을 위한 시설물의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등을 구매·관리하고 있음
- GSA프로젝트의 시행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은 FAR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0백만 달러 이상 규모의 신축공사 또는 대규모 보수·변경 프로젝트에 ‘Design Excellence Program’을 적용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임
-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어떤 절차가 되던 간에 그것이 완성된 설계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책임자와 설계팀 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며, 가격보다는 입찰 참가자들의 기술적인 능력과 자격을 중요시 하는 점임
- ‘Design Excellence Program’은 2단계 또는 3단계(설계경기)로 구분되는데, 2단계평가는 포트폴리오 평가와 팀 인터뷰로 진행됨
  - GSA지역사무소가 설계입찰 공고 및 설명회 실시
  - 참여업체는 과거 10년간 설계책임자가 참여한 프로젝트 3~5개의 포트폴리오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방향, 설계책임자의 경력 등을 제출
  - 설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3~6개 업체의 쇼트리스트(Short List) 작성
  - 해당된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팀과 설계책임자의 능력 및 자격에 대한 사항 제출
  - 설계책임자 및 설계팀에 대한 설계평가위원회의 인터뷰 실시

---

19) 김예상·한미파슨스,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보문당, 2009, pp.70-74.

- 업체 순위 결정 후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 실시
- 3단계 선정절차는 설계경기가 추가되는데, 2단계를 통과한 3개 업체가 ‘Vision Competition’에 설계안을 제출하게 됨
  - 설계안은 개념설계 또는 시설물의 이미지를 제안하는 수준에 국한되고 기술적인 제안은 배제되며, 각 설계팀에게는 최종 선정과 상관없이 GSA와의 계약을 통해 설계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됨
  - 민간 설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 심사단이 설계안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설계평가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방침 및 절차

- GSA 홈페이지에 공개된 Design Excellence Program에 대한 방침 및 절차(Design Excellence : Policies and Procedures)에서 목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방향, 가이드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음
- Design Excellence Program은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선택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됨



[그림 3-6]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절차  
※ 출처 : 김예상(2005),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p.74

[표 3-2]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방침 및 절차

구분	내용
1장. 계속되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엑셀런스 프로그램의 시행이후 건축물의 디자인과 연 방정부의 긍정적인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향상을 가져왔으 며 도시 전체를 강화시켰음</li> <li>· 디자인 엑셀런스의 방침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수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li> </ul>
2장. 디자인 엑셀런스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은 GSA의 공공 건축물 서비스, 디자인 엑셀런스 의 목표, 방침 및 절차, 연방건축의 가이드 원칙에 대해 설 명하고 있음</li> <li>· 디자인 엑셀런스를 통해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작업환경을 개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 우수한 디자이너와 아 티스트를 선정 등을 수행하고자 함</li> </ul>
3장. 디자인 엑셀런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엑셀런스 프로젝트의 복잡성으로 인한 전체적인 절 차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음</li> <li>· 주요 내용은 OCA(Office of the Chief Architect)와의 협 력에 대한 이해, 예산전략과 설계 우선순위의 명확화를 포 함하고 있음</li> <li>· 설계 우선순위의 각 단계는 부지선정, 정부조달사업 공지, A/E 평가 위원회, 설계책임자와 디자인 엑셀런스 A/E팀 선정, 컨셉 발전, 건축 속의 미술로 구성됨</li> </ul>
4장. 디자인 엑셀런스와 부지 선정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선정은 디자인 엑셀런스 절차의 형식적인 부분은 아니 지만, 부지 결정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많은 영향력을 가짐</li> <li>· 우수한 사업부지의 선정 기준으로는 1) 커뮤니티 개발에 상 당히 기여 2) 건축 디자인 엑셀런스에 대한 잠재력을 극대 화 3)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디자인 전략을 지원 4) 현재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li> </ul>
5장. 정부조달사업의 정의와 디자인 엑셀런스 기회의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달사업은 디자인 엑셀런스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로 사업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A/E 선택절차와 단계1 포 트폴리오 제출 평가에 사용된 절차의 모든 단계를 나타냄</li> <li>· 정부조달사업 공지는 사업유형과 선택절차에 따라 다름</li> <li>· 정부조달사업 공지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함</li> <li>· 디자인 엑셀런스 절차의 적절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소는 OCA와 협의하여 다음 세 가지 A/E 선택과 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wo-Stage (2단계 선정절차) 포트폴리오 평가와 설계책임자 A/E 팀 인터뷰로 구성됨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과정) 신축, 근대화, 보존사업에 사용되어짐 2단계 제출과 인터뷰에서 A/E 평가 위원회 정보가 설계팀 에게 주어지는 동안, 1단계 포트폴리오에서 설계책임자 약</li> </ul> </li> </ul> </li> </ul>

구분	내용
	<p>력, 설계회사 철학, 설계접근법을 제공함</p> <p>* <b>Two-Stage plus Charrette (2단계 선정절차 + 집단토론회)</b>      포트폴리오 평가와 설계책임자 A/E 팀 인터뷰 그리고 집단토론회로 구성됨 (집단토론회는 설계비전을 준비할 각 쇼트리스트의 설계책임자-A/E팀을 위한 기회임)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설계책임자-A/E팀의 디자인 접근법과 우선순위를 파악함</p> <p>* <b>Three-Stage (3단계 선정절차)</b>      포트폴리오 평가와 설계책임자 A/E 팀 인터뷰, vision competition으로 구성됨 (vision competition은 30일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짐)</p>
6장. 설계책임자 선정과 디자인 엑셀런스 A/E팀 선정에 대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 엑셀런스 절차를 통한 설계책임자-A/E팀 선정에 대한 내용</li> <li>주요 내용은 A/E 평가위원회, 포트폴리오와 팀 인터뷰를 평가에 사용되는 분명한 기준, 그리고 필요시 집단토론회에 대한 계획과 vision competition에 대해 설명함</li> <li>또한 OCA와 협의, A/E평가위원회 설립, 선택과정계획, A/E선택과정 운영절차, 단계1(포트폴리오 평가), 단계2(설계책임자-A/E팀인터뷰), 단계3(vision competition), 선택된 A/E회사와의 계약, 전문가 역할, A/E선택과정의 전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li> </ul>
7장. 컨셉 발전과정에서의 디자인 엑셀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식에 얕매이지 않은 컨셉 평가</li> <li>2) 설계책임자-A/E팀 발전 3개 컨셉 옵션</li> <li>3) OCA와의 협의를 통한 초기의 컨셉 전문가 검토</li> <li>4) 설계책임자-A/E팀 발전 우수한 컨셉 옵션</li> <li>5) OCA와의 협의를 통한 컨셉 전문가 검토</li> <li>6) 계속적인 컨셉발전</li> <li>7) OCA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적인 컨셉 발전 전문가 검토</li> <li>8) OCA와의 협의를 통한 위원회의 컨셉 검토</li> </ul>
8장. 건축 가이드라인 속의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프로그램에서의 미술을 통하여 GSA는 미술과 건축의 점진적인 전체 통합의 기회를 제공함</li> <li>이러한 가치있는 목표는 사업미술가, 건축가, 조경가, 엔지니어 등의 협동을 통해 성취됨</li> </ul>

※ 출처 :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gsa.gov>)

[표 3-3]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각 단계별 제출도서 및 규정사항

구분	제출도서 및 규정사항
단계1. 포트폴리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문서는 8 1/2" x 11" 양식이어야 하며, 내용들은 1/4인치 초과 불가</li> <li>제출문은 가능한 양면으로 할 것</li> <li>포트폴리오 내용은 정부조달사업 공지에 언급된 커버레터, 회사 약력 및 위치, 구성 등을 포함</li> <li>- 외부 설계전문가, 발주기관, GSA로 구성된 A/E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문을 평가</li> <li>- 위원회에서 단계2 팀 인터뷰에 참여할 3~6개의 업체들을 쇼트리스트로 선정</li> <li>제출문 요구조건 및 평가기준 지난 설계수행실적 (35%) – A/E 업체들은 과거 10년간 완료된 5개 미만의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제출 (최대 5장) 설계철학과 의도(25%), 설계책임자 약력(15%), 설계책임자 포트폴리오 (25%)</li> </ul>
단계2. 설계책임자- A/E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트리스트로 선정된 설계책임자와 관련 A/E업체들이 공지되고 해당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의 정보 등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li> <li>위원회는 설계책임자와 설계팀을 인터뷰하며 사업진행과정, 설계방향 등 업무수행 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진행</li> <li>- (집단토론회가 없으면) 위원회는 추천된 순위랭크를 GSA 선정국으로 보냄</li> <li>- (집단토론회가 있으면) 결과를 전문가(설계교수, 건축비평가, 실무담당자)들에게 심사를 거치고, 그 평가는 다시 GSA 선정국에 제출하는 설계책임자-A/E팀 순위의 구성요소(최종 평가의 40%를 차지)로 포함됨</li> </ul>
단계3. vision compet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sion competition을 통해 업체들의 설계전략과 각 설계책임자-A/E의 설계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li> <li>제출문은 다음과 같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자료는 경질판(가로30인치×세로40인치, 4개)을 하나로 구성</li> <li>- 모델은 필요하지 않고 받지도 않음, 스터디모델의 사진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도판의 한부분에 부착함</li> <li>- 다음 드로잉은 의무적이며, 작업판에 표시함 (Plans, Sections, Elevation, Perspective)</li> </ul> </li> </ul>

\* 출처 : 「Design Excellence : Policies and Procedures」의 내용정리

[표 3-4]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

구분	기준(국문)	기준(영문)	배점
업체의 설계 수행 실적 (Design Firm: Past Design Performance)	창의력, 설계 접근의 명확성, 맥락의 이해 능력	Projects demonstrate creativity, clear design approach, and are sensitive to context.	35
	설계 수상 실적	Projects have received design awards.	
	예산, 프로그램의 이해 능력	Projects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client budget and program.	
	기타 GSA의 요구 사항	Projects demonstrate special criteria called for by GSA.	
철학과 설계 의도 (Philosophy and Design Intent)	설계를 통해 여러 제약조건을 해결한 유연성과 창의성	Generally indicates flexible and imaginative attitude toward design within the constraints of various public and private projects.	25
	과업에 대한 독창성, 첨예한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Specifically recognizes unique aspects of the project and indicates a way for good design to solve a critical problem.	
책임 설계자의 포트 폴리오 (Lead Designer's Portfolio)	기능적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창의적 접근	Designs demonstrate innovative and creative approaches to solving functional program requirements.	25
	발주처 요구사항 및 기준에 대한 대응능력	Designs demonstrate a response to specific client requirements and criteria.	
	고도의 탐구정신, 엄밀함, 기여도	Designs demonstrate a consistently high level of exploration, rigor, and personal commitment to design excellence.	
	기타 GSA의 요구 사항	Projects demonstrate special criteria called for by GSA.	
책임 설계자의 경력 (Lead Designer's Profile)	학력 및 경력	Credentials are complete (education, work history) and all time periods registered.	15
	복합건물 프로젝트에서 건축주에 대한 지원 실적	Demonstrates a history of dedication to clients with complex building projects.	

\* 각 항목별 평가 : 5단계인 Poor(1), Fair(2), Good(3), Very Good(4), Excellent(5) 평가

\* 출처 : 「Design Excellence : Policies and Procedures」, p.108

[표 3-5]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팀 인터뷰 평가 기준

구분	기준(국문)	기준(영문)	배점
팀 설계 역량 (Team Design Performance)	지역 여건, 설계 이미지, 기능,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 능력	Projects demonstrate success in addressing issue of community context, design image, function, and sustainability.	50
	유사 실적 사례	Project examples are similar in complexity to project.	
	설계팀의 협력도	Proposed A/E Team demonstrates it can work together successfully.	
	책임설계자의 참여도	Commitment of lead designer.	
	기타 GSA의 요구 사항	Projects demonstrate special criteria called for by GSA	
팀의 조직화 및 관리 계획 (Tea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lan)	발주처와 지역사회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소통역할과 체계	Plan clearly identifies key roles and lines of communication. It presents the means to integrate client and community input.	30
	비용과 품질관리를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Plan explains steps to ensure cost and quality control, as well as identifies all review stages.	
	주요 업무를 수행할 위치 관련업체 및 지역업체 등과의 협력계획	Plan identifies the physical location of major design and production work, the coordination plan for consultant work, and for work produced in remote offices.	
전문가 자격 (Professional Qualifications)	책임설계자와 공모설계팀 책임자의 자격, 경험, 실적 등	The lead designer and A/E team project manager have the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commitment to organize all efforts required for this project.	15
	기타 GSA의 요구 사항	Projects demonstrate special criteria called for by GSA.	
지리적 위치 (Geographic Location)	지역제한조건 충족 여부	The lead designer-A/E team satisfies published geographic limitations.	5

\* 각 항목별 평가 : 5단계인 Poor(1), Fair(2), Good(3), Very Good(4), Excellent(5) 평가

\* 출처 : 「Design Excellence : Policies and Procedures」, p.108

## 2) 제안공모방식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 ① 제안공모 방식의 기본방향

- 설계발주방식은 설계자 선정과 설계안 선정, 가격입찰과 디자인공모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발주방식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

[표 3-6] 기존 발주방식의 유형과 문제점

발주방식		문제점
설계자 선정	가격 입찰	적격심사 가격비중 과대 건축설계 특성반영 미흡
		PQ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가격비중 과대 적용대상 극소수 건축설계 특성반영 미흡
	협상에 의한 계약 턴키	적용사례 극소수 건설이 설계 주도
설계안 선정	디자인 공모	설계공모 참여비용 과다 절차 복잡
		아이디어공모 적용사례 극소수

- 현재의 설계공모가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업무, 공정성 시비 등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부담이 크고, 설계자를 뽑는 설계공모와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계획안을 결정하는 설계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 가지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축물에 한하여 충분한 기간과 비용을 전제로 당선된 안에 대한 발주청과 설계자의 강력한 책임(설계변경 금지, 과다설계에 대한 자기책임 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
-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일상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시민의 사용측면에 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를 선정한 다음 발주청과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설계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공모방식을 마련

- 현행 기술제안서 방식이나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가격입찰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설계공모방식의 일환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공모방식과는 성격이 다름
- 설계공모방식의 간소화는 제대로 된 설계안을 평가하여 설계안을 확정한다고 하는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는 일정 규모 이상은 2단계 공모를 실시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제안공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완성된 설계안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제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기술 제안서 평가방식, 아이디어 공모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등의 공통점 및 장점을 선별적으로 적용

[표 3-7]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구분	관련 법령	기준 및 지침
기술제안서 평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국토해양부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
아이디어 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국토해양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설계 경기규준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 요령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	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Design Excellence : Policies and Procedures

- 제안공모 방식은 설계발주방식에서 가격입찰에 의해 설계자가 선정되는 기존의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절차복잡 및 참여비용 과다로 일반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는 기존의 설계공모방식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안공모 방식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자 디자인공모에 해당
  - 용역비 10억 이상에만 해당되는 PQ+기술제안서 평가방식의 가격비중 과대, 적용대상 극소수, 건축설계 특성반영 미흡 등의 한계를 개선
  - 또한, 참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한 설계공모와 적용된 사례가 극소수인 아이디어 공모의 한계를 개선
  - 따라서, 제안공모 방식은 기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발주방식의 대안으로서 공공사업의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발주방식으로서 적용될 수 있음

[표 3-8] 기존 발주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공모 방식의 효과

발주방식		문제점	제안공모 방식의 효과
설계 자 선정	가격 입찰	적격심사	가격비중 과대 건축설계 특성반영 미흡
		PQ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가격비중 과대 적용대상 극소수 건축설계 특성반영 미흡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사례 극소수
		턴키	건설이 설계 주도
설계 안 선정	디자인 공모	설계공모	참여비용 과다 절차복잡
		아이디어공모	적용사례 극소수

## ② 제안공모방식의 적용대상

### □ 유사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는 10억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고, 아이디어 공모는 대규모의 중요한 사업의 1단계 공모절차로 적용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시시설 등에 관련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되는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임
- 미국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근거가 되는 QBS와 관련 하여 각 주마다 또는 각 기관마다 QBS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 설계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설계비 \$25,000 이상인 경우에 QBS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sup>20)</sup>
  -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에서는 200백만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 금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음
-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은 공모형 프로포절(설계비 7,200만엔 이상)과 간이공모형 프로포절(설계비 5,000만엔~7,200만엔 미만)에서 적용대상 설계비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또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설계공모는 구체적인 설계조건을 마련하여 중요한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공모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20) 김도년, 김지엽(2012), 미국의 건축설계 관련 공공발주 법·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8권, 제1호

[표 3-9]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
기술제안서 평가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용역규모 10억 이상의 설계용역
아이디어 공모	제한은 없으나, 아이디어 공모만으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요한 사업에 대해 2단계 본 설계 공모(또는 일괄입찰) 참여대상자 선별을 위한 절차로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 가능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	발주자가 구체적인 설계조건을 마련하여 설계안을 평가하는 설계공모 이외의 설계자 선정 - 일반형 : 제한없음 - 공모형 : 설계비 7,200만엔 이상 - 간이공모형 : 설계비 5,000만엔~7,200만엔 미만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	설계경기 적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200백만 달러 이상 규모의 신축공사 또는 대규모 보수·변경 프로젝트 - 설계경기 적용조건 :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조물 또는 기념관 등의 설계와 같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개념 설계안을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설계경기가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 □ 적용 대상

- 제안공모 방식은 디자인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 해당하므로, PQ+기술제안서 평가와 같이 용역비 규모 등으로 적용대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참고로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미리 설정되어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에 적용 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에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은 적격심사를 통한 가격입찰에 의

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고, 용역비 10억 이상의 건축설계 용역에는 PQ+기술제안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10억 미만의 건축설계 용역 중 설계공모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우선적인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다수 포함되는 점과 제출물이 과다하고 기간이 소요되는 설계공모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은 점을 감안할 경우 고시금액 미만인 건축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제안공모 방식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음

[표 3-10] 제안공모 방식 적용 대상

용역비 규모	설계자 선정		설계안 선정
	가격입찰	제안공모	설계공모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를 통한 가격입찰	확대 적용	-
고시금액~5억	PQ→가격입찰	우선 적용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미리 설정되어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5억~10억	PQ→ 기술자평가+가격입찰		
10억 이상	PQ→ 제안서평가+가격입찰		

### 3)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

#### ①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 □ 유사사례 분석

-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기술제안서 적격자 대상을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입찰을 통해 최종적인 낙찰자를 결정



[그림 3-7]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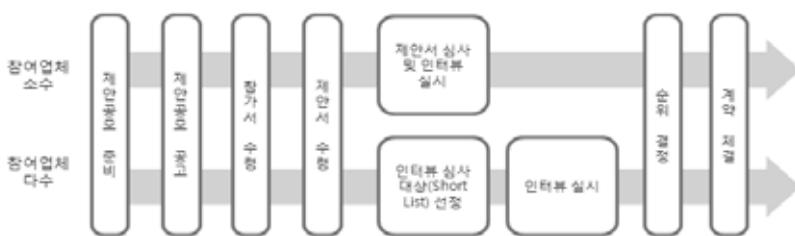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우선 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최고 득점자부터 설계제안서와 가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아이디어 공모는 대부분 2단계 공모의 1단계로 진행되는데, 공고를 통해 응모한 작품에 대한 심사를 통해 2단계 설계공모 참가자격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프로포절 방식은 공모형 방식(공모형, 간이공모형)과 표준형에 따라 절차가 일부 상이한데, 표준형의 경우에는 미리 작성된 설계자 리스트 (long list)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서 요청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형은 기술제안서 참가를 표명하는 자를 대상으로 1차심사를 거쳐 기술제안서 제출대상자(short list)를 선정
  - 기술제안서 제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이후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최고득점자와 계약을 체결함
- 미국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은 공고 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3~5개 업체로 쇼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별로 해당 프로젝트팀과 설계책임자의 능력 및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업체 순위 결정 후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실시함

[표 3-11] 각 발주방식의 절차

구분	절차									
기술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일본 프로포절 방식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										
아이디어 공모 (2단계공 모의 경우)										

## □ 절차

- 제안공모 방식은 제안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국내외 제안서 평가방식에서는 간단한 제안서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발주처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제안서 심사에 소요되는 노력을 감안하여 Short List를 작성하고 있음
  - 일본처럼 공공건축설계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는 있으나, 참여업체 제한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정확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
  - 1차적으로 참여신청과 심사를 통해 Short List를 작성한 다음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일본의 프로포절 방식)과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Short List를 작성한 다음 추가적인 세부 심사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미국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이 검토될 수 있음
- 하지만, Short List를 작성하는 방식은 기존에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식이라 하기는 어려움
  - 다만, 참여절차와 비용이 간소화됨에 따른 참여업체 수의 과다로 인한 심사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 참여업체가 소수(10개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심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수일 경우에는 제안서 심사를 통해 인터뷰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인터뷰를 포함한 2차 심사 실시



[그림 3-8]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 ② 제안공모방식의 운영

### □ 제안요청서의 작성

- 발주처는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방식에 의한 설계공모라는 사항과 응모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개요,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제안요청서에 포함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 사업의 개요, 일정 및 제공자료
  -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관련 양식 등
- 제안공모 방식에서는 설계공모와 같이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제안서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할 필요
  - 사업의 목적, 사업 일정
  - 사업의 기본방향
  -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 대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사항
  - 주요 기능별 면적

[표 3-12] 제안공모방식 제안요청서의 포함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사업의 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의 목적,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사업 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대지이용·배치계획·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주요 기능별 면적 등</li></ul></li><li>2. 참가자격 및 조건</li><li>3. 일정 및 제공자료</li><li>4. 심사위원 명단</li><li>5. 과업의 범위</li></ol>

구분	내용
제안서 작성지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안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li> <li>2. 제안서의 구성</li> <li>3.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li> <li>4.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관련사항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기술자 및 전담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기재 요령</li> <li>- 유사실적 기재요령</li> <li>-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기재요령</li> <li>- 재정상태 기재요령</li> </ul> </li> <li>5. 수행계획 및 방법 관련사항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에 대한 이해도 작성요령</li> <li>- 제시 과제의 내용</li> <li>- 각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작성요령</li> <li>- 수행계획 작성요령</li> </ul> </li> </ol>
제안서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 관련 일반사항</li> <li>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li> <li>3. 평가절차 및 방법</li> <li>4. 세부평가기준</li> </ol>
계약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낙찰자 결정방식</li> <li>2.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li> </ol>
관련 양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가신청서</li> <li>2. 제안제출서</li> <li>3. 제안업체 일반현황</li> <li>4. 설계팀 구성방식 및 인력</li> <li>5. 유사실적</li> <li>6.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 실적</li> <li>7. 제안사 경영상태</li> <li>8. 실적증명서</li> <li>9. 기술제안서</li> </ol>

### ③ 제안서의 작성

#### □ 제안서의 규격

- 컬러는 금지하며 흑백을 원칙으로 함
- 규격은 A4종으로 작성·제본하되, 수행계획 및 방법은 A3로 작성
- 제안서 분량은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만 제한
  -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계획은 A3 각 1매,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은 해당 과제당 A3 각 1매로 제한

- 제안서에는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모형사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은 금지
- 문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다이어그램 정도는 가능하며, 구체적인 건물의 계획에 준하는 표현은 금지

□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사항
  -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각 분야 전담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 책임기술자(또는 업체)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 책임기술자(또는 업체)의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 재정상태 등
-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업성격 및 범위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 설계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 등)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과업수행 일정표,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 수행체계 등)

**(4)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작성지침**

□ 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사항

- 제안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제시
-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에 관한 사항

- 발주자는 사업의 목적, 대지 조건, 건물 규모, 사업 일정, 사업의 기본 방향, 대지이용·배치계획·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

[표 3-13] 일본 프로포절 방식에서의 요청 과제 사례

구분	내용
오타루시립병원 신축공사 (오타루시, 200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뇌·신경질환 진료, 심장·혈관질환 진료, 암 진료의 3가지 를 축으로 하는 급성기 병원의 계획</li> <li>2. 2차진료권의 재해거점병원으로서의 시설계획</li> <li>3. 주변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li> <li>4. 장래 병원기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설계획</li> <li>5. 환자·직원·자료의 효율적인 동선계획과 환자를 위한 병동 계획</li> </ol>
나카노구치 중학교개축공사 (니가타시, 20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래의 가능성으로서 초등학교로의 전용이 가능한 건축 및 부지의 유효활용</li> <li>2. 지역에 열린 학교시설로서의 기능과 관리측면의 안전성에 대한 배려</li> </ol>
시라이시구 복합청사 신축공사 (삿뽀로시, 2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구의 얼굴로서 적합한 거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예를 들면 지역 커뮤니티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능과 교류의 장의 도입, 대지 내에 도입 가능한 민간시설의 유형과 청사와의 기능연계 등)</li> <li>2. 방재거점으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기능유지 방안</li> <li>3. 환경부하 저감방안 및 계발효과 향상 대책</li> </ol>
요시다 종합보육원 신축공사 (츠바메시, 2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성의 확보와 부지의 유효이용을 고려한 배치개념 (대지가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원 아동 입퇴원 시간과 초등학교 등하교와 겹치는 점을 고려)</li> <li>2. 장래 유치원(보육원과 복합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한 보육환경의 계획(단기와 장기의 일체적인 보육을 고려한 배치에 대한 제안)</li> </ol>

- 제안공모방식은 설계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주요한 판단자료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
  - 따라서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은 허용하되, 일정한 축적이 있는 도면, 투시도, 조감도 및 이와 유사한 스케치 등은 허용하지 않음

- 발주처는 건물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형상, 치수, 면적, 구조, 설비가 의도적으로 표현되거나 완성 후의 시설전체 또는 일부가 표현된 제안서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거나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표 3-14] 일본 프로포절 방식에서의 제안서 사례 (이미지는 각 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췌)

오오  
미야마에  
체육관  
이전  
개축공사  
(동경  
스기나미구,  
2008)



#### □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을 제시
-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방식 제시

## 4) 제안공모방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

###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 유사사례 분석

-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인력, 조직, 경력, 실적 등 객관적 평가점수 30%, 제안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 70%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5]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평가배점

구분	설계팀 경험,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비고
기술제안서	30	70	
프로포절 방식	30	70	
Design Excellence Program	37.5 (75)	62.5 (125)	1,2단계 총합 200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25 (20)	75 (60)	제안서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과 관련한 유사 사례 평가항목으로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프로젝트 실적,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표 3-16]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관련 평가항목

구분	기술제안서 (PQ포함)	프로포절 방식	Design Excellence Program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디자인 팀의 능력)	○
유사 프로젝트 실적	○	○	○	○
재정 상태	○			○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 (조달청)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	○		

[표 3-17] 일본 프로포절 방식의 참가표명서에 대한 평가방식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무소의 실력 (30)	주요업무실적	5
	수상실적	5
	동종·유사업무실적 수	5
	동종·유사업무실적 적응성	5
	기술자 수	5
	유자격자 수	5
담당팀의 능력 (70)	총괄책임자의 자격·경험	10
	총괄책임자의 업무실적	20
	총괄책임자의 업무중첩도	5
	주임기술자의 자격·경험	10
	주임기술자의 업무실적	20
	주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	5

- 수행계획 및 방법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들의 평가항목과 제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8] 수행계획 및 방법 관련 평가항목

구분	기술제안서	프로포절 방식	Design Excellence Program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계획	○	○ (특정테마 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방법	○	○		
기술향상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추진의지)	○	○		

[표 3-19] 제안공모 관련 유사 평가방식의 제출물 내용과 형식

구분	기술제안서 등 제출물 내용		제출물 형식
기술제안서 평가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자의 경력</li> <li>-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li> <li>- 참여기술자의 업무종복도 등</li> </ul>	A4 25쪽 이내 (항공사진, 투시도, 조 감도, 시뮬 레이션,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맥 편집, 스케 치), 고급 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 불가)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li> <li>-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li> <li>-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li> <li>-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li> </ul>	
	수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li> <li>-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당해 용역 적용성</li> <li>-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li> <li>- 경관 설계 등</li> <li>-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li> </ul>	
	기술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li> <li>-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li> </ul>	
일본의 프로포절 방식	기술 제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실시 방침</li> <li>- 주어진 과제에 대한 제안</li> </ul>	A4나 A3 (보완을 위 한 일러스 트, 이미지 는 사용가 능하나 도 면, 모형 (사진), 투 시도 등을 불가)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	포트 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0년간 완료된 5개미만 프로젝트 포트폴리오</li> <li>- 설계철학과 의도</li> <li>- 설계책임자 약력</li> <li>- 설계책임자 포트폴리오</li> </ul>	8 1/2" x 11" 양식
	비전 컴피티션 (3단계 실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입·단면, 투시도 등</li> </ul>	가로 30 인 치 x 세로 40인치, 4 개

## □ 평가항목 및 배점

-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인력, 조직, 경력, 실적 등 객관적 평가점수 30%, 제안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 70%로 구성
  - 객관적 평가점수를 20점 이하로 낮출 경우 발주처의 수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30점을 초과할 경우 소규모 업체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프로젝트 실적,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 제안공모 방식에서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상태는 미국과 일본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설계업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점수로서 평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재정건실도를 충족하는 못하는 업체를 배제하는 정도에 그칠 필요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축설계 업무와는 관련성이 미흡하고, 업무중첩도는 현재의 경력 및 실적관리 체계에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을 바탕으로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3-20] 제안공모에서의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관련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건축사의 경력	책임건축사의 경력	10
해당 팀 구성의 적절성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각 분야 전담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5
유사 프로젝트 실적	책임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또는 업체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책임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또는 업체의 실적)	5
재정 상태		-

- 수행계획과 수행방법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 제안공모 방식에서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향상은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이 기존의 기술제안서 방식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건축 설계의 특성과는 그다지 맞지 않으며 타 사례에서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제안공모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수행계획은 공통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제시된 과제에 대한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 및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다지 변별력이 없으므로 제안공모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과업계획 및 체계 위주로 평가
  - 제안서 발표 및 면접은 과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과제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제안공모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을 바탕으로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3-21] 제안공모에서의 수행계획 및 방법 관련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10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주어진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45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10
제안서 발표 및 면접	업체 추진의지의 적극성	5

## ② 제안서 평가방법

### □ 심사위원회의 구성

- 발주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5~9인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은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공고 시 공개하여야 함

### □ 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안서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사전심사하고,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심사대상 제외여부 및 감점여부 등을 결정
- 심사 개최 5일전까지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 심사 이전에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사전평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확정함
-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책임건축사의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제안자의 과업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서 컨셉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제안자 발표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함
  - 발주처는 심사위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안내용을 확대한 패널을 요구할 수 있으나, 패널제작 비용을 제안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제출 제안서가 10개 이상일 경우 토론 및 응모자 설명 없이 1단계 심사를 거쳐 상위 5개 이내를 선정한 다음, 2단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발주처는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배점범위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음

[표 3-22] 제안공모방식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예시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설계팀 경험 및 역량 (30)	건축사의 경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건축사의 경력</li> </ul> <table border="1"> <tr> <td>12년 이상</td><td>9년 이상</td><td>6년 이상</td><td>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해당 팀 구성의 적절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분야 전담기술자의 경력 (각 분야 합산)</li> </ul> <table border="1"> <tr> <td>12년 이상</td><td>9년 이상</td><td>6년 이상</td><td>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 <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	4	3	2	1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	4	3	2	1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최근10년간)</li> </ul> <table border="1"> <tr> <td>5건이상</td><td>4건</td><td>3건</td><td>2건</td><td>2건미만</td></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5건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10	9	8	7	6	
5건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10	9	8	7	6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및 수상실적(최근5년간)</li> </ul> <table border="1"> <tr> <td>3건이상</td><td>2건</td><td>1건</td><td>0건</td><td></td></tr> <tr> <td>5</td><td>4</td><td>3</td><td>2</td><td></td></tr> </table>					3건이상	2건	1건	0건		5	4	3	2		
3건이상	2건	1건	0건														
5	4	3	2														
수행 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li> </ul> <table border="1"> <tr> <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 <td>10</td><td>8</td><td>6</td><td>4</td><td>2</td></tr> </table>					A	B	C	D	E	10	8	6	4	2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li> </ul> <table border="1"> <tr> <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 <td>15</td><td>12</td><td>9</td><td>6</td><td>3</td></tr> </table>					A	B	C	D	E	15	12	9	6	3	
A	B	C	D	E													
15	12	9	6	3													
수행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li> </ul> <table border="1"> <tr> <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 <td>10</td><td>8</td><td>6</td><td>4</td><td>2</td></tr> </table>					A	B	C	D	E	10	8	6	4	2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 추진의지의 적극성</li> </ul> <table border="1"> <tr> <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 <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					A	B	C	D	E	5	4	3	2	1	
A	B	C	D	E													
5	4	3	2	1													

### 3. 기타 개선방안

#### 1) 2단계 공모방식 활성화

- 현행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에서는 공모안의 종류를 설계안, 기술제안서, 아이디어로 규정하고,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1단계에서 아이디어 또는 기술제안서 심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 설계안을 제출받는 2단계 설계공모의 시행사례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임
  - 일부 일괄입찰방식 적용 사례 중 1단계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업체가 턴키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거나,
  - 설계공모의 경우에는 LH공사가 추진하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설계공모와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등에 국한
- 소형건축사사무소나 신진건축사 등 설계공모 참여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다수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단계 공모방식을 활성화할 필요
-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수준 이상의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공모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아이디어 또는 제안서 심사를 거쳐 2단계 설계안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모안 작성비용을 발주처가 부담

## 2)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도입<sup>21)</sup>

- 최근 일괄입찰방식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공기단축이나 창의성·예술성 필요 등의 사유로는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조정되었음
- 다만, 2010년 법 개정<sup>22)</sup>을 통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 현재 제도화 되어있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설계범위 및 설계수행 단계에 비추어 보면,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발주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본설계 실시 이후 실시설계 수립 전에 발주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실시설계 실시 이후 시공 실시 전에 발주되고 있음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그림 3-9] 설계범위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방식

- 현재의 일괄입찰방식과 기술제안입찰방식이 설계자보다는 시공자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시공의 편의성에 치우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점수를 의식한 결과 외형적으로 호화로운 공공건축 설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기존의 방식에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가칭)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가능

21) 염철호 외(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93~94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2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은 개념적으로 턴키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행복도시, 혁신도시에 한해 적용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 개정(2010.07))

- 과거 일부 사업<sup>23)</sup>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턴키발주 이전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설계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 일괄입찰방식의 특성 상 시공업체가 전체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원 설계나 아이디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당선된 업체가 함께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이상의 조건을 설정하기에는 한계
-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기본설계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안
  - 다만 하나의 기본계획만을 제시할 경우, 기본계획에 대한 발주청의 리스크 부담, 설계자의 입찰참여 문제, 저작권 문제, 공사비를 부담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설사의 입장 감안 필요 등의 해결이 전제될 필요
  - 따라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복수의 입상작의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포함<sup>24)</sup>하며, 제시되는 기본계획에는 재료마감, 개략견적 등 포함하고, 입찰평가 시 기본계획(안)의 변경 정도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따라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그림 3-10]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도입 개념

23)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경북도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24) 당선작을 선정하고 일괄입찰 시 당선작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당선작 설계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 4. 설계공모방식 개선을 위한 운영지침 개선방안

### □ 설계공모 시 자격제한 금지

-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표 3-23] 설계공모 자격제한 금지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 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 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설계공모는 --- 시행할 수 있다. 단,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 시행할 수 있다. 단,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다.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다.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설계공모 기간 90일 미만 가능 조항 개선

- 설계공모 기간은 9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표 3-24] 설계공모기간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②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 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p>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②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 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60일 이상 90일 미만의</u>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참가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p>	<p>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② 제1항에 의한 일정 중 참가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60일 이상 90일 미만의</u>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 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p>	<p>1. 입찰공고      나. 〈현행과 같음〉</p>

## □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설계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고, 과정경쟁 등의 우려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

[표 3-25] 심사위원 명단 공개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정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 결과 발표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정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③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일 전일에 선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명단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공모안 접수일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③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사전검토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안 접수일 전일에 선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명단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심사대상자에게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은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출물 간소화 규정 강화 및 작성비용 제공 조항 명시

- 설계공모 제출물에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되, 발주자가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 등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표 3-26] 제출물 간소화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발주처가 입상작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1조(제출도서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사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 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모형제작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해당사업의 특성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출도서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사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발주처가 입상작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모형제작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해당사업의 특성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2. 등록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2. 등록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구분	현행	변경안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CG, 토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발주처가 입상작에 대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 심사위원은 5~9인으로 구성하되,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 (소속기관 직원 참여 인원수 조항은 삭제)
- 건축계획분야 이외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

[표 3-27] 심사위원 자격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li> <li>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li> <li>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li> <li>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li> </ol>	<p>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li> <li>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li> <li>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li> </ol>

구분	현행	변경안
	<p>상인자</p> <p>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p> <p>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p> <p>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p>	<p>연구기관의 임원</p> <p>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p> <p>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p> <p>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p> <p>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17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원</p>	<p>제17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건축사 및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건축사·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p>

구분	현행	변경안
	<p>4.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5. 운영규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디자인분과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자      6. 기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p> <p>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① 심사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해 모집·등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계자문위원과 제17조 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p>	<p>(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4.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5. 운영규정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디자인분과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자      6. 기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p> <p>제18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① 심사위원은 운영규정에 의해 모집·등록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설계자문위원과 제17조 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5~9인을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소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1. 심사위원회 구성</p> <p>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p>	<p>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1. 심사위원회 구성</p> <p>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p> <p>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건축사 및 건축계획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p>

구분	현행	변경안
	<p>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p> <p>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p> <p>5) 기타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있는 자</p> <p>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자방자치단체 산하 자방공기업, 자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p> <p>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p> <p>5) 기타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 □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규정 강화

-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금 및 공모안 제작비(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 등 요구 시)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모안 작성비용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표 3-28] 입상작 비용 지급 관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16조(입상작)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⑤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6조(입상작)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u>④계약담당자는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u>⑤제4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u></p>

구분	현행	변경안
		<p>한다.</p> <p>⑥ 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25조(입상작) ④ 수요기관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⑥ 수요기관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5조(입상작) ④ 수요기관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계약담당자는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⑦ 수요기관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p> <p>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p>	<p>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p> <p>나. &lt;현행과 같음&gt;</p>

- 현행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홍보 및 처벌조항 강화 필요
  - 공공기관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의 설계공모 운영지침 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준수하도록 관련 기준의 홍보 및 교육 강화
  -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 각종 설계공모 운영지침 단일화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각종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통일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통합된 운영지침을 법적으로 규정
- 2단계 공모방식, 제안공모방식 등의 공모방식 관련 규정 구체화
  - 설계공모와 관련한 모든 지침에서 공모안의 유형으로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규정하고 있어 제안서를 제출하는 제안공모방식 등을 설계공모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음
  - 다만 2단계 공모방식 및 제안공모방식을 발주처가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규정
    - 현행 각종 설계공모 관련 지침은 아이디어나 제안서가 아닌 설계안을 공모안으로 제출받는 것을 전제로 발주처가 명확한 설계지침서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완성된 설계안을 제출받아 건축계획 및 설계에 전문성을 가지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것을 공통적인 틀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각종 설계공모 관련 지침을 공통사항과 설계공모, 2단계공모, 제안공모의 공모방식별 운영방법으로 제구성하고 각 공모방식 별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표 3-29] 제안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개정 방안

구분	현행	변경안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4조(설계공모의 종류)</p> <p>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 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 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p>	<p>제4조(설계공모의 종류)</p> <p>①〈현행과 같음〉</p> <p>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설계공모, 2단계 공모, 제안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4조(설계공모의 종류)</p> <p>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 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 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설계공모, 2단계 공모, 제안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설계공모 운영요령	<p>제1절 총칙</p> <p>1. 목적 및 적용대상</p> <p>2. 용어의 정의 〈신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설계공모의 종류</p> <p>가. 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나.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설계공모, 2단계 공모, 제안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표 3-30] 제안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각 설계공모 관련 지침 재편방향

구분	현행	재편방향
설계공모 운영지침	<p>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 제7조 등록 제8조 설계지침서 제9조 질의응답 제10조 제출도서 등 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3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14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제15조 심사 제16조 입상작 제17조 저작권 제18조 응모안의 전시 제19조 공모안의 반환 제20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21조 세부기준 제22조 재검토기한</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7조 등록 제8조 질의응답 제9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0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제11조 저작권 제12조 응모안의 전시 제13조 공모안의 반환 제14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15조 세부기준 제16조 재검토기한</p> <p><b>제2장 설계공모 운영방법</b> <b>제3장 아이디어공모 운영방법</b> <b>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b></p> <p>제1조 절차 제2조 일정 제3조 설계지침서 제4조 제출도서 등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7조 심사 제8조 입상작</p>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p> <p><b>제2장 설계공모 절차</b>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 제7조 참가등록 제8조 설계지침서 제9조 사업설명회</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6조 참가등록 제7조 사업설명회 제8조 질의응답 제9조 사전접촉 금지 등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임무 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p>

구분	현행	재편방향
	<p>제10조 질의응답      제11조 제출도서 등      제12조 심사계획 수립      제13조 공모안 검토      제14조 사전접촉 금지 등</p> <p><b>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b></p> <p>제16조 심사위원회의 임무      제17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8조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제19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1조 회의소집 및 개최      제22조 심사방법 등      제23조 공모안 설명      제24조 평가 및 채점      제25조 입상작      제26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제28조 심사위원 해촉      제29조 결과조치      제30조 저작권      제31조 공모안의 전시      제32조 공모안의 반환      제33조 심사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34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35조 기타사항</p>	<p>제12조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제13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 회의소집 및 개최      제15조 공모안 설명      제16조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제17조 심사위원 해촉      제18조 결과조치      제19조 저작권      제20조 공모안의 전시      제21조 공모안의 반환      제22조 심사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23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24조 기타사항</p> <p><b>제2장 설계공모 운영방법</b>  <b>제3장 아이디어공모 운영방법</b>  <b>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b></p> <p>제1조 설계공모의 일정      제2조 설계지침서      제3조 제출도서 등      제4조 심사계획 수립      제5조 공모안 검토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 심사방법 등      제8조 평가 및 채점      제9조 입상작</p>
설계공모 운영요령	<p><b>제1절 총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및 적용대상</li> <li>용어의 정의</li> </ol> <p><b>제2장 설계공모 절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공고</li> <li>등록</li> <li>질의점수 및 회신</li> <li>공모안의 제출</li> <li>심사위원회의 개최</li> <li>공모안의 평가</li> <li>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li> <li>계약당사자 결정 및 계약체결</li> <li>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li> <li>기타사항</li> </ol>	<p><b>제1절 총칙</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및 적용대상</li> <li>용어의 정의</li> <li>입찰공고</li> <li>등록</li> <li>질의점수 및 회신</li> <li>공모안의 제출</li> <li>계약당사자 결정 및 계약체결</li> <li>심사위원회 구성</li> <li>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li> <li>심사위원회 운영</li> <li>세부기준의 제정</li> <li>기타사항</li> </ol> <p><b>제2절 설계공모 운영방법</b>  <b>제3장 아이디어공모 운영방법</b></p>

구분	현행	재편방향
	<p>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위원회 구성</li> <li>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작기피회피</li> <li>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li> <li>4. 심사위원회 운영</li> </ol> <p>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p>	<p>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위원회의 개최</li> <li>2. 공모안의 평가</li> <li>3.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li> <li>4.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li> </ol>

## 제4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1. 현행 가격입찰방식의 문제점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문제점
3. 가격입찰방식의 개선방안

### 1. 현행 가격입찰방식의 문제점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사례 분석

##### □ 분석 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고시된 건축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사례 7건과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sup>25)</sup>한 도 및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축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사례 26건 총 33건

##### □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평가기준 구성 현황

- 전체 중 76%인 25건이 국토해양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조달청 기준과 같이 설계공모 수상실적을 추가하고 있음
- 1건은 타 사례에 비해 설계공모 수상실적에 15점을 부여하는 대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적용하지 않음

---

25) 서울시와 6대 광역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PQ방식으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설계공모로 발주하고 있음

[표 4-1]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평가기준 구성 비교

구분	설계공모 수상실적	참여 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 종침도	건수(%)
A	–	50	15	10	15	10	25(76)
B	5	50	15	10	10	10	3(9)
C	2	49	14	10	15	10	2(6)
D	5	49	16	10	10	10	2(6)
E	15	50	15	10	–	10	1(3)

□ 설계공모 실적 관련

- 현상공모 실적을 반영한 8건 중 5점을 부여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고, 15점 부여 사례가 1건, 2점 부여 사례가 2건으로 나타남
- 배점기준에서는 최근 5년간 당선 및 입선건수로서 환산점수 10점 이상 만점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 당선 및 입선건수로서 환산점수 5점 이상 만점 사례가 1건, 최근 10년간 당선 및 입선건수로서 환산점수 12점 이상 만점 사례가 1건임

□ 사업책임기술자 관련

- 85%인 28건이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유사용역 실적 제외 사례가 4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제외 사례가 1건으로 나타남

[표 4-2] 사업책임기술자의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평가항목					건수(%)
자격	경력	유사용역 실적	기술능력	업무 관리능력	
5	6	7	1	1	28(85)
5	18	–	1	1	4(12)
5	7	8	–	–	1(3)

- 자격에 대해서는 건축사 자격만으로 만점을 부여한 사례는 13건으로 40%에 그치고, 특급기술자일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7건, 건축사 취득 후 15년 이상을 만점으로 부여하는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남
- 경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기준 예시의 20년 이상 만점의 사례가 21 건(64%)으로 가장 많고, 조달청 기준인 12년 이상 만점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25년 이상을 만점으로 부여한 사례도 2건이 있음
- 사업책임자 유사용역실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기준에서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15건 이상 만점 사례가 10건(30%)으로 가장 많고, 20건 이상 만점 사례가 7건, 30건 이상 만점 사례도 7건으로 나타남

[표 4-3] 사업책임기술자 평가항목의 세부배점기준 비교

자격	항목	특급 기술자 만점	건축사 (건축사 만점)	건축사 (취득후 10년이상 만점)	건축사 (취득후 15년이상 만점)	기타
	건수(%)	7(21)	13(40)	3(9)	6(18)	
경력	항목	12년이상 만점	15년이상 만점	20년이상 만점	25년이상 만점	
	건수(%)	6(18)	4(12)	21(64)	2(6)	
유사 용역 실적	항목	10건이상	15건이상	20건이상	30건이상	기타
	건수(%)	7(21)	10(30)	7(21)	4(12)	4(12)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관련

- 70%인 23건이 국토해양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 사례가 4건, 전차용역 수행실적 제외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남

[표 4-4]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평가항목 및 배점			건수(%)
실적건수	실적금액	전차용역수행실적	
7	7	1	23(70)
15	–	–	4(12)
7	7	–	6(18)

- 배점기준에서 우선 실적건수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10건 이상을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 만점을 부여한 사례가 19건(58%)로 가장 많고, 최근 10년간 3건 이상을 수행한 경우에 만점을 부여한 가장 완화된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됨
- 실적금액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만점을 부여한 사례가 10건(34%), 50억 이상에 만점을 부여한 사례가 11건(38%)으로 나타남

[표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의 세부배점기준 비교

실적 건수	항목	최근 5년간 5건이상 만점		최근 5년간 10건이상 만점		최근 10년간 3건이상 만점		최근 10년간 10건이상 만점	
		건수 (%)	6(18)	19(58)	5(15)	3(9)			
실적 금액	항목	4억이상	10억이상 만점	50억이상 만점	70억이상 만점	100억이상 만점			
	건수 (%)	1(3)	10(34)	11(38)	4(14)	3(10)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관련

- 전체 중 33%인 11건이 국토해양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기준에서 R&D 참여실적 항목을 제외한 사례가 14건(43%)으로 가장 많으며, 개발실적과 투자실적만을 반영한 사례가 5건으로 나타남

[표 4-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

평가항목 및 배점				건수(%)
개발실적	활용실적	투자실적	R&D참여실적	
2	3	10	—	14(43)
2	3	9	1	11(33)
2	—	8	—	5(15)
—	—	—	—	2(6)
5	—	10	—	1(3)

##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의 문제점

-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보다는 가격점수에 의해 결정
  - 고시금액 미만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능력평가가 배제되고 경영상태 및 가격입찰에 의해 설계자가 선정되며, 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에 비해 입찰가격 비중이 매우 커 결국 설계자 선정이 운찰제로 전락
    - 설계비 1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이 입찰가격에 비해 낮아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 곤란
  - 설계비 5억 이상 사업은 기술자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용역의 대부분은 5억 미만 규모로 기술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계와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창의성을 요하는 건축설계와는 맞지 않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 등의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채용하고 있음
    - 조달청의 경우, 기술용역과 건축설계를 구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설계공모 실적을 추가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 등의 비중이 큼
  - 10억 이상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제안서 평가는 설계공모 평가기준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 설계자의 기술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못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5조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의 경우, 건축설계와 기술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배점기준 또한 도로분야만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 발주청이 건축설계에 적합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조달청의 경우, 세부평가기준을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 대형업체에만 유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설계 참여 기술자보다는 유사용역수행실적, R&D 투자실적 등 업체실적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실정임
  - 조달청의 경우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책임건축사의 실적으로 적용
-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형건축사사무소가 아니면 신진 건축사 또는 소형건축사사무소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에 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실제로 최근 시행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유리한 사항이 많음을 확인
  - 현상설계공모실적 : 당선 2점, 입선 1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0점 이상을 받아야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례가 대부분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건축사 자격 소지에 더하여 취득 후 10년 또는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만점을 부여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경력 또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 만점을 부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25년 이상 경력에 만점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됨
  - 유사용역수행실적 : 최근 5년간 10건 이상을 수행해야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례가 가장 많음
  - 신용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로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아야만 만점(3점) 부여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건설신기술 2건, 총매출 3%이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을 만족하여야만 만점(10점) 부여

## □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책임건축사에 대한 실적부여 미흡

- 건축사 업무실적관리는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수행한 설계·공사감리 등 업무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임하여 운영 중

-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주 등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도록 규정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 나. 건축허가서
-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 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실질적으로 경력신고가 대표 또는 법인등록 건축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의 경우에는 독립 시, 이전에 수행한 설계 프로젝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실정임
  - 프로젝트에 책임건축사로 참여한 자와 업체가 실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문제점

- 건축설계가 지식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근거 미비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 설계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건축설계 용역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불명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지만 건축설계 용역을 단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디자인 사업, 전시시설 신축설계 등에서는 디자인업체나 전시업체 등과 공동계약으로만 건축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3. 가격입찰방식의 개선방안

####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 □ 수행능력 평가비중 확대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적격심사 방식에서 가격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50%이상에 달함<sup>26)</sup>
- 공공발주 용역의 대부분이 설계비 5억 미만임을 감안할 때, 저가 설계 비에 의해 설계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PQ방식 적용 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영상태 대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비중도 확대함으로써 기술력의 평가비중을 높일 필요

[표 4-7]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방안

금액별 구분	수행능력 : 입찰가격 (현행)		수행능력 : 입찰가격 (개정안)	
10억원 이상	PQ 적 용	70 (PQ→기술제안서) : 30	PQ 적 용	70 (수행능력) : 30
10억원~5억원		50 (PQ→기술자) : 50		
2.5억~5억 (국가) 2.5억~5억 (조달청) 3.8억~5억 (지자체)	PQ 비 적 용	30 (PQ) : 70	PQ 비 적 용	50 (수행능력) : 50
~2.5억 (국토부) 3.8억~2억 (지자체)		30 (수행능력) : 70		
~2.5억 (조달청) ~2억 (지자체)		10 (경영상태) : 90		

26) 또한 최근 발표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 마련방안(12,08)에 따르면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확대

- 설계비 5억 이상의 경우는 기술자 평가,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설계비 2억 미만의 비중이 80% 이상인 공공건축설계 용역의 현실과 맞지 않음
  - 또한, 최근 발표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개정방향(12.07)에 따르면 향후 기술자평가대상을 10억 이상으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15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임
- 건축설계의 품질이 설계자의 기술력 또는 창의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PQ를 적용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4-8] 용역 규모별 PQ적용기준 개선안

현행			개정안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설계
2.5~5억	PQ & SOQ	PQ	2.5~5억	PQ & SOQ	PQ	PQ & TP
5~10억			5~10억			
10~20억	PQ & TP	PQ & SOQ	10~20억	PQ & SOQ	PQ & TP	PQ & TP
20억~		20억~				

## □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마련

- 현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토목 엔지니어링의 기술용역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개정을 통해 현상설계 공모실적 추가, 신용도 점수 축소, 건축설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술개발·투자실적 점수 축소 등을 반영한 건축설계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필요

[표 4-9] 건축설계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예시

평가항목	현행	조달청 (건축)	개정안 (건축)	평가방법
설계공모 실적	0	5	10	· 설계공모 당선 및 입선 건수
참여기술자	50	50	58	· 책임건축사,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교육훈련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15	15	· 책임건축사의 수행실적
신용도	10	10	5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재정상태 건설
기술개발 실적	15	10	2	· 건축시공 관련 실적은 배제
업무중첩도	10	10	10	· 책임건축사·참여기술자 업무하중

-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변별력 부족·대형업체 유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표 4-10] 건축설계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예시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설계공모 실적	10	• 최근 10년간 설계공모 당선, 입선실적 (당선 2점, 입선 1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0점이상</td> <td>9~7점 이상</td> <td>6~3점 이상</td> <td>2~1점 이상</td> <td>0</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10점이상	9~7점 이상	6~3점 이상	2~1점 이상	0	10	9	8	7	6
10점이상	9~7점 이상	6~3점 이상	2~1점 이상	0												
10	9	8	7	6												
참여 건축사 및 기술자	20	• 책임건축사의 경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2년 이상</td> <td>9년 이상</td> <td>6년 이상</td> <td>3년 이상</td> <td>3년 미만</td> </tr> <tr>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8	• 책임건축사의 기술능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최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불량</td> </tr> <tr> <td>8</td> <td>7</td> <td>6</td> <td>5</td> <td>4</td> </tr> </table>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8	7	6	5	4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8	7	6	5	4												
5	• 책임건축사의 업무관리능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최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불량</td> </tr> <tr>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5	• 책임건기술자의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특급</td> <td>고급</td> <td>중급</td> <td>초급</td> <td></td> </tr> <tr> <td>5</td> <td>4.5</td> <td>4</td> <td>3.5</td> <td></td> </tr> </table>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분야 전담기술자의 경력 (각 분야 합산)</li> </ul> <table border="1"> <tr> <td>12년 이상</td><td>9년 이상</td><td>6년 이상</td><td>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 <tr> <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 </table>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4점</li> <li>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li> </ul> </li> </ul>																									
전차용역 수행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책임기술자 : 0.5점</li> <li>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li> </ul> </li> </ul>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용역에 대한 책임건축사 수행실적(최근 10년간)</li> </ul>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td>4건</td><td>3건</td><td>2건</td><td>1건 미만</td></tr> <tr> <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 </table>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미만	15	13.5	12	10.5	9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미만																						
15	13.5	12	10.5	9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기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따라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li> </ul>																							
	신용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비율 (1점)               <table border="1"> <tr> <td>100% 미만</td><td>125% 미만</td><td>150% 미만</td><td>175% 미만</td><td>175% 이상</td></tr> <tr> <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li> <li>유동비율 (1점)               <table border="1"> <tr> <td>100% 이상</td><td>100~75%이상</td><td>75~50%이상</td><td>50~25%이상</td><td>25%미만</td></tr> <tr> <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li> </ul>					100% 미만	125% 미만	150% 미만	175% 미만	175% 이상	1.0	0.9	0.8	0.7	0.6	100% 이상	100~75%이상	75~50%이상	50~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100% 미만	125% 미만	150% 미만	175% 미만	175% 이상																						
1.0	0.9	0.8	0.7	0.6																						
100% 이상	100~75%이상	75~50%이상	50~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부실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li> </ul>																									
기술개발 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설계 관련 실적만 인정(건설공사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li> <li>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li> </ul> </li> </ul>																							
업무 중첩도	책임 건축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li> </ul>																							
	분야별 책임 기술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중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li> </ul>																							

##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근거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근거 확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서비스산업
8.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9.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장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방안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개요
2. 시범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개선방안 및 장기적 추진방안

###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개요

#### 1) 시범사업 추진 배경<sup>27)</sup>

- 젊고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육성 필요성 제기
  - 최근 민간부문의 초고층·대형 건축물 설계자 선정 시 유명 해외건축사를 선호함에 따라 국내 건축시장이 해외 업체에 잠식
  - 국내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신진건축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 기존 공공건축사업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신진건축사 참여 기회 제한
  -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자 선정 시 실적과 규모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사실상 신진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제한. 신진건축사의 경우,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규모, 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시장에 진입 곤란

---

27)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2012),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 참조.

-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 참여 곤란
  - 일반적인 설계공모에서 요구하는 제출물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
  -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나,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설계에 대한 보상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진건축사들이 운영하는 소형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공모 참가 시 사무소 운영에 위험 부담을 안게 됨
- ※ 최근 6개월간 나라장터에 공고된 24개의 설계공모 중 23건의 제출물 요건에 조감도 포함. CG(Computer Graphic)를 활용한 조감도의 경우, CG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가 20~30백만원 정도 소요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방안 제시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등을 통해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제시
  -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친환경 녹색주거 설계 등과 같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진 디자이너 제한 설계공모를 시행, 일정 규모의 공공건축에 대한 신진 설계자의 설계기회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
- 2012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신진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
  -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마련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방안」을 2012년 4월 5일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2012년부터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

## 2) 추진방식<sup>28)</sup>

### □ 추진방향

- 일부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하여 설계공모 추진
  - 그간 기성 건축사 위주로 조성되어 온 공공건축시장의 신진건축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신진건축사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
  -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 중 신진건축가 35명을 선발하여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서 지명공모를 실시하는<sup>29)</sup>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신진건축가 육성 정책 추진
  -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모자격을 제한하여 공모 추진
- 유능한 신진건축사 발굴·홍보를 위한 시상·전시 기회 등 확대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진행 중 공개 발표, 시상, 당선작 전시 등의 기회를 통해 신진건축사 지명도 향상 및 대외홍보 효과 기대

### □ 응모 자격

- (연령) 만 45세 이하로 하되, 발주기관 및 대상사업별로 연령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연한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 ※ 만 45세는 건축사의 실무경력 및 타기관 사례(문화부 젊은 건축가상,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
- (자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단, 기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제외
-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만 45세 이하)와 공동으로 참여 가능

28)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2012),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 참조.

29)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형 공공건축가(총 77명, 2012.2월 위촉) 중 신진건축가(35명) 및 디자인 우수분야(25명)을 대상으로 지명공모 실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3억 이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

## □ 공모 방법

-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단계 공모로 시행
  - (1단계) 제안서 공모·평가를 통해 3~5명 선정
    - ※ 중소업체의 규모와 자금력을 감안하여 2단계 설계공모방식 채택. 구체적인 설계안이 아닌 간단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참여자 부담 최소화
  - (2단계) 1단계 선정자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자 선정
    - ※ 1단계에서 선정되어 2단계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모작품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신진건축사들의 실질적인 공모참여 기회 확대
- 사업 일정이 촉박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2단계 공모가 곤란한 경우 1단계 공모방식 적용
-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별 의견은 심사위원 실명 공개

## □ 당선자 및 당선작 홍보 방안

- 건축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하여 당선작 전시회 개최 및 작품집 발간

### 3) 대상 프로젝트 개요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2012년도에 발주하는 건축설계용역을 대상으로 발주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적용대상 및 공모방식 선정
  - 공공건축물 중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신진건축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용이한 사업 위주로 선정
  -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12년에는 10개 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 추진<sup>30)</sup>

[표 5-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현황

기관	추진방법	적용사업	비고
LH 공사	소규모 사업시행 시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2단계 설계공모 추진 -1단계 공모 ·아이디어로 5명 선정 -2단계 공모 ·5인 지명초청공모	인천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12.5.31 공모 공고 '12.7.23 1단계 심사 '12.9.13 당선작 선정 (영종 : 건축사사무소 이담 최종문,43세) (청라 : 디자인그룹 오즈 최 재원,35세)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	
		대구달성군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공공임대주택	'12.7.13 공모 공고 '12.9.12 작품공개심사 및 당선작 선정 (야가투건축 양성중,44세+공 명건축 김진숙,44세)
SH 공사	45세 이하 건축사로 신진건축가 POOL 구성 ('12.3.2, 2년 임기) 설계용역자 선정 시 POOL에 등재한 건축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용역비 2억원이하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공공임대주택	'12.9.8 공모 공고 '12.9.17 제안서 접수 '12.10.8 공모안 접수 '12.10.11 당선작 선정 (정현종합건축 서영인,38세)
		공릉동 기숙사/ 역삼동 원룸주택	'12.8.9 공모 공고 '12.8.20 작품 접수 '12.9.3 당선작 선정 (유오에스건축 정기정,43세)
		연희동 기숙사/ 천왕동 원룸주택	당초 2012년 하반기 추진 예 정이었으나 시행 어려움 사업추진 미정

30)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추진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고 있음

기관	추진방법	적용사업	비고
경기 도시 공사	미정 (시행자간 협의 추진 필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호수공원내 문화복지시설	시행자간 협의 후 하반기 용역 발주 (시행자간 협의가 곤란할 수 있음)
한국 수자 원공 사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1단계공모	경북 경산시 자인정수장 리모델링공사	'12.5. 3 공모 공고 '12.6.13 공모 재공고 '12.6.20 공모 등록 '12.7.20 공모안 접수 '12.8. 6 당선작 선정(가우스 건축사사무소 김창호, 44세)
한국 도로 공사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1단계공모	고속국도제40호 충주제천선 동충주 영업소 건설공사	'12.4.12 공모 공고 '12.4.23 공모 등록 '12.6.21 공모안 접수 '12.6.22 당선작 선정 (탑플랜건축 박성철)
포항 시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1단계공모	해도동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12.10 공고예정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제공한 추진현황자료(2012.10.16)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시범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수행방안 및 주요 검토 사항

#### □ 신진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모니터링 목적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도로 시행 중인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 사업의 발주기획과정, 선정과정, 선정 후 협의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장기적 추진방안을 제시

#### □ 모니터링 방법

- (과업 발주 및 설계심사) 설계요청서, 공모공고, 심사방식 검토
- (설계심사 후) 설계참여자에 대한 평가의견 수집

#### □ 모니터링 주요 내용

- (공모 제출물의 적정성) 신진건축사 대상 시범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출물 간소화 여부 등
- (선정방식의 적절성) 심사위원 선정, 설계자 설명기회 부여, 심사기준 적절성
- (설계진행의 적절성) 공모 시 발주청이 제시한 설계조건, 당선된 설계안 등의 변경 여부, 공모당선안의 문제점 여부 등

#### □ 모니터링 주요 대상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과제수행기간(2012.4.9 ~ 2012.9.8) 내에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모 공고, 설계자 심사 및 선정 등 공모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sup>31)</sup>
- (관련 참고 사례) LH공사가 추진한 강남 보금자리주택 A4블록 설계공

---

31) SH공사의 공릉동 기숙사와 역삼동 원룸주택은 2012년 8월 9일 공모가 공고되고 2012년 9월 3일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나, 자료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모는 국내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모 절차가 완료되어 당선자가 선정되고 설계 진행 과정에 있음. 따라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기 추진된 참고 사례로서 향후 추진 방안 도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분석 대상에 추가함

[표 5-2]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모니터링 주요 대상

구분	시행주체	대상사업
2012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LH공사	인천 청라·영종 공공도서관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공공임대주택
		한국수자원공사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한국도로공사	동충주영업소 건설공사
참고사례	LH공사	강남 보금자리주택 A4 블록

## 2)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및 관련사례 사업별 추진 현황

### ① LH공사 청라 · 영종 도서관

#### □ 추진배경<sup>32)</sup>

- 젊고 창의적인 신진 건축사에게 설계공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 사업개요

[표 5-3] 인천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및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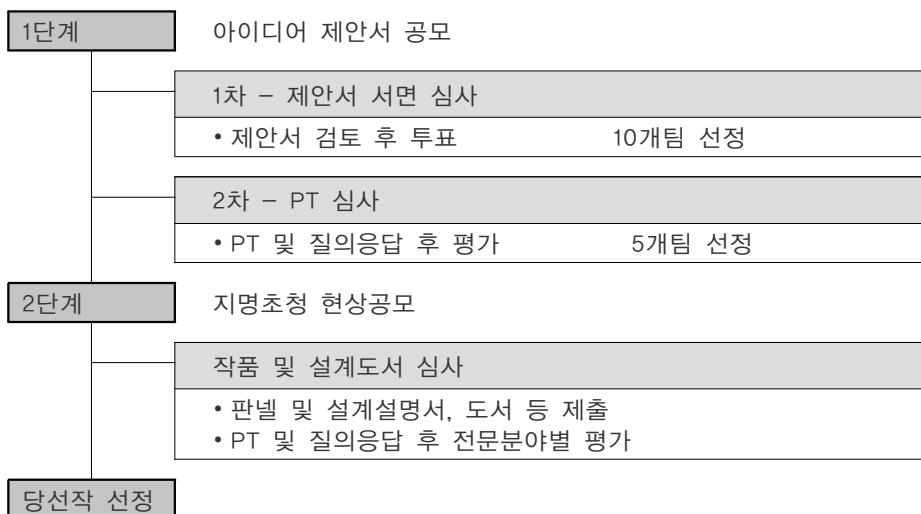
구분	인천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
위치	청라국제도시 제1호 문화공원 내	영종하늘도시 제17호 근린공원 내
부지면적	1,500m <sup>2</sup> (공원면적104,212m <sup>2</sup> )	5,000m <sup>2</sup> (공원면적353,661m <sup>2</sup> )
연면적	2,000m <sup>2</sup>	2,500m <sup>2</sup>
층수	지상3층 지하1층 이내	지상2층 지하1층 이내
예상공사비	42억원	52억원
설계금액	239,679천원	296,978천원

#### □ 추진방식

- 제한공개 건축설계공모
  - 196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건축사(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일 경우 전원 해당). 단, 기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제외
- 입상작에 대한 설계비 보상
  - 당선작 1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2차 심사 참여작(4점 이내)에는 500만원(세금 포함) 지급

32) LH공사(2012), “신진건축사 대상 건축설계공모 공고(안)” 참조.

- 공모 절차<sup>33)</sup>
  - 1단계 제안서심사 + 2단계 작품심사(사전검토와 본심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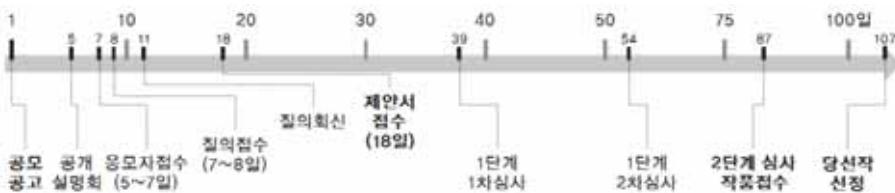


[그림 5-1] 청라 · 영종도서관 공모 절차

#### □ 추진일정

- 2012. 06. 01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12. 06. 17 : 응모신청 마감(청라 28개, 영종 25개 업체)
- 2012. 06. 18 : 제안서 작품접수(청라 15개, 영종 19개 업체)
- 2012. 07. 23 : 1단계 심사(5개 업체 선정)
- 2012. 08. 24 : 2단계 작품접수
- 2012. 09. 13 : 당선작 선정

33) LH공사(2012), “신진건축사 대상 건축설계공모 공개심사 계획(안)” 참조.



[그림 5-2] 청라 · 영종도서관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 제출물 양식

- 1단계 제안서
  - A3 횡용지 좌철로 표지를 포함하여 6쪽 이내로 제본, 20부 제출
  - 백색 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표 5-4]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1단계 제안서 도서작성 지침

순서	항 목	세 부 항 목	매 수 (A3)
1	표지	붙임#8-1	1쪽
2	계획개념	도서관에 대한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1쪽
3		주변환경분석 / 동선 및 배치개념	1쪽
4		Concept Design / Sketch	2쪽
5	기타	제안사항(특화사항)	1쪽
총 페이지 수		6쪽(표지포함) 이내	

- 2단계 작품
  - 도판(A1)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조감도만 칼라)
  - 설계설명서는 A4 횡용지 좌철로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내용을 20쪽 이내로 제본하여 제출

[표 5-5]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2단계 작품심사 도판 포함 사항

구분	포함 사항
도판1	조감도(단, 조감도는 도판 1매 활용/1컷만 사용가능)
도판2	배지도, 건축개요 및 평면도
도판3	입면도, 단면도, 기계, 전기, 통신 및 특화설계

[표 5-6]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설계설명서 포함 사항

항 목	세부항목	매 수
계획방향 및 계획의 주안점		1쪽
배치계획	현황분석, 배치계획개념, 배치대안 분석	2쪽
	보행 및 주차 동선계획	1쪽
건축계획	기본방향, 건축개요, 실별면적, 평/입/단면계획	7쪽
경제성	구조, 토목, 기계, 전기통신 분야별 계획	4쪽
	신기술, 신공법 도입에 의한 생애주기비용 절감계획	1쪽
특화계획	친환경 건축계획, 옥외공간계획	1쪽
	무장애계획,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및 기타	1쪽
추가설명 사항	개략공사비, 법규분석(붙임#9), 재료마감 및 기타	2쪽 이내

#### □ 심사 및 입상자 선정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공개
  - 심사위원 선정 결과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와 사유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sup>34)</sup>
- 제안서 심사 평가기준

[표 5-7]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설계 평가기준(제안서 심사)

평가항목	세부분야 및 평가 착안사항	가중치	비 고
계획방향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건축사의 철학 -공공도서관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계획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컨셉 디자인(Concept Design)의 창의성 및 예술성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상대 평가
특화계획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무장애 계획 -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친환경 건축계획 -지역사회 연계 및 주변 공원과의 조화	20	상대 평가
합계		100	

34) LH 설계용역업무 지원시스템 공모안내 페이지에 공지

- 2차 작품심사 평가기준

[표 5-8] 청라제1도서관 및 영종제2도서관 설계 평가기준(2차 작품심사)

평가항목	세부분야 및 평가 착안사항	가중치	비 고
배치계획	-일조, 에너지절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보행, 차량 동선 처리계획의 적정성 -부지이용계획(지형, 공간의 유기적 연계 등)의 적정성	20	
건축계획	-건축계획의 예술성·작품성(30) -건축계획의 예술성, 작품성, 독창성 -개구부, 주출입구, 창호 등 입면요소 디자인의 창의성	50	상대 평가
	-합리적인 공간구성, 평면배치계획(20) -평면 및 내부의 합리적인 공간구성(조닝, 동선 등) -실내계획의 합리성 및 효율성 -평면계획과 외관계획의 정합성 -합리적인 기계·전기 및 통신설비 계획		
경제성	-구조계획의 기술성, 안정성 및 경제성 -시공공법의 적정성 및 경제성 -사용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내·외장계획 -합리적인 기계·전기 및 통신설비 계획 -신기술, 신공법 도입에 의한 생애주기비용 절감계획	20	
특화계획	-안전사고 예방 및 무장애 계획 -친환경 건축계획 -지역사회 연계, 개방계획 및 주변 공원과의 조화	10	

#### □ 심사 결과

- 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 :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대표 최재원, 35세) 당선
-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 : 건축사사무소 이담(대표 최종문, 43세) 당선



[그림 5-3] 청라국제도시 제1공공도서관(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및  
영종하늘도시 제2공공도서관(건축사사무소 이담) 설계공모 당선작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ap.go.kr/>)

## ② LH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공공임대주택

### □ 추진배경

- 디자인 수준 향상이 필요한 전략적 사업추진지구인 대구테크로폴리스 지구 A7블록에 대하여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

### □ 사업개요

[표 5-9]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블록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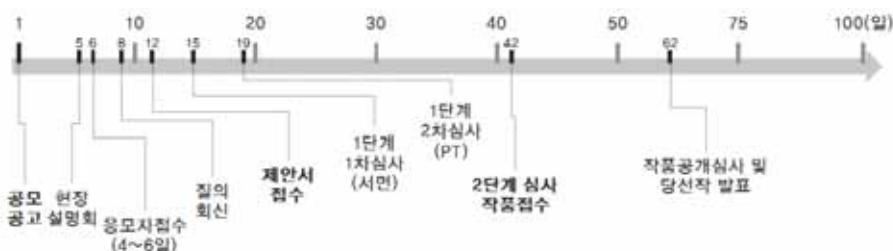
구분	내용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대구테크로폴리스 산업단지
사업면적	7,269,123 m <sup>2</sup>
목표 공사금액	82,502 백만원(부가세 포함)

### □ 추진방식

- 제한공개 건축설계공모
- 입상작에 대한 설계비 보상
  - 당선작(1개)에 대해서는 계획·기본·실시설계권 부여, 미 당선작(4개 이하)에 대해서는 각 상금 2천만원 지급

## □ 추진일정

- 설계공모 공고 : 2012.07.13
- 제안서 접수 : 2012.07.24
- 제안서 서면심사 : (1단계 1차) 2012.07.27, PT심사(1단계 2차) 2012.07.31
- 1단계 심사 당선작 발표 : 2012.08.01
- 작품공개심사 및 당선작 선정 : 2012.09.12



[그림 5-4] 대구 테크노폴리스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 제출물 양식

- 1단계 제안서 제출 : 설계제안서
  - A3 규격, 7매 이내(표지포함, 속지불허)
  - CAD 및 CG 등에 의한 구체적인 단지배치, 조감도는 불가함을 명시

[표 5-10]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1단계 제출물 세부내용

순 서	항 목	세 부 내 용	매수(A3)
1	표 지	서식23 참조	1쪽
2	분석/이해	현황분석 및 계획조건 분석	1쪽
3	목표설정/ 주요계획	계획방향/목표개념제시	2쪽
		조닝(공간구성), 보행 및 차량동선계획, 배치계획, 주차계획, 커뮤니티 공간계획	
4	특화방안	입면다양화 방안 제시	1쪽
		디자인포인트 및 스케치(입면다양화)	1쪽
해당항목 뒤	기 타	기존 세부내용 부연 등(선택사항)	1쪽
종페이지 수		7쪽(표지포함) 이내	

- 2단계 제출
  - 설계도판, 설계도면, 설계계획서, 설계개요 및 면적산출표, 축소 모형, CD, 작품설명자료, 1단계 아이디어제안서 등
  - 제출물 간소화 : 설계도판에서 투시도와 조감도 등 3D표현 금지

[표 5-11]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2단계 제출물 종류

구 分	규 格	축 척	수 량	비 고
설계도판	지구별 설계지침 참조	지정축척	1식	-도판 2장
설계도면		지정축척	30부	
설계계획서	A4	-	30부	-1식으로 통합제본 -서식18(설계설명서) -서식19(사업성향상계획서)
설계개요 및 면적산출표	A4	-	10부	-서식4~서식9
축소모형	지구별 설계지침 참조	지정축척	1식	-받침 및 덮개 포함
작품설명자료	-	-	-	-설계도판, 설계도면, 설계계획서 내용만 사용 가능하며, 파일만 제출 (설명자료 15매 이내)
1단계 아이디어 제안서	A3	-	20부	-기존 1단계에서 작성한 제안서 수정없이 제출
구비서류	서식참조	-	1식	-서식10~서식15

#### □ 심사 및 입상자 선정

- 1단계 제안서 평가기준

[표 5-12]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1단계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비 고
계획전반	이해도	대상 사업지분석 및 프로젝트 이해도	20	상대 평가
	합리성	계획방향/개념설정의 적정성	40	

		주요 기본계획의 합리성		
특화 아이디어	참신성	아이디어의 구성 및 내용	20	
	현실성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20	
합 계			100	

- 2단계 설계 평가기준

[표 5-13]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2단계 설계 평가기준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지구유형별 배점			비고
		테마	D-전략	D-향상	
단지계획 분야	- 토지이용계획 및 주동배치계획 - 동선계획 및 옥외공간계획 - 부대복리 및 주차시설 계획	40	40	40	상대 평가
건축계획 분야	- 단위세대 및 주동의 공용공간 계획 - 주동의 입면계획 - 부대복리시설 계획 - 주차시설 계획	40	40	30	
사업성 분야	- 단지, 주동 및 단위세대 계획 - 기타 시설물 계획 측면	10	10	20	
중점심사 분야	* “라. 중점심사분야”의 중점심사분야 운용방법 참조	30	20	10	
합 계		120	110	100	
가점	- VE 경진대회 입상자 - 공간계획 용역 입상자 - 설계용역업체평가 우수업체	최대 +3점			절대 평가
감점	- 법령위반 - 지침위반 - 도서작성위반 - 설계용역업체평가 하위업체	최대 -1.5점			

#### □ 공개심사

- 2012년 9월 12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설계업체 직원, 대학(원)생, 관련 업무 종사자, 일반인 등의 참관 하에 대구테크노폴리스 A7BL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에 대한 공개심사 실시
- 공개심사는 설계공모 개요 소개 이후 참가 업체에 의한 작품설명(PT)과 심사위원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완료 후 당선작을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고 응모작품에 대한 관람을 실시

- 심의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사전에 준비되고 일부 내용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등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규 문제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져 작품의 아이디어에 대한 발언 기회는 부족하였음



[그림 5-5]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설계공모 공개심사 장면 (2012.9.12)

#### □ 심사 결과

- 야가투건축사사무소(대표 양성중, 44세)와 공명건축사사무소(대표 김진숙, 44세)가 공동 응모한 작품 선정



[그림 5-6]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A7BL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야가투건축사사무소+공명건축사사무소)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ap.go.kr/>)

### ③ LH공사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공공임대주택

#### □ 추진배경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a-9/Aa-12/Ab-19/Ab-24BL에 대한 주택단지 설계(안)을 현상 공모하면서 이 중 Ab-19BL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로 추진

#### □ 사업개요

[표 5-14]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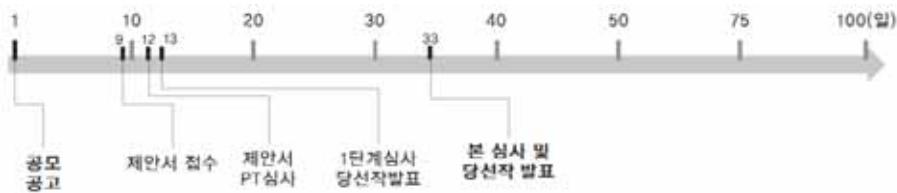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사업면적	24,842m <sup>2</sup> (Aa-19BL)
목표 공사금액	62,609백만원(Ab-19BL)
입지여건	사업지구는 경기도 최남단 지역 및 평택시의 동쪽부에 위치하며, 평택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7km 거리에 입지

#### □ 추진방식

- 제한공개 건축설계공모 :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건축사 대상
- 입상작에 대한 설계비 보상
  - 당선작(1개)에 대해서는 계획·기본·실시설계권 부여, 미 당선작(4개 이하)에 대해서는 각 상금 1천5백만원 지급

#### □ 추진일정

- 설계공모 공고 : 2012.09.08
- 제안서 접수 : 2012.09.17
- 제안서 서면심사 : (1단계 1차) 생략, PT심사(1단계 2차) 2012.09.20
- 1단계 심사 당선작 발표 : 2012.09.21
- 본 심사 및 당선작 발표 : 2012.10.11((주)정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인)



[그림 5-7]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공모 절차 및 일정  
(공고일 기준 소요일수)

#### □ 제출물 양식

- 1단계 제안서 제출 : 설계제안서
  - A3 규격, 7매 이내(표지포함, 속지불허)
  - 제출물 간소화 : CAD 및 CG 등에 의한 구체적인 단지배치, 조감도는 불가함을 명시
  - PPT는 15장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컬러 가능, 동영상 금지)

[표 5-15]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1단계 제출물 세부내용

순 서	항 목	세 부 내 용	매수(A3)
1	표 지	서식23 참조	1쪽
2	분석/이해	현황분석 및 계획조건 분석	1쪽
3	목표설정/ 주요계획	계획방향/목표개념제시	2쪽
		조닝(공간구성), 보행 및 차량동선계획, 배치계획, 주차계획, 커뮤니티 공간계획	
4	특화방안	부대복리 및 커뮤니티시설 특화 방안 제시 (공간구성, 입면특화, 신규아이템 제시 등 제한없음)	1쪽
		디자인포인트 및 스케치(입면다양화)	1쪽
해당항목 뒤	기 타	기존 세부내용 부연 등(선택사항)	1쪽
총페이지 수		7쪽(표지포함) 이내	

- 2단계 제출
  - 설계도판, 설계도면, 설계계획서, 설계개요 및 면적산출표, 축소 모형, CD, 작품설명자료, 1단계 아이디어제안서 등
  - 제출물 간소화 : 모든 도판 및 도서에는 투시도와 조감도 등 입체화 표현(3D) 금지

[표 5-16]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2단계 제출물 종류

구 分	규 格	축 척	수 량	비 고
설계도판	지구별 설계지침 참조	지정축척	1식	- 도판 2장
설계도면		지정축척	30부	- 서식18(설계설명서) - 서식19(사업성향상계획서)
설계개요 및 면적산출표	A4	-	10부	- 서식4~서식9 - 서식20 (동별 주차대수 배분결과 검토표) - 서식21(탑상형주동 디자인 가이드 라인 평가서 및 향분석표)
축소모형	지구별 설계지침 참조	지정축척	1식	- 밸침 및 덮개 포함
CD	-	-	1식	- 도판, 도면, 개요, 설명자료(PPT) 등 수록
작품설명자료	A4 (칼라)		5부	- 설계도면 내용만 사용 가능 (10매 이내)
구비서류	서식참조	-	1식	- 서식10~서식15

## □ 심사 및 입상자 선정

- 1단계 제안서 평가기준
  - 기성건축가의 시각에서 탈피, 참신하고 획기적인 주거단지 부대복리시설 기본구상을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할 것을 명시

[표 5-17]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1단계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비고
계획방향 및 주요계획	30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의 설정 타당성 -주변환경 분석 및 동선, 배치개념의 합리성 -컨셉 디자인(Concept Design), Sketch의 창의성 및 예술성	
제안사항	30	-제안, 특화내용의 창의성, 독창성	상대 평가
	20	-제안의 지속가능성 및 기능성	
	20	-사업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제시	
합계	100		

- 2단계 설계 평가기준 : 일반현상설계와 동일한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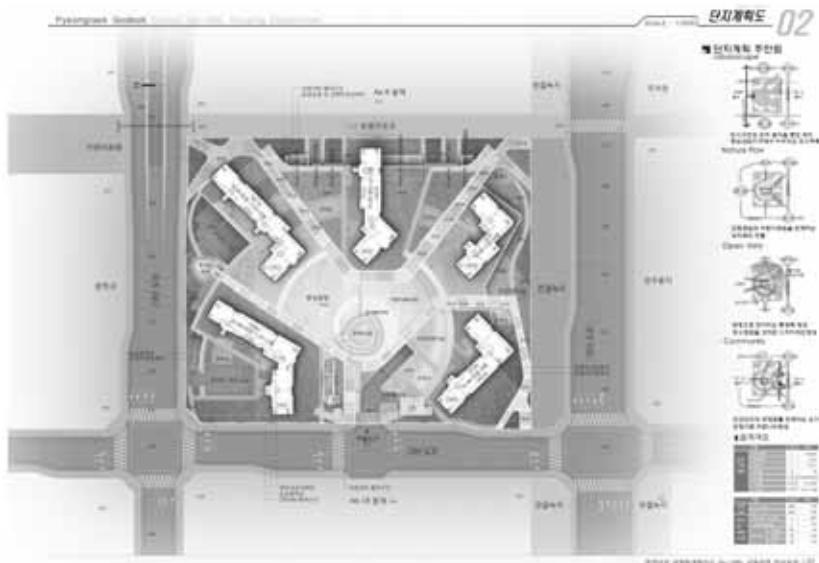
[표 5-18]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2단계 설계 평가기준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지구유형별 배점			비고
		테마	D-전략	D-향상	
단지계획 분야	- 토지이용계획 및 주동배치계획 - 동선계획 및 옥외공간계획 - 부대복리 및 주차시설 계획	40	40	40	
건축계획 분야	- 단위세대 및 주동의 공용공간 계획 - 주동의 입면계획 - 부대복리시설 계획 - 주차시설 계획	40	40	30	상대 평가
사업성 분야	- 단지, 주동 및 단위세대 계획 - 기타 시설물 계획 측면	10	10	20	
중점심사 분야	* “라. 중점심사분야”의 중점심사분야 운용방법 참조	30	20	10	
합 계		120	110	100	
카점	— 설계용역업체평가 우수업체	최대 +1점			절대 평가
감점	- 법령위반 - 지침위반 - 도서작성위반 - 설계용역업체평가 하위업체	최대 -1.5점			

- 2단계 심사 중점심사 분야
  - 2단계 심사에서는 지구특화설계 관련 사항, CPTED계획, 1단계 아이디어 제안서와의 정합성 부분을 <중점심사 분야>로 구분하여 명시
- 가점 적용 배제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현상설계에서는 설계용역업체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에서는 가점 적용을 배제

#### □ 심사 결과

- (주)정현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서영인, 38세) 작품 선정



[그림 5-8]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b-19BL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주)정현종합건축사사무소)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ap.go.kr/>)

#### ④ 한국수자원공사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sup>35)</sup>

##### □ 추진배경

- 「수도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수도사업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함에 있어,
- Sub 운영 수도사업장 리모델링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건축계획 상 상징성, 예술성이 확보된 모델 및 방향 제시
- 젊고 창의적인 신진건축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진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으로 참여

##### □ 사업개요

[표 5-19] 자인정수장 환경개선사업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 산 14-1
사업면적	41,578m <sup>2</sup>
건물규모	관리 및 여과지동 등 10개동
연 면 적	총 2,172m <sup>2</sup> (연면적 +3% 범위 내 조정 가능, 관리동에 한함)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제1종 균린생활시설(정수장)
사업범위	수도사업장 건축물 리모델링, 주변 부대시설 개선
예정사업비	1,644백만원(VAT포함, 설계비+공사비)
예상설계비	1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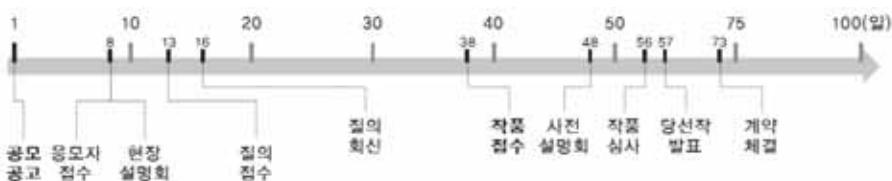
##### □ 추진방식

- 제한공개 공모 :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1단계 공모
- 입상작에 대한 보상 :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3백만원, 가작 2백만원(세금 포함)

35) 한국수자원공사(2012), “자인정수장 환경개선사업 설계공모 공고” 참조.

## □ 추진일정

- 설계공모 공고 : 2012.06.13 ~ 2012.06.19<sup>36)</sup>
- 공모안 제출 및 접수 마감 : 2012.07.20(5개 작품 접수)
- 공모안 심사 및 당선작 결과 통보 : 2012.08.07 ~ 2012.08.08(가우 스건축사사무소 김창호)
- 계약체결 : 2012.08.24



[그림 5-9] 자인정수장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 제출물 양식

[표 5-20]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공모안 제출 구비서류 및 목록

	제출목록	수량	서식	비고
1	응모신청 접수증	1부		
2	설계공모안 제출 확인서	1부	[서식 6]	
3	설계도면	20부	[서식 7]	20쪽이내
	설계설명서(A4 size)	20부	[서식 8]	30쪽이내
4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9]	설계설명서에 포함
	-각 종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설계설명서에 포함
5	심사용 설명판넬 (A1 size,칼라)	1매		
6	조감도 판넬 (A1 size,칼라)	1매		
7	설계수행능력 평가신청서	3부	[서식 10]	원본1부, 사본2부

36)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는 2012.05.03 공모 공고 후 등록 건수가 저조하여 2012.06.13 공모를 재공고함

□ 심사 및 입상자 선정

- 설계공모 평가기준

[표 5-21]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공모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
계획성 (40점)	계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별 실 배치의 적정성</li> <li>○ 조닝 및 동선계획의 합리성</li> <li>○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li> </ul>	20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건축물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작품의 독창성</li> <li>○ 외관의 적정성 및 예술성</li> </ul>	10
	설비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이용계획의 합리성</li> <li>○ 에너지절약형 건축기법 적용의 적정성</li> </ul>	10
시공성 (40점)	시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내용의 시공 구현 가능성</li> <li>○ 공정, 자재수급계획 수립의 원활성</li> </ul>	10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시설의 안전성, 활용성 및 효율성</li> <li>○ 공사안전계획 수립의 원활성</li> </ul>	10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재표준화 및 에너지저감형 설계등 경제성</li> <li>○ 추정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ul>	10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반영</li> <li>○ 주변환경과의 조화성</li> </ul>	10
유지관리성 (10점)	유지관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li> <li>○ 시설물 점검계획 및 보수대책의 적정성</li> </ul>	10
설계수행능력 (10점)	설계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자</li> <li>○ 유사용역 수행실적</li> <li>○ 신용도</li> </ul>	10
소계			100
감점항목		○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	-7
가점항목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에 대한 설계공모 수상 실적	2

## □ 심사 결과

- 가우스건축사사무소(대표 김창소, 44세) 작품 선정



[그림 5-10] 자인정수장 환경개선사업 설계공모 당선작(가우스건축사사무소)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ap.go.kr/>)

## ⑤ 한국도로공사 동충주 영업소 건설공사

### □ 추진배경<sup>37)</sup>

- 고속 도로 진·출입부에 설치하는 통행료 징수시설인 영업소 건물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설계를 얻고자 함
  - 신진 우수설계자 및 신진건축사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 건축사로 제한<sup>38)</sup>
  -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4월 추진했던 4개 과업(지사1, 영업소, 휴

37) 한국도로공사 시설처(2012), 「2012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한국도로공사 시설처(2012.4) 참조.

38) 「건축기본법」 제10조 및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국토부고시 제2010-425호」에 의거 신진건축가(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제소2)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동충주 영업소를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대상 사업으로 선정

#### □ 사업개요

[표 5-22] 한국도로공사 동충주 영업소 설계공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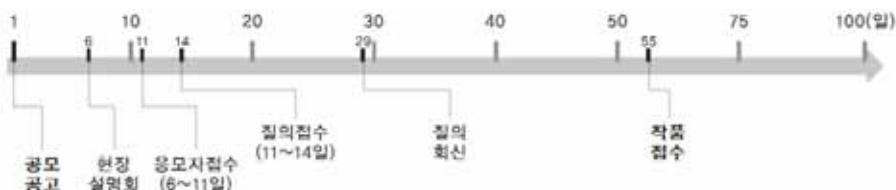
구분	내용
과업명	평택제천선 동충주영업소 신축 설계
위치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산85-1번지 일원
부지면적	3,200m <sup>2</sup>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도로구역, 준보전산지
건물규모	영업소 536m <sup>2</sup> 내외, 툴게이트 6차로
설계비	112백만원

#### □ 추진방식

-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1단계 공모
- 일반공개공모로 진행하는 타 사업(3개)과 동일한 절차 적용

#### □ 추진일정

- 설계공모 공고 : 2012.4.13
- 참가등록 : 2012.4.18(수) ~ 2012.4.23(월)
- 작품접수 : 2012.6.21(목)
- 당선작 선정 : 2012.6.22(금) – 탑플랜건축 박성철



[그림 5-11] 동충주 영업소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제출물 양식 : 심사용 설계도판 + 심사용 설계설명서

- 제출물은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로 구성

[표 5-23] 동충주 영업소 설계공모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기준

구 분	일련번호	수 량	비 고
계	-	3매	
조감도	E-1	1매	영업소·툴게이트 표현 (영업소와 툴게이트 각각 표현등 자유롭게 표현 가능)
배지도·평면도	E-2	1매	영업소·툴게이트 표현
입면도·단면도	E-3	1매	3방향 이상 입면 표현(영업소·툴게이트)

[표 5-24] 동충주 영업소 설계공모 심사용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구분	주요 내용
규격	A3 단면 좌철(검정색 마감)
분량	20매 이내, 채색 가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개요(규모, 각 실 면적 포함)</li> <li>- 건축계획 개요</li> <li>- 장애인 시설계획</li> <li>- 설비계획 개요</li> <li>- 에너지 절감계획 개요</li> <li>- 주요외장 및 실내마감 재료</li> <li>- 외부공간계획(조경계획 포함)</li> <li>- 교통처리계획 (보행자 및 자동차)</li> <li>- 추정공사비 내역서</li> </ul>

□ 심사 및 입상작 선정

[표 5-25] 동충주 영업소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계획성	배치 계획의 적정성 - 입지, 부지조건, Layout o 옥외 공간 계획 - 건축물, 주변조건 등과의 연계 및 조화 o 시설물 상호연계성 및 동선 합리성		2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건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 및 차량(주차) 동선 등</li> <li>o 평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직원 및 방문고객) 중심, 실별 Layout 및 동선</li> <li>- 향, 조망 및 주차, 장애인, 화장실 이용행태 등 연계</li> </ul> </li> <li>o 입면 및 단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독창성</li> <li>- 자연친화적 쾌적한 공간 구성</li> <li>-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마감재, 단면구성</li> </ul> </li> </ul>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및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입면요소 지양, 시공성 고려</li> <li>-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공간구성, LCC를 고려한 최적 마감재 선정</li> </ul> </li> </ul>	10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에너지 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설계</li> <li>- 적정 창호면적, 일사차폐, 에너지효율 각종기기 등</li> <li>- 건물단열성능 강화 및 에너지 부하 절감</li> <li>- 시설규모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적용</li> </ul> </li> </ul>	10

## □ 심사 결과

- 탑플랜건축(대표 박성철) 작품 선정



[그림 5-12] 동충주 영업소 및 톨게이트 당선작 조감도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ap.go.kr/>)

## ⑥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LH공사)<sup>39)</sup>

### □ 추진배경

-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조성되는 보금자리 주거단지 총 면적 940,677.60m<sup>2</sup>(6,821세대)중 3개 블록 128,680m<sup>2</sup>(2,895세대) 대상
  -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녹지와 공원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 단지 및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 임대주택을 고품질·저가격의 명품으로 건설하여 국민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디자인 명품 주거단지’라는 새로운 주거 개념을 도입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 사업개요

[표 5-26]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사업개요

과업명	서울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위치	서울시 강남구 지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부지면적	128,680m <sup>2</sup> (전체 940,677.6m <sup>2</sup> , 주택용지 429,961m <sup>2</sup> )
수용세대	2,895세대(전체 6,821세대)
설계비	5,925백만원 (A3 : 1,599백만원, A4 : 1,224백만원, A5 : 3,102백만원)

### □ 추진방식

- 제안서 공모 + 지명 현상(공모안 공개발표 및 심사 등)
  - 지명현상설계 : 지명 건축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실시
  - 다수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우수 제안서를 채택,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들어보는 ‘공개지명 선정 방식’ : 공공 발주 사업 중 지명 건축가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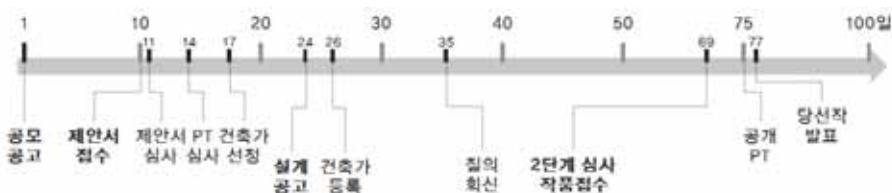
39) LH공사(2011), 서울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국제공모 최종보고서 참조

- 입상작에 대한 설계비 보상

- A8, A5 블록 : 당선자에게는 해당 블록의 설계권을 부여하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로 3,000만원 지급(단, 해외 초청 건축가는 제반 경비 등을 감안하여 경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 A4 블록 : 당선자 1인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2등과 3등 입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상금으로 수여

□ 추진일정

- 2010. 03. 12 : 제안서 공모 공고(국내 지명건축가 선정을 위한 공모)
- 2010. 03. 22 ~ 2010. 03. 26 : 제안서 접수 및 프레젠테이션
- 2010. 03. 29 : 최종 초정 건축가 선정
- 2010. 04. 05 : 본 국제설계공모 공고
- 2010. 05. 20 : 응모작 접수
- 2010. 05. 26 ~ 2010. 05. 28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
- 2010. 05. 28 : 당선작 발표



[그림 5-13] 강남 보금자리주택 A4블록 공모 절차 및 일정(공고일 기준 소요 일수)

□ 제출물 양식

- 1단계 제안서 제출
  - A3 5매 이내(표지 제외), 단면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 색상 제한 없음
  - 표지구성 자유(단, 표지에 실명 사용)
  - 단면인쇄(120g/m<sup>2</sup>이하의 용지 사용), 좌측편철(제본방식) 자유

[표 5-27]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사업 1단계 제출물 종류

제출물	-응모신청서, 제안서 15부, CD 2매(JPG. 또는 PDF 형식의 제안서 파일) -건축사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A3, A5 블록 응모자 : 수상 증빙서류(응모자격에 해당하는 수상)
-----	--

- 2단계 설계공모 제출

[표 5-28]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사업 2단계 심사 제출물 종류

구 분	규 格	축 척	수 량	비 고
설계도판	A0	1/1000	A3/A5 : 2매 A4 : 1매	재질은 10mm 폼 보드 사용, 별도의 액자나 장식물 부가 금지
설계설명서	A4	-	15부	설계설명서 표지양식 제공
설계도면집	A3	-	15부	칼라 사용 불가, 흑백으로만 작성
모형	지구별 지침 참조	1/1000	1식	A3/A5 : 가로 560×세로 440×높이 450(cm) A4 : 가로 280×세로 240×높이 450(cm)
CD	-	-	3식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집, 기타 서류 등 수록

#### □ 심사 기준

[표 5-29] 설계 공모의 목표 및 방향

구분	내용	
지속	사회적 연속성	-주거의 사회성에 대한 제고
	공간적 연속성	-도시맥락을 거스르지 않는 주거단지
	환경적 연속성	-환경친화 녹색주거단지
가치	다양성	-사용자를 배려한 다양한 주거계획
	자족성	-생활 밀착, 자족형 주거단지
	경제성	-저비용 주거
아우라	차별화된 아름다움	-창의성이 극대화된 차별화된 주거 디자인

[표 5-30] 설계 공모의 평가 기준

구분	내용
작품의 평가 기준	-공공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 제시
	-작품의 실험성, 명품으로서의 가치
	-외부(조경)공간, 지형에의 순응
	-실현 가능성

## □ 설계공모 참여 건축사 의견

- 2단계 심사(제안서 공모)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제안서 공모에서는 공모 기간(공고시점에서 접수까지의 기간)을 최소화(10일)하고 제출물을 간소화하는 등(A3 5매 이내) 아이디어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공모 참여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설계공모 후 계획안 변경 문제
  -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 공모의 가장 큰 의미가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에 있는 만큼 선정안 결정 이후 초기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지명 건축가에 대한 참가비 보상 필요
  - 당선작과 2,3등 입상작에 대한 상금<sup>40)</sup> 외에 지명 공모 참여 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

40) 강남 보금자리 주택 A4블록 설계공모에서는 당선작 외에 2,3위 입상작에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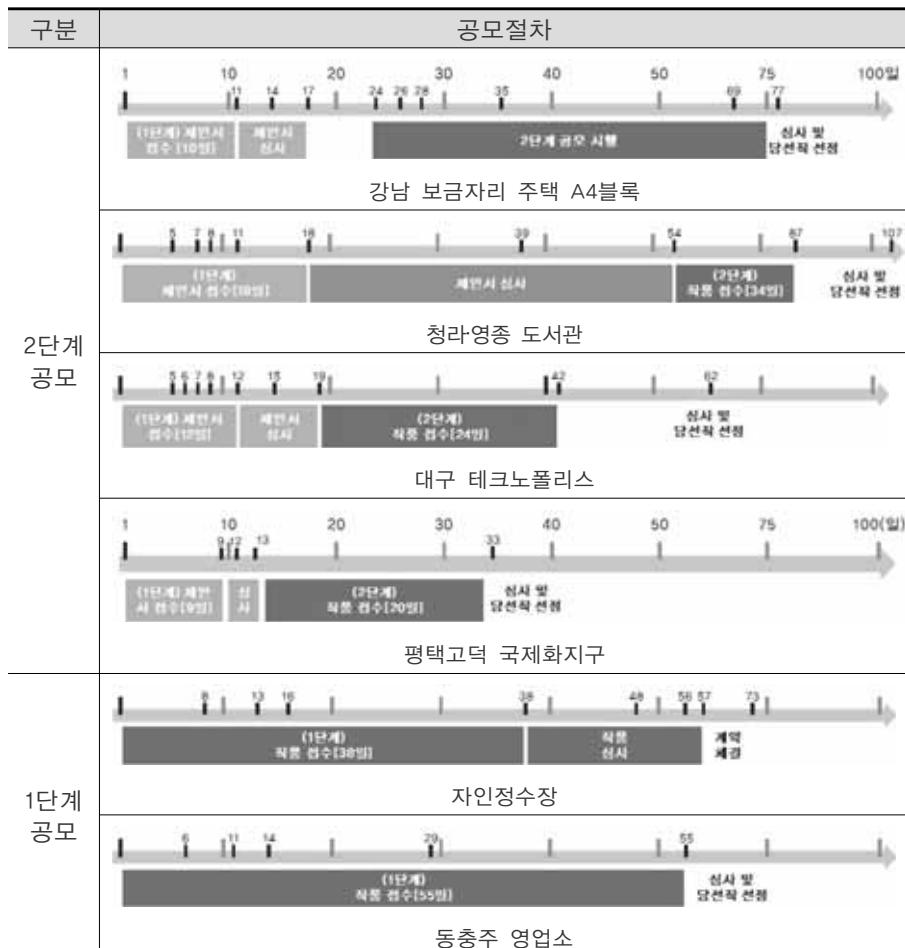
###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종합 분석

#### ① 공모절차 및 심사방식 등 적절성

##### □ 공모절차

- LH공사가 추진한 청라·영종도서관, 대구 테크노폴리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강남보금자리 주택 설계공모는 제안서 심사와 본심사의 2단계로 진행된 반면, 자인정수장과 동충주영업소는 1단계 공모로 진행

[표 5-31] 1단계 과정과 2단계 과정 공모절차 비교



- 공모절차와 소요기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단계 과정 공모 사업의 경우 제안서 제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후이며, 1단계 통과 후 본 작품 제출 기간은 강남 보금 자리 주택 53일, 청라·영종도서관 34일, 대구 테크노폴리스 24일, 평택국제화지구 20일로 다양하게 나타남
  - 1단계 과정 공모인 자인정수장과 동충주 영업소의 작품 제출 기간은 각각 38일과 55일로 2단계 공모에서의 제안서 접수 기간보다 길었으나, 공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55~57일로서 2단계 공모에 비해 대체적으로 공모 소요일수가 짧았음
  - 그러나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의 경우 2단계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공고에서 당선작 선정까지 33일이 소요되었음
  - 따라서 공모절차와 소요기간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추진 주체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참가업체 수는 1단계 공모보다 2단계 공모에서 높게 나타남
  - 청라와 영종의 공공도서관의 제안서 공모에는 각각 15, 19개 업체가 참가한 반면,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사업과 동충주 영업소 설계 공모에는 각각 5개, 7개 업체가 작품 접수

#### □ 심사방식

- 2단계 공모는 1단계인 제안서 심사와 2단계인 작품 심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 과정 공모는 작품에 대한 본 심사로만 진행됨

[표 5-32] 사업별 심사방식 비교

구분	1단계 과정		2단계 과정	
	제안서 심사	발표 심사	제출물 심사	발표 심사
2단계 과정 공모	○	○	○	○
1단계 과정 공모	—		○	×

- 2단계 공모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모두 서면 심사와 함께 응모자의 발표 심사를 함께 실시하여 설계자가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1단계 과정 공모의 경우 발표 심사 없이 제출물에 대한 심사만 진행
  - LH공사에서 추진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에서는 발표 심사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진건축사 및 제출 작품에 대한 대외 홍보 효과 기대

[표 5-33] 응모자 발표 기회 유무

구분	제안서 심사(1차)	작품 심사(2차)		
		서류심사	PT 심사	
2단계 과정 공모	강남 보금자리 주택	○	○	○
	청라·영종 도서관	○	○	○
	대구 테크노폴리스	○	○	○
1단계 과정 공모	자인정수장	-		○
	동충주영업소	-		○

#### □ 참여작에 대한 설계비 보상

- 설계권을 부여하는 공모 당선작 이외의 참여작에 대해 순위에 따라 설계비 보상액을 차등 지급함
  - 설계비 보상은 주로 입상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청라와 영종 도서관 및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당선작을 제외한 4점 이하의 참여작에 대해 참가 비용을 지급함

[표 5-34] 설계비 보상 규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선작	입상작		참여작		설계비 보상 총액
		구분	금액	선정 수	금액	
강남 보금자리 주택	설계권	2등	20	-		30
		3등	10	-		
청라·영종 도서관	설계권	-		4점 이하	5	20
대구 테크노폴리스	설계권	-		4점 이하	20	80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설계권	-		4점 이하	15	60
자인 정수장	설계권	우수작	3	-		9
		가작 (3점 이하)	2	-		
동충주 영업소	설계권	가작	5	-		5

#### □ 심사기준

-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청라·영종도서관, 동충주영업소 사업의 경우 작품에 대한 평가 점수만을 반영한 반면, 대구 테크노폴리스, 자인정수장 사업은 과거의 경력 및 수상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함

[표 5-35] 사업별 공모절차 및 심사기준 비교

구분	2단계 공모			1단계 공모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청라·영종 도서관	대구 테크노 폴리스	자인 정수장	동충주 영업소
경력 및 수상 실적 인정	×	×	○	○	×

-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은 VE 경진대회 입상자, 공간계획 용역 입상자 및 최근 3년간 유사용역에 대한 설계공모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
- 감점의 경우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설계용역평가의 하위업체에 대해 총점의 1.5점, 자인정수장은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 시 7점을 감점을 부여함

[표 5-36] 가점 및 감점 기준 비교

구분	대구 테크노 폴리스	자인정수장
가점	-VE 경진대회 입상자 -공간계획 용역 입상자 -설계용역업체평가 우수업체	-최근 3년간 유사용역에 대한 설계공모 수상실적
감점	-법령위반 -지침위반 -도서작성위반 -설계용역업체평가 하위업체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

## ② 공모 제출물의 적정성

### □ 제출물 종류

- 2단계 과정 공모의 제출물은 1단계 제안서와 2단계 본 작품에 대한 설계도판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출물의 종류와 수준을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제안서는 계획의 목표 및 기본개념, 주요 계획 내용과 개념도 성격의 스케치 등을 A3 크기에 5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
  - 2단계 설계도판은 보통 A1 크기에 1~3매, 설계설명서는 보통 A4 크기에 최대 30쪽 이내, 설계도면집은 A3 크기에 20쪽 이내로 제한
  - 청라·영종도서관과 동충주영업소 사업의 경우 설계도면집을 각각 설계설명서와 설계도판으로 대체하여 제출물의 양을 축소

[표 5-37] 사업별 공모 제출물 종류

구분		2단계 공모			1단계 공모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청라·영종 도서관	대구 테크노 폴리스	자인 정수장	동충주 영업소
1단계	제안서	○	○	○	—	
2단계	설계도판	○	○	○	○	○
	설계설명서	○	○	○	○	○
	설계도면집	○	×	○	○	×
	모형	○	×	○	×	×

○ : 필요, × : 필요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제출물 내용 및 표현 방식

- 2단계 중 제안서 공모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안보다는 아이디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공공집합주택에 대한 견해와 입면 다양화에 대한 방안 등 특정 주제를 제시하여 아이디어 수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강남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집합주택에 대한 견해 및 보금자리 주택의 포괄적인 방향 제시와 형식의 자율성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특징적으로 입면다양화에 대한 방안 제시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기본 개념에 대한 스케치 중심의 표현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CG)을 사용한 구체적인 단지배치, 조감도 불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5-38] 1단계 제안서 내용 및 표현 방식 비교

구분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청라·영종도서관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공공집합주택에 대한 견해</li> <li>-보금자리 주택의 계획 방향</li> <li>-컨셉 디자인 스케치</li> <li>-제안사항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방향</li> <li>-기본개념</li> <li>-주변환경분석</li> <li>-동선 및 배치개념</li> <li>-컨셉 디자인 스케치</li> <li>-제안 및 특화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 및 계획조건 분석</li> <li>-목표설정 및 주요계획</li> <li>-<b>입면다양화</b> 방안 제시</li> <li>-디자인 포인트 및 스케치</li> <li>-기존 세부내용 부연 등</li> </ul>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채 사용 가능</li> <li>-표지구성 자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 사용이 불가</li> <li>-제공 표지 서식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터 그래픽(CG)을 사용한 구체적인 단지 배치, 조감도는 불가</li> <li>-제공 표지 서식 사용</li> </ul>

- 본 심사의 경우, 조감도 및 CG 불가 등 제출물 간소화 노력이 일부 있었으나, 별도의 언급이 없거나 조감도를 요구한 경우도 있음
  - 청라·영종도서관과 동충주영업소 사업은 조감도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조감도, 투시도 등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요구하는 일체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음

- 특히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설계설명서는 그림 등의 도면이 필요할 경우 설계도면집에 있는 내용 및 모형사진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2단계 작품 심사의 제출물의 경우 강남 보금자리 주택, 자인정수장 사업은 도판, 설명서, 도면집 등에 들어가는 도면 중 조감도 허용 여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음

[표 5-39] 제출물별 조감도 허용 여부

구분		2단계 공모			1단계 공모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청라·영종 도서관	대구 테크노 폴리스	자인 정수장	동충주 영업소
1단계	제안서	△	△	×	—	
2단계	설계도판	△	○	×	△	○
	설계설명서	△	○	×	△	○
	설계도면집	△	—	×	△	—

○ : 허용, × : 허용 불가, △ : 별도언급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색채 사용과 관련하여 강남 보금자리 주택은 모형을 제외한 모든 도면에 대해 색채사용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부 공모에서는 색채 사용을 금지
  - 청라·영종도서관 공모에서는 모든 도면에 대해 색채 사용 불허
  - 자인정수장 사업의 경우 설계설명서의 색채 사용을 전체 30쪽 중 4쪽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감점

[표 5-40] 제출물별 색채 사용 허용 여부

구분		2단계 공모			1단계 공모	
		강남 보금자리 주택	청라·영종 도서관	대구 테크노 폴리스	자인 정수장	동충주 영업소
1단계	제안서	○	×	△	—	
2단계	설계도판	○	×	○	△	○
	설계설명서	○	×	×	△	○
	설계도면집	○	—	×	●	—
	모형	×	—	×	—	—

○ : 허용, ● : 부분 허용, × : 허용 불가, △ : 별도언급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강남 보금자리 주택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에서는 모형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인력 및 시간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색채 및 장식 사용을 금하고 있음

[표 5-41] 2단계 제출물 중 모형 양식 비교

구분	강남 보금자리 주택	대구 테크노폴리스
축적	1/1,000	1/800
규격	280×240×450 (가로×세로×높이)	380×350×300 (가로×세로×높이)
양식	-백색 재료 사용(단, 바닥판은 칼라 사용 가능)	-우드락(백색)에 도판의 단지계획도를 가감없이 부착(해당 블록만 색상 사용 가능) -단지레벨 1m마다 우드락 1mm를 중첩하여 표현 -주동의 지붕은 경사와 평지붕으로만 표현(옥탑은 직사각형)하고 주동외부에 층수구분, 창문표현을 위한 줄눈표현(선긋기, 칼집내기)등 일체의 표현 금지 -건축물 Mass 위 젯소바름, 닐스칠 등 부가적 기법사용 금지

#### 4) 시범사업 운영 성과

##### □ 공공건축사업에 신진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

- 일반적인 설계공모가 대형 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데에 비해 참가자의 나이를 4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진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
  - 특히 설계공모가 제안서 공모와 설계 심사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안서 공모 단계에서는 제출물이 간단하고 아이디어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단계 심사 방식에 비해 신진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 □ 공모진행 및 당선작 발표 과정에서 신진건축사 지명도 향상 및 홍보 효과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은 추진 과정과 당선작 선정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신진건축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신진건축사’ 부분을 신설하여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청라영종 공공도서관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기 시행한 강남 보금자리 주택 A4블록 설계공모의 경우 2단계 본 심사를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함. 이를 통해 신진건축사의 지명도 향상 및 대외 홍보 효과 기대

##### □ 신진건축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 표준적인 설계에 따른 기존 설계안들과 차별되는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 1단계 제안서 심사 + 2단계 본 심사로 공모를 추진한 청라와 영종도서관, 테크노폴리스 등 LH공사 사업들에서는 신진건축사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발주처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고 평가

※ 기성건축가들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 “이번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는 신진 육성의 취지와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기성건축가들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LH공사 관계자 인터뷰).”

2012.09.26 한국건설신문 기사 “LH,신진건축사 시범사업 당선작 발표” 참조

- 1단계 공모로 추진된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모에는 5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참가율이 다소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참가작과 당선작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건축물 확산 계기 마련
  - LH공사에서 추진한 두 건의 도서관과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 등은 공공건축물로서 일반인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확산 계기

-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LH공사 관계자 인터뷰).”

2012.09.21 서울파이낸스 기사 “LH,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참조

## 5)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운영의 한계 및 문제점<sup>41)</sup>

- 시장 참여의 형평성 및 참여자 자격 기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제기
  - 일반 건축사사무소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 건축시장 침체로 대형이 아닌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공모 참여 기회를 신진건축사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 거래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SH공사에서는 서울시 공공건축가(신진건축가) 및 SH공사 선정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설계공모를 시행하였는데, 특정 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른 신진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대표 건축사의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 제기
    - 대표 건축사의 나이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 외에 사무소 개설 시점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는 자격 제한 기준 나이(45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국내 신진건축사들의 사무소 개설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일반 설계업체가 자격 제한 요건을 갖춘 신진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공모에 참가하는 등 편법 사례 발생 우려
- 설계질 저하, 업체의 영세한 인력구조 등 발주자 입장에서의 위험 부담
  - 발주처들은 신진건축사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경우 당선작의 질적 수준이 낮고 당선 업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만한 안정적인 인력 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발주처가 떠안게 되는 위험부담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41) 본 절에서 제시하는 문제점 및 한계는 공모절차와 제출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뿐 아니라, 발주처 및 참가자와의 면담 조사를 토대로 도출하였음. 경우에 따라 발주처와 참가자는 익명으로 처리

됨. 2012년 시범사업 추진 주체인 00공사 등은 시범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모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

- 또한 2012년 상반기에 1단계 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00공사에서는 일반 공모에 비해 참여작의 수준이 낮아서 당선작 선정에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
-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건축설계는 사용자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임을 고려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안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
- 특히 일상적인 삶의 장소가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디자인이 거주환경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설계 경험이 부족한 신진건축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의 위험부담 가중

#### □ 아이디어 중심 평가를 위한 2단계 절차진행 및 제출물 간소화 노력 부족

-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추진 방안에서는 제안서 심사와 본 심사의 2단계 심사로 공모를 권장하고 제출물의 수준을 간소화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공모에서는 위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음
  -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사업과 동충주영업소는 1단계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발주처는 일반 공개공모로 추진하는 타 공모와 제출물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아이디어 중심의 심사 및 제출물 간소화 노력이 부족하였음

#### □ 공모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대한 원칙 부재

- 발주처에 따라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큰 차이를 보임
  - 시범사업 대상 프로젝트는 공동주택, 공공도서관, 고속도로 영업소, 정수장 등으로 그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남

- 서로 다른 발주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통적인 이슈를 발굴하는 데에 한계를 보임
- 일부 발주처에서는 위험부담 경감을 위해 파급력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 선정
  - 시범사업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처에서는 운영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도가 적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추진
  - 이 경우 프로젝트 추진의 대외 파급 효과가 미미하여 신진건축사 홍보 등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에 한계 우려

- 당선작 선정 후 설계 변경으로 설계안의 창의성과 고유성 훼손 우려
  - 당선작이 선정된 후 발주처가 지속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초기 안의 본래 의도가 변경되는 경우 발생
  - 설계 변경 문제는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설계자와 발주자 모두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 호소

###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개선방안 및 장기적 추진방안

####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개선방안

□ 시범사업 추진 효과 증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필요

- 사업 추진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심층적 고려
  - 시범사업이 설계공모에 당선된 몇몇 건축사의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고 신진건축사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신진건축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심층적 고려 필요
-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이슈 발굴
  - 이를 위해서는 몇몇 사업의 설계공모 참가자 나이를 제한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건축사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

□ 창의적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도시, 주택 등 사회문제와 연관된 주제 발굴 필요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도시건축 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신진건축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계기로 시범사업 추진 가능
- 건축물의 경우, 중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모 운영
  - 참여를 독려하고 발주처 입장에서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 공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공개되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중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 운영 필요
  -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부동산 가격 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 신진건축사 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신진건축사들의 사무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 자격제한 범위 설정

-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젊은 건축사들이 사무소를 개설하는 평균적 나이, 신진건축사들이 운영하는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인력 구성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상 범위 재설정 필요
-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으며, 당선안의 실현가능성과 사업 진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경우 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음. 대표 건축사들의 나 이뿐만 아니라 사무소 개설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젊은 건축가상’에서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과 같이 참가 자격을 만 4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인이 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대상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

#### □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시 발주자 위험 부담 경감 노력 필요

- 발주처 입장에서는 유사 실적 및 경력이 부족하고 사무소 규모가 영세한 신진건축사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설계의 질이 낮아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실력을 갖춘 신진건축사 Pool을 운영하여 공모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안전장치 확보 필요
-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규모와 인력 운영 관련 사항을 참가 자격 요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 □ 신진건축사의 참가 확대를 위한 공모 절차 및 제출물 간소화 필요

- 신진건축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신진건축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도출되고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도 적은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심사방식이 개선되고 제출물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
- 2단계 공모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1단계 공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질의 설계안 도출에 유리

## 2) 신진건축사 발굴 및 육성 정책의 장기적 추진방안

###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중심의 설계공모 실시

- 도시건축의 주요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진건축사 발굴·홍보
  - 신진건축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에 강점을 갖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경험이 미숙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소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는 건축사와 발주처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 일방적으로 공공공사 등에 자격제한을 두어 설계공모를 추진할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도시와 건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함과 동시에 신진건축사 발굴 기회 제공
  - 이 때, 주요 이슈는 국가 및 지자체의 현안과 연계하여 설계공모 결과로 도출된 아이디어가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함. 가능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 신진건축사를 참여시킬 수 있음
- 공모 대상 프로젝트를 지역 현안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성 제고
  - 유럽에서 신진건축사 등용문으로 알려진 유로판은 매 회 중요한 이슈를 상정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당선자와 지자체·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당선안 실현을 지원하며, 1~10회까지 당선 프로젝트(1등작+차점작) 1109건 중 34.3%에 이르는 380건이 추진되어 완료 또는 실행 단계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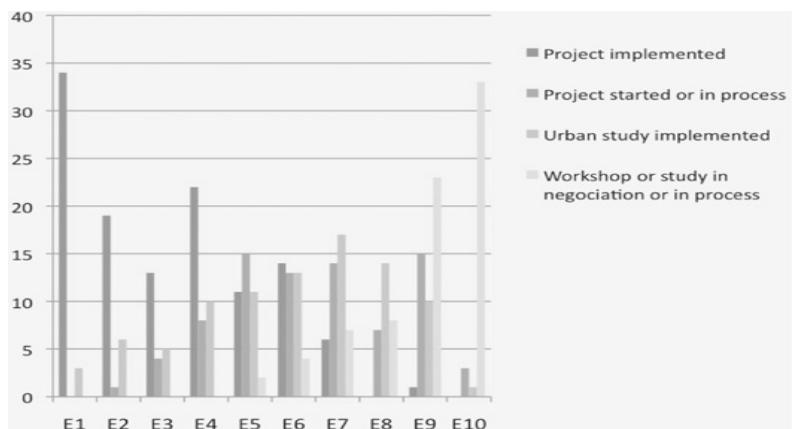
※ European<sup>42)</sup>

- 유럽의 40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역량있는 신진건축사를 배출하는 정기행사로, 1989년부터 2년마다 개최
- 1971년부터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프랑스의 PAN(Programme Architectre Nouvelle : '새로운 건축 프로그램') 설계경기 프로그램을 1988년부터 유럽 전체로 확대하여 개최. 전체 행사 운영을 위해 국제연합총회(General Assembly) 설립
- 당선안에 대해 국제전시, 포럼, 출판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당선자와 대상지역 대표(지자체·개발자)간 워크숍 등을 통해 당선안의 실현을 지원

[표 5-42] Europan 주제(1회~12회)

구분	년도	주제
Europan 1	1989~1990	Changing lifestyles and the architecture of housing
Europan 2	1990~1991	Living in the city, Re-interpretation of urban sites
Europan 3	1992~1994	At home in the city, Urbanising residential areas
Europan 4	1994~1996	Constructing the town upon the town,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urban sites
Europan 5	1997~2000	New housing landscape, Travel and proximity
Europan 6	2000~2002	In between cities, architectural dynamics and new urbanity
Europan 7	2003~2004	Sub-urban challenge, urban intensity and housing diversity
Europan 8	2005~2006	European Urbanity and Strategic Projects
Europan 9	2006~2008	European urbanity , Sustainable city and New public spaces
Europan 10	2007~2010	Inventing urbanity, Regeneration – Revitalization – Colonization
Europan 11	2011~2012	Reconnections : Connecting the separate and linking the divided
Europan 12	2013~	Adaptable city, inserting urban rhythms

\* 출처 : 유로판 공식 홈페이지(<http://www.europan-europe.com/>)



[그림 5-14] Europan(1회~10회) 당선 프로젝트 중 시행 건수

\* 출처 : 유로판 공식 홈페이지(<http://www.europan-europe.com/>)

42) 국토해양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2), “젊고 유능한 건축사를 정부가 육성한다”, 2012년 4월 4일 보도자료 참조.

[표 5-43] Europen(1회~10회) 당선 프로젝트 중 시행건수 합계 및 비율

	당선작수 1등+차점작	프로젝트 시행완료	진행중인 프로젝트	검토연구 시행완료	워크샵·연구 협상·진행중	진행 프로젝트 합계	진행프로젝트 /당선작수(%)
E1	<b>83</b>	34	—	3	—	<b>37</b>	44.6
E2	<b>88</b>	19	1	6	—	<b>26</b>	29.5
E3	<b>85</b>	13	4	5	—	<b>33</b>	38.8
E4	<b>110</b>	22	8	10	—	<b>42</b>	38.2
E5	<b>113</b>	11	15	11	2	<b>39</b>	34.5
E6	<b>115</b>	14	13	13	4	<b>44</b>	38.3
E7	<b>120</b>	6	14	17	7	<b>44</b>	36.7
E8	<b>140</b>	—	7	14	8	<b>29</b>	20.7
E9	<b>132</b>	1	15	10	23	<b>49</b>	37.1
E10	<b>123</b>	—	3	1	33	<b>37</b>	30.1
<b>합계</b>	<b>1,109</b>					<b>380</b>	<b>34.3</b>

\* 출처 : 유로판 공식 홈페이지(<http://www.europen-europe.com/>)

- 뉴욕시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신진건축가 대상 국제 공모에서도 지역의 개발 이슈와 연계하여 대상지와 주제를 선정하며, 당선된 건축가는 지자체와 협의 기회를 갖는 등 지역 현안 추진에 기여

※ ENYA(Emerging New York Architects)

-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명칭은 Young Architects Forum, AIA를 홍보함과 동시에 신진건축가 발굴을 목표로 함
- New Practice 대상 사무소들보다 더 소규모 회사들(1~2인)의 promotion project로 2년에 한 번씩 국제 공모를 개최하며, 경력 10년 미만의 인턴 건축사 또는 젊은 건축가
- 지역의 개발 이슈와 연계하여 대상지 및 주제 선정
- 1등은 \$5,000, 2등 \$2,500, 3등 \$1,000, 학생부문 \$1,000의 상금 지급
- 2012년 ENYA에는 16개국에서 98개 이상의 참가작 제출, 4개 작품 선정
- 미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당선작을 전시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진건축가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

-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실적 인정제도 도입
  - 공모에 당선된 신진건축사의 향후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설계공모에서 신진건축사의 진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신진건축사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당선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평가시 가점 부여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진입장벽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신진건축사 사기 진작과 대외 홍보 기회 확대
  -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제도 확대 및 국내외 전시 활성화
    - 미국 뉴욕 AIA의 New Practice와 ENYA, 유럽의 Europan,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 앤 베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공모 및 수상 제도를 마련하여 신진건축가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음

※ New Practice(미국 건축가협회)<sup>43)</sup>

- 소형 건축회사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6~7개 회사를 선정하여 그들의 프로젝트 등을 전시
- 응모 자격제한은 회사 설립일 기준(2012년의 경우 2006.01.01이후 설립)
- 2012년의 경우 51개 참가회사 중 7개 선정
- 입상자 특전은 NPY 2012 전시회 출품, AIA 국제컨벤션 참여, 국제 발표회 참여, AIA 뉴욕지회 1년간 무료 회원, 건축가신문 1년 간 무료 구독 등
- 2006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뉴욕 AIA 1층에 위치한 전시실을 무료로 제공
- AIA 다른 지역에 전시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베를린, 런던, 상파울로 등에서 전시를 개최

43) 심경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해외출장보고서 미국 워싱턴·뉴욕, p.19.

※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젊은 건축가의 새 앨범, 프랑스)<sup>44)</sup>

- 프랑스 문화통신부가 젊은 건축가 육성을 위해 1981년부터 추진한 정책
- 35세미만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설계작품 응모를 받고 이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정책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젊은 건축가의 새 앨범’을 유럽차원으로 확산하는 한편 문화부 산하에 ‘젊은 건축가 후원회<sup>45)</sup>’(Cercle de parrainage)를 구성하여 앨범에 선정된 건축가를 중심으로 젊은 건축가의 활동을 지원
- 문화통신부는 전시회 및 홍보책자 발간,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해 선정된 건축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후원회를 통해 설계경기 초청, 설계발주, 아이디어 제공 의뢰, 협동작업 의뢰 등을 통해 선정된 건축가에게 프로젝트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

-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한국건축가협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상’ 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음
-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방안”에 따르면 건축문화 대상에 신진건축사 부문을 신설하는 등 신진건축사 대상 시상 제도의 범위 확대 추진
- 시상 제도 사회적 이슈화, 전시와 출판 등 수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수상 경력의 공식화 등을 통해 신진건축사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속 방안 추진 필요

#### □ 일반 설계공모에서의 신진건축사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자격 제한을 두어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설계공모에서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저해하는 한계 요인을 최소화하여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필요

44) 박인석(2008), “외국 건축문화정책 사례조사”,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TF 내부자료

45) 젊은 건축가 후원회는 문화통신부 소속 국(CMN, DLL, DMDTS, DRAC, EMOC, SDAP, SNT, MIQCP 등), 건축협회 및 출판사(AMO, AFAA, CIM Bé ton, CNOA, FNCAUE, FNPC, IFA, Moniteur, Renov 등), 건설사(ADP, AFTRP, AP-HP, RATP, SNCF/AREP, SEMAPA, SIEMP, ASF, NEXITY 등)와 지방시청 및 위원회의 지역단체로 구성되어있다.

## 제6장 결 론

1. 연구의 결론
2. 향후 과제

### 1. 연구의 결론

- 최근 건축설계산업에 대해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국가차원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정책적·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가격과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가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음
-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 영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국민 건축서비스로 건축설계업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발주제도는 가격입찰을 전제로 하거나 토목 등 엔지니어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건축설계의 실상과는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체계에서 건축설계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가격의 저렴함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고, 건축설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주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의 낙후된 구조를 개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고도화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 및 실적 위주의 건축설계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 설계공모의 경우, 소관기관에서 마련한 각종 운영지침이 현재 건축설계공모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지침마저도 실제 설계공모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완성된 설계안을 제출받는 설계공모방식은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설계공모방식을 일반적인 설계자 선정방식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단계 공모방식 활성화
  - 공모참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공모는 2단계 공모방식을 적용
-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도입
  - 시공편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일괄입찰방식을 개선하면서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도입
- 제안공모방식 도입
  - 절차복잡 및 참여비용 과다로 일반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는 설계공모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설계자 선정 이후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운영방식, 평가방식 등을 규정

-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개정방안

- 제안공모방식, 2단계 공모방식 도입을 위해 총칙과 공모방식별 세칙으로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을 재편
- 설계공모 시 자격제한 금지
- 90일 이상의 설계공모 기간 원칙 강화 및 기간단축 제한 적용
-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및 단서조항 폐지
- 제출물 간소화 규정 강화 및 작성비용 제공 조항 명시
-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조건의 단순화
-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규정 강화
- 현행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홍보 및 처벌조항 강화

-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 적격심사는 수행능력보다 가격 경쟁력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가능성 이 크며, 건축설계의 특성과 부합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링 위주의 평가 기준, 대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등 건축설계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한 실정임
- 적격심사 방식에서 수행능력 평가비중 확대
  - 고시 금액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영상태 대신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전체 적격심사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비중을 확대
-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확대
  - 건축설계의 품질이 설계자의 기술력 또는 창의력에 크게 좌우된다 는 점을 감안하여 PQ를 적용하는 설계용역은 기술제안서 평가를 의무화

- 건축설계에 적합한 평가기준 및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마련
  - 기술개발·투자실적 점수 축소 및 현상설계 공모실적 추가 등 건축 설계에 적합하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변별력 부족 및 대형업체 유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적용 우선대상에 건축설계를 추가

####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방안

- 짊고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기존 공공건축 설계용역에 신진건축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2012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공건축사업에 신진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참여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장 참여의 형평성, 경험이 부족한 신진건축사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상사업 선정, 신진건축사 대상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모방식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개선방안
  - 시범사업 추진효과 증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필요
  - 창의적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신진건축사 대상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설계공모 참가자격 제한 시 발주자 위험 부담 경감 노력 필요

- 신진건축사 참가 확대를 위한 공모절차 및 제출물 간소화 필요
- 신진건축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중심의 설계공모 실시
  - 유로판(Europen)의 사례를 참고로 도시와 건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진건축사의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실적 인정제도 도입
  -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 공모 당선 실적을 설계공모 당선과 마찬가지로 공모 실적으로 인정하고 설계자 선정을 위한 각종 평가 시 가점 부여
- 신진건축사 사기 진작과 대외 홍보 기회 확대
  - 시상제도의 사회적 이슈화, 전기와 출판 등 수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수상경력의 공식화 등 추진

## 2. 향후 과제

- 단기간에 진행하는 수시과제에서 발주제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한 결과, 충분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발주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현재의 건축 설계업체 현황과 건축사의 실적·경력 현황 등에 대한 전수적인 현황파악과 발주처, 설계자 등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공모의 개선과 제안공모방식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개선방향과 제안공모방식에 대한 운영지침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발주처가 실제 발주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는 초기에 사업추진을 확정한 사업 중 아직 발주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 수 남아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는 10여개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당선작 선정 후 기본설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건축사법인 도입에 대한 검토는 2010년도에 건축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점을 근거로 진행하였으나, 기존 법 개정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전문가의 책임 및 권한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건축사의 업역 확대라는 측면이 강조된 차이가 있음. 건축사법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7), 「설계경기 및 기술공모방식 개선방안 연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축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대가 및 관련 제도개선 기초연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사업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발주방식 시범 적용에 관한 연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8), 「설계대가 체계개선 및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재정비 연구」
- 고지성(2006),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관한 비교」,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 국토해양부(201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
- 국토해양부(2012), 「설계공모 운영지침」
- 국토해양위원회(2011),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 김성범(2007), 「우리나라 로펌 형태에 대한 외국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성일 외(2002),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성홍(2009), “2000년 이후 도시건축의 대형화와 건축사사무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0호(통권252호), pp.121~130.

- 김지엽(2010), “미국 건축서비스 관련 공공발주 및 계약 관련법과 제도”,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정책포럼 자료
- 김진우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우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보문당
- 박상근(2002),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v.555, pp.236~271.
- 박인석(2008), “외국 건축문화정책 사례조사”,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TF 내부자료
- 손창완(2009), “우리나라 변호사 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v.19(1), pp.65~105.
- 심경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해외출장보고서 미국 워싱턴·뉴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염철호(2010), “공공건축의 질적향상을 위한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 –일본의 프로포 절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22호
- 우경국(1996), “이제 현상설계는 하지 말자!”, 「건축문화」, v.182(1996-07), p.125.
- 우시용(1992), “한국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12 n.2 (1992-10), pp.133~136.
- 우시용 외(2000), “설계경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교통」 194(2000.9) pp.58~63.
- 윤현석(2004),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v.23(1), pp.111~145.
- 이훈종(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v.5(1), pp.301~318.
- 전영철(2010), “건축 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정책토론회 자료
- 조달청(2011),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 주한종 외(2008), “국외 건축설계경기 관련기관 현황분석을 통한 건축설계경기운영 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0), pp.1~4.
- 최영배(1996), 「건축설계 선정방식 및 설계경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

## 위 논문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GSA, Design Excellence : Policies and Procedures

公共建築協会 (2008)、プロポーザル方式による設計者選定の進め方

国土交通省大臣官房官庁營繕部 (2006)、質の高い建築設計の実現を目指して、一プロポーザル方式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900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cap.go.kr/>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http://www.g2b.go.kr/>

미국 GSA 홈페이지 <http://www.gsa.gov>

## SUMMARY

#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 (With emphasis on the creativity and technical capabilities of a design team in the selection process)

Youm, Chirl Ho  
Lim, Yoo Kyoung

Architectural design can be identified as a labor-intensive knowledge service industry, which provides high-level labor forc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Hence understanding the economical benefits of the architectural design industry there needs to be increased support and promotion on a national level to ensure its competitiveness. However, architectural design in Korea has been considered subordinat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o far and as a result have been falling behind as an industry altogether.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since architectural design is recognized as a knowledge service sector with high added values, the current design procurement system which emphasizes costs and past performances transforms to incorporate creativity and technical competence as major values.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design procurement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deliver projects by placing creativity and technical competence at its core.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delivery system which most emphasizes creativity and technical competence of a scheme. However, although many relevant legislations include clauses which encourage the use of design competitions there is

very little effect in actual implementation. Additionally, in many cases there are problems of inadequate time allocation, and excessive requirements which becomes an overwhelming cost burden to participants. Furthermore, issues concerning the level of expertise and objectiveness represented by the judging panel have been a constant point of criticism. Hence, this study, instead of the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 format, proposed the increased use of proposal competitions. The study investigated various proposal competition case studies both from within Korea and abroad, and presented the applicable limits, procedures, operational method, assessment criteria and scoring methods of such competition format. Additio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general standards of the operation of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s, the study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design competi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It was found, through analyzing previously assessed projects, that the single most influential criteria in assessment processes is cost rather than the overall standard of project delivery, and fundamentally the assessment criteria itself fails to properly respond to the judging of the creativity of a proje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scoring weight of the project delivery standard is increased over the cost criteria. Simultaneously the applicability of technical proposals also needs to be extended to be more inclusive of projects that require such consideration. There also needs to be development of a sophisticated architectural design project delivery assessment system, and detailed assessment standards according to each judgment category. At the same time unnecessary and impractical criteria should be modified.

As part of its investigation this study monitored design competition pilot projects participated by young architects of under 45, and concluded that the projects displayed achievements in wider

participation and promotion of young architects, and the increased occasion of unique and creative design schemes. The study also identified that in the future there needs to be a re-thinking of the application of this design competition format to properly induce creative ideas where such values are required more significantly in a project. Also, there needs to be measures to reduce risk for client organizations when running such design competition formats, and ways of ensuring even wider participation from young architects - such as simplifying competition procedures and final submission -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term there needs to be stable measures where young architects can be fostered in a more systematic way by opening various channels of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One such method can be by running idea competitions regarding major urban and architectural issues etc.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Policy to bring about a new direction in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 This study emphasized the use of proposal competition to select appropriate design teams over running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s, and that promotion of young architect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to avoid delivery systems which tend to focus on costs and past performances only. However, due to time constraints and the wide scope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in terms of the number of case studies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reviewed. Hence,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studies are conducted which analyze each procurement method in detail to propose a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 in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s.

**Keywords :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 young architects, design competition, project delivery assessment**

## 부록. 건축사법인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다양화 방안

1.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의 필요성
2. 기 제출된 건축사법 개정안 검토
3. 타 전문직 법인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4. 건축사법인 도입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1.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의 필요성

#### 1) 현행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회사형태

##### ① 건축사 업무 규정 개요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및 업무 관련 사항 규정

-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존재
  - 1949년 변호사법 제정(1949.11.7)을 시작으로 사법서사법 (1954.4.3, 이후 법무사법으로 명칭 변경), 세무사법(1961.9.9), 변리사법(1961.12.23), 공인회계사법(1966.9.1) 등이 제정
  - 자격에 관한 특별법에는 법무법인, 세무법인, 관세사법인 등 직종 별로 고유한 회사 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표 5-1]. 이들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관세사법), 고유의 회사 형태 규정 필요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신설 되는 경우가 많음

[표 부록 1-1] 전문직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시기

전문직	특별법	법 제정일	회사형태	법인	법인 조항 신설일
변호사법	1949.11.7.		합명	법무법인	1982.12.31.
			유한	법무법인(유한)	2005.7.28.
			조합	법무조합	
공인회계사법	1966.9.1.	유한	회계법인	1968.12.31.	
세무사법	1961.9.9.		세무법인	1961.9.9.	
관세사법	1996.7.1.		관세사법인	1996.7.1.	
법무사법	1954.4.3.	합명	법무사합동법인	1997.1.1.	
변리사법	1961.12.23.		변리사법인	2000.7.1.	
공인노무사법	1985.7.1.		노무법인	1990.4.7.	

-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관련 사항 규정

-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12월 16일 제정. 제2장에서 건축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제5장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

[표 부록 1-2] 건축사법 제5장(건축사사무소 등)의 조항

구분	조문명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4조	신고의 제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 2	청문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	보고·검사 등
제30조의 2	건축사의 실무교육

## ② 건축사사무소 회사형태 관련 건축사법 개정 연혁

### □ 건축사사무소 형태 다양화 및 업무 수행 범위 규정

- 합동건축사사무소 도입(1978.7.1)
  -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합동건축사사무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제23조의 2)
  - 합동사무소(합동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없으며,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축사 업무범위를 제한
  - 이 때,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
- 종합건축사사무소 규정 명문화(1980.4.1)
  - 건축·토목·전기·기계·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건축사보로 확보하여 건축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
  -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하며, 그 이외의 자는 공동주택 등의 공사감리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한다고 규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업무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
- 단독건축사사무소 업무 수행 범위 조정(1982.7.1)
  - 단독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도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
-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단순화(1985.1.1)
  -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기술집약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기술

의 국제적 진출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독건축사사무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만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제한

#### □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의 차별 폐지

- 건축사사무소 종류 단일화 → 건축사사무소로 통일(1995.7.1)
  - 사무소 형태별로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일화하여 건축사사무소로 통일하고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의 차별을 폐지

#### □ 건축사사무소 개설 요건 완화

-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무소 등록 간신제 폐지(2000.4.29)
  - 2000년 4월 19일 시행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이루어지던 사무소 등록 간신제를 폐지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요건을 대폭 완화

[표 부록 1-3] 건축사사무소 회사 형태 관련 건축사법 제·개정 연혁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1963년 12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사법 제정</li><li>-건축사는 1급과 2급 건축사로 구분하여 면허제로 함</li><li>-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를 정하여 지방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li></ul>
1978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건축보조사제 신설,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건축보조사를 두도록 함</li><li>-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 근거를 명문화함</li></ul>
1980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건축보조사는 건축사보로 개칭</li><li>-건축사는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 가능</li><li>-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주택 등의 설계업무를 행할 수 없음</li><li>-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감리업무 수행 가능</li></ul>
1982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독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도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 수행 가능</li></ul>
1985년 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단순화</li><li>-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기술집약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기</li></ul>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의 국제적 진출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향상의 기반 마련</li> <li>- 단독건축사사무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만 가능</li> <li>- 종합건축사사무소 :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 가능</li> </ul>
1995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일화하여 건축사사무소로 통일</li> <li>- 이를 통해 등록기준과 업무범위 등의 차별 폐지</li> </ul>
2000년 4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li> <li>- 5년마다 사무소 등록 간신제 폐지</li> </ul>

### ③ 현행법 하에서의 건축사사무소 현황

#### □ 개인 건축사사무소와 법인 건축사사무소

- 현재 사무소 형태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2012년 2월 현재 통계에서는 법인건축사사무소가 1971개로 전체의 약 25.8%를 차지

[표 부록 1-4] 전국 건축사사무소 수 현황

	개인				법인						합계
	1인	2인	3인 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합계	5582	93	8	5683	1642	226	55	30	18	1971	7654
서울	874	23	2	899	931	128	36	14	12	1021	1920
부산	475	12	2	489	109	20	2	2	2	135	624
대구	475	19	4	493	68	17	2	4	0	91	589
인천	276	3	0	279	68	6	1	0	0	75	354
광주	200	1	0	201	39	8	2	2	0	51	252
대전	264	5	0	269	33	5	5	0	1	44	313
울산	183	5	0	188	19	2	1	0	0	22	210
경기	787	1	0	788	238	20	2	2	1	263	1051
강원	179	2	0	181	27	2	0	1	0	30	211
충북	222	3	0	225	50	4	1	2	0	57	312
충남	254	1	0	255	23	3	1	1	0	28	286
전북	253	5	0	258	23	3	1	1	0	28	286
전남	207	1	0	208	19	2	0	0	1	22	230
경북	381	5	0	386	38	3	1	0	0	42	428
경남	418	7	0	425	29	3	0	0	0	32	457
제주	134	0	0	134	15	1	0	0	0	16	150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2012년 2월말 현재

#### ④ 실적 및 경력 관리에 있어서 건축사 업무의 특수성 고려 부족

##### □ 법적 근거

- 건축사법 제19조의 2(업무실적의 관리 등)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에 따르면 업무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을 규정

##### □ 건축사 실적관리 원칙

- 건축사법 하에서 건축사 실적 관리는 개인 건축사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크게 개인건축사사무소와 법인건축사사무소를 구분하여 관리. 협회 비회원의 경우 신고를 통해 관리함
  - 개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인 대표 건축사의 명의로 실적이 처리가 되며, 법인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의 명의로 실적 처리
  - 예외적으로 법인 내 등재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를 지정하여 실적을 처리할 수 있으나, 소속건축사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대표자와 등재건축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실적 인정 불가
  - 업무신고실적은 실적을 신고하는 자가 실적관리프로그램에 실적을 입력하고 접수한 후 실적제출서를 출력하여 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건축사가 날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함
  - 법인 대표 또는 등재 건축사의 경우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계약되어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며, 법인이 아닌 사무소의 경우 해당 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함

[표 부록 1-5] 건축사 업무실적신고 방법 및 실적인정 범위

구분	내용
업무실적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관리프로그램에 실적을 입력하고 접수</li> <li>-실적 접수 후 실적제출서를 출력하여 사무소 대표자 또는 건축사가 날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제출</li> <li>-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율(또는 용역금액) 기준으로 하고 이를 통해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공동도급한 건축사 간의 합의된 실적지분합의서 제출</li> </ul>
실적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계약되어 수행한 실적만 인정</li> <li>-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해당 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으로만 실적 인정</li> <li>-법인 건축사사무소 간 합병 시 합병 전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로 계약된 업무실적 인정</li> <li>-법인 상호 변경 시 변경 전 법인명으로 계약된 업무실적 인정</li> <li>-개인 건축사사무소가 법인으로 변경 또는 설립 시 개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계약된 업무실적 인정</li> <li>-법인의 소속 건축사가 타 법인으로 이동한 경우 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은 인정하지 않음</li> </ul>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업무실적관리 업무 처리지침

#### □ 대한건축사협회의 실적 및 경력관리 현황

- 실적 및 경력 관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협회 내 회원지원실 실적관리팀과 경력관리팀에 수행
  - 실적관리팀은 건축사법에 따른 실적관리, 벌점관리, 그리고 감리자배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경력관리는 건축사법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관리 조항에 따르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와 건축사의 업무의 성격이 달라 건축사의 경력을 기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문제점 : 신진 건축사 성장 가능성 저해

- 현행 실적 관리 제도는 신진건축사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 자격 취득과 동시에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변호사 등의 타 전문직과 달리 건축사는 자격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의 수련을 거친 후에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젊은 건축사들이 수련 기간 이후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건축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실적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표 또는 등재 건축사를 제외한 사무소 소속 건축사의 실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할 경우 설계 수행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 이는 젊은 건축가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 건축사 중심의 경력 관리(미국)<sup>46)</sup>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경력관리가 담당 건축사가 아닌 사무소 대표 및 등재 건축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건축 인허가 도면에 담당 건축사 개인의 날인(stamp)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경력 확인 시 수행 사무소 내 수행 건축사의 재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무실에 소속된 건축사 단위의 경력관리가 가능

46) 심경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해외출장보고서 미국 워싱턴·뉴욕, pp.7-8.

## 2) 전문직으로서 건축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회사형태 도입의 필요성

### □ 건축사사무소 양극화 문제 심화 우려

- 소형 건축사사무소는 갈수록 영세해지고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공건축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들이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필요

### □ 건축시장 침체와 건축사사무소 영세화에 따른 대외 신인도 및 경쟁력 약화

- 건축사사무소가 경쟁력을 갖고 공공 및 민간 건축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책임 한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적 등을 공유하여 대외 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건축사들이 협동하여 건축사법인을 구성하고 책임 재산을 확보하게 되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가능

### □ 건축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고려되지 않은 실적 관리

- 현행 건축사법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 또는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들은 건축설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폐해 발생. 이는 건축사들이 꾸준하게 업무 경험을 쌓고 독립한 후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제한 요인이 됨. 건축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건축사의 책임과 권한, 실적 관리 원칙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필요

## 2. 기 제출된 건축사법 개정안 검토

### 1) 건축사법인 신설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 개요

#### □ 추진배경

- 건축사 업무의 조직화 ·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변화하는 건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sup>47)</sup>
- 건축물 유지 · 관리, 조사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건축사 책임 하에 일부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 형태로서 건축사법인 도입 논의<sup>48)</sup>

#### □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건축사무소에 관련 기술 집적, 건축설계인력 양성,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사법인 신설 요구
  - 2010년 8월 27일 박기춘 의원은 건축사법인 신설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발의안(의안번호 제1809193)에서는 건축물의 품격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관련 기술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설계인력의 양성과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인”的 신설을 요구하였음
- 업무법인, 신고기준 등 법인 구성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발의안에서는 타 전문직종(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법인(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이 5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사법인”을 신설하여, 법인의 명칭 사용 의무와 건축사법인 구성원은 건축사무소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사법인의 업무범위, 신고기준, 신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였음

47) 국토해양위원회(20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1) 검토보고서, p.3.

48) 대한건축사협회 담당자 면담(2012.08.23) 내용 참조

## 2) 건축사법 개정안의 의의 및 한계

### □ 건축 분야에서 전문직법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건축사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타 전문직의 특성을 일부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업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회사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는 건축 업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회사형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됨

### □ 법인 설립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 2011년 3월 국토해양위원회의 개정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위의 개정안은 ① 건축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미비, ② 건축사법인 구성원의 경업(競業) 금지 관련 법문 정비 필요, ③ 수탁기관(건축사법인)의 자격기준에 대한 위임의 근거 규정 미비, ④ 법률에서의 기본 사항 규정 필요, ⑤ 대통령령으로의 위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 □ 건축사법인 관련 기본 사항<sup>49)</sup>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표 부록 1-6] 건축사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 사항

구분	내용
구성	-건축사법인의 정관 : 정관의 기재사항(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정관변경의 신고 등 -건축사법인의 구성원(사원, 대표자) : 구성원 자격, 최소 구성원 수, (당연) 탈퇴 등
업무	-건축사법인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해산	-법인의 해산사유, 법인해산의 신고
설립취소	-법인의 설립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기타	-법인명칭의 사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경업금지, 준용규정 등 법인관계의 규율에 관한 기본적 사항

49) 국토해양위원회(20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준의원 대표발의 1) 검토보고서, p.7.

### 3. 타 전문직 법인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 1) 전문직 법인 개요

##### ① 전문직 법인의 특성

###### □ 전문직 법인 도입 배경

- 전문직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공유
  -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전문교육과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단순한 영업동기 이상의 직업윤리를 요한다는 점, 직렬별 특별법이 존재<sup>50)</sup>
  - 전문직 법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sup>51)</sup>

###### □ 전문직 법인 설립 목적

- 전문직 법인은 법인 구성원 각자가 독자적으로 행하기 힘든 직무를 서로 협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함으로써,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각 법인 구성원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sup>52)</sup>
  -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산 중심인 경우 주식회사 제도를 취하게 되면 사업구조, 기업조직, 기업지배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영자와 종업원의 기업활동의 공헌에 대한 이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와의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운영은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sup>53)</sup>

50) 박상근(2002),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2002:12(Vol. 555), p.237-238.

51) 이훈종(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p.301.

52) Ibid., p.238.

53) 윤현석(2004),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p.112.

## □ 전문직 법인의 회사형태

- 전문직 법인은 상법상에 규정하는 회사형태의 규정을 준용
  -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총 5가지이며 그 중 전문직 법인은 대표적으로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은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변리사법인, 노무법인이며,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은 법무법인(유한), 관세사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임
  - 변호사의 경우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그리고 민법의 조합 형태인 법무조합 등 법인 형태의 선택권이 자유로운 편임

[표 부록 1-7] 회사 형태와 전문직 법인과의 관계

법	구분	형태	규정	종류
상법	인적 회사	합명 회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 제1항)</li> <li>-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법 제47조 제2항)</li> <li>-변리사법인(변리사법 제6조의10 제2항)</li> <li>-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li> <li>-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li> </ul>
		합자 회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li> </ul>
	인적·물적 회사	유한책임 회사	-	-
	물적 회사	유한 회사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법인(유한)(변호사법 제58조의17)</li> <li>-관세사법인(관세사법 제17조 제5항)</li> <li>-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40조 제2항)</li> <li>-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16)</li> <li>-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li> </ul>
		주식 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li> </ul>
민법	재단 법인	-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인(의료법 제44조)</li> <li>-약국법인(약사법)</li> </ul>
	조합	-	특별법	-법무조합

## ② 전문직 법인 현황

### □ 합명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 도입 현황

- 구성원 전원이 무한 책임 의무를 가져 책임재산 확보
  -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설비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당할 만한 책임재산을 갖출 필요가 있음. 상법상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실상 책임재산이 상당 정도 확보됨<sup>54)</sup>

[표 부록 1-8] 법무법인 및 합명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 도입 현황

년도	변호사법	합명회사		
		법무사법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1949.11.7.	변호사법 제정			
1954.4.3.		사법서사법 제정		
1961.12.23.			변리사법 제정	
1982.12.31.	법무법인(합명회사) 제도 도입 (전문개정)			
1985.7.1.				공인노무사법 제정
1990.3.1.		법무사법으로 명칭 변경(전문 개정)		
1990.4.7.				노무법인 제도 도입(일부개정)
1997.1.1.		법무사합동법인 제도 도입(전문 개정)		
2005.7.28.	법무법인(유한) (유한회사)과 법 무조합 제도 도 입(일부개정)			
2000.7.1.			변리사법인 제도 도입(일부개정)	

54) 양규웅 변호사 자문회의(2012.07.24) 의견 참조.

□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 도입 현황

-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는 전문직 법인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의 대형화 유도<sup>55)</sup>
  - 법무법인의 경우, 2005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이 도입됨. 이 경우 법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당해 업무에 관여한 변호사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합명회사의 불합리한 점 개선<sup>56)</sup>

[표 부록 1-9] 법무법인 및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 도입 현황

년도	변호사법	유한회사		
		관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1949.11.7.	변호사법 제정			
1961.9.9.				세무사법 제정
1966.9.1.			공인회계사법 제정	
1968.12.31.			회계법인 제도 도입(일부개정)	
1982.12.31.	법무법인(합명회사) 제도 도입(전문개정)			
1996.7.1.		관세사법 제정		
1997.3.1.			회계법인 제도 완화(전문개정)	
2001.4.1.			회계법인 제도 완화(일부개정)	
2002.12.30.				세무법인 제도 변경(일부개정)
2005.7.28.	법무법인(유한)(유한회사)과 법무조합 제도 도입(일부개정)			
2007.10.20.		관세사법인 제도 변경(일부개정)		

55) 이춘종(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p.303.

56) 양규웅 변호사 자문회의(2012.07.24) 의견 참조.

## □ 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

- 2006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지식기반형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국가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형태임<sup>57)</sup>
  - 전문직들은 합명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나, 법인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 이에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전문직 법인이 생김

[표 부록 1-10] 유한책임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li><li>-주식회사의 장점과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의 유연성 확보할 수 있는 조합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li></ul>
설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기</li><li>-사원과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사항들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강제함</li><li>-인적자산을 중심인 회사로서 누가 업무를 집행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li></ul>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할 의무를 가짐</li><li>-출자의 대상은 금전 기타 재산은 가능하지만,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li><li>-신용이나 노무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임</li><li>-출자를 한 사원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li></ul>
업무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원은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해야 하고, 각 업무집행상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경업금지의무 등을 지며 회사를 대표함</li></ul>
경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관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손익은 동일한 비율로 분배</li><li>-미국의 경우 출자 시 노하우, 아이디어, 기술 등의 무형자산의 출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분배가 가능</li><li>-우리나라의 경우 정관의 규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li></ul>

\* 출처 : 고지성(200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57) 고지성(2006),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관한 비교」, 흥익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119-120.

## 2) 법무법인 운영실태

### ① 도입 배경

####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1982년 도입

- 변호사 단독으로 업무를 하거나, 변호사법에 정한 형태의 법인만을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sup>58)</sup>
  - 변호사는 타인과 동업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변호사 단독으로 업무를 하거나, 변호사법에서 정한 형태의 법인만을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

### ② 법무법인의 종류 다양화

#### □ 법무법인

- 상법상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함. 따라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구성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됨

#### □ 법무법인 유한

- 2005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 문제 등 기존 법무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한 법무법인 유한 제도가 도입됨<sup>59)</sup>

#### □ 법무조합

- 법무법인(유한)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변호사법에서는 특별히 소송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음<sup>60)</sup>

58) 양규응 변호사 자문 의견서

59) 김성범(2007), 「우리나라 로펌 형태에 대한 외국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p.63-64.

60) 손창완(2009), 「우리나라 변호사 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1호, p94.

[표 부록 1-11] 법무법인 관련 변호사법 개정 연혁

년도	주요 내용
1949.11.7.	-변호사법 제정
1982.12.31.	-법무법인(합명회사) 제도 도입(전문개정)
2005.7.28.	-법무법인(유한)(유한회사)과 법무조합 제도 도입(일부개정)
2008.9.29.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
2011.5.17.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 ③ 현행 변호사법에서의 법무법인 관련 조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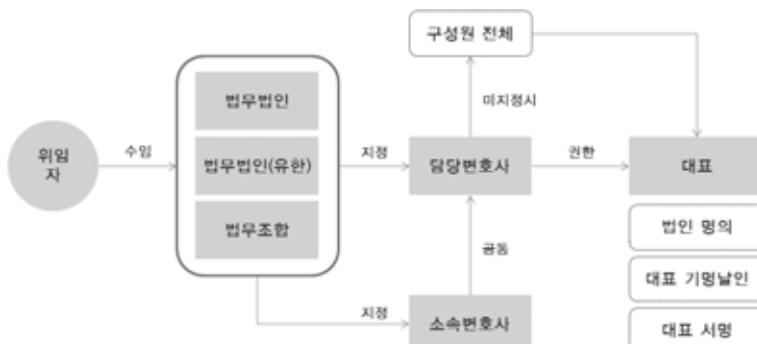
[표 부록 1-12] 변호사법 법무법인 관련 조문(법률 제10922호, 시행 2012.1.26)

구분	조문명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제41조	설립 절차	제51조	업무 제한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3조	등기	제53조	인가취소
	제44조	명칭	제54조	해산
	제45조	구성원	제55조	합병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제55조 의2	조직변경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56조	통지
	제48조	사무소	제57조	준용규정
	제49조	업무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의 2 법무 법인(유한)	제58조의 2(설립) ~ 제58조의 17(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의 3 법무 조합	제58조의 18(설립) ~ 제58조의 31(다른 법률의 준용)			

#### ④ 법무법인의 회사 구조 및 사원의 책임 관계

##### □ 법무법인 구성

-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되는 구성원변호사(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추가로 소속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sup>61)</sup>
  - 일반적으로 정관 기재사항으로 법무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변호사 중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변호사를 정해야 함<sup>62)</sup>
-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은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함
  - 담당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변호사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변호사와 공동으로 지정해야 함<sup>63)</sup>



[그림 부록 1-1] 법무법인에서의 변호사 업무

- 구성원변호사는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 때 책임의 주체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변호사임

61) 변호사법 제47조, 제57조에 의한 법 제22조의 준용

62) 상법 제207조 준용

63)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 수임사건에 맡은 담당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업무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서명<sup>64)</sup> 하며, 소속변호사는 업무경력을 쌓은 후 구성원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림 부록 1-2] 법무법인 조직도 및 사원의 책임 유무

### 3) 전문직 법인 변화 경향

- 자격에 관한 특별법들에서는 각 전문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한 전문직법인 제도를 도입. 전문직의 회사형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
- 과거에는 대부분의 전문직법인에 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지만 최근의 입법 추세는 대체로 전문직법인에 대하여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는 상황<sup>65)</sup>
- 유한책임회사 제도(2006 신설)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식기반 형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sup>66)</sup>

64) 변호사법 제50조 제7항

65) 이훈종(2005),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p.302.

66) 고지성(2006),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관한 비교」, 흥익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121.

## 4. 건축사법인 도입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1) 건축사법인 제도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 □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조직 구성

- 건축사는 전문직의 특성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건축 분야 고유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인 구성 요건을 규정
  - 건축사법인의 조직구조는 구성원건축사, 소속건축사와 함께 건축 사보 및 실무수련자로 구성하며 구성원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되, 우리나라 건축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 법인 설립 조건에 구성원건축사의 최소 인원수와 대표건축사의 경력 요건 등을 명시하되, 법인 설립 요건이 다소 완화되는 최근의 전문직법인 변화 추세를 반영

#### □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준용

- 건축사법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의 장점과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합의 장점을 결합한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준용
  - 전반적인 건축사법인의 운영을 위한 대표건축사를 정하고 업무에 따른 담당건축사를 정하여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사가 대표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함
  - 구성원 건축사 업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무한 연대 책임보다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한정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제도 도입

#### □ 적절한 실적 및 경력 관리를 위한 업무 독립성 인정

- 건축사법인은 업무에 대한 담당건축사를 소속건축사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구성원건축사와 공동으로 지정

- 담당건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된 건축사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건축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실시하도록 함

※ 법무법인에서의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은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하는데, 담당변호사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일 경우에는 구성원변호사와 공동으로 지정(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업무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실시함(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 2) 기대효과

- 다양한 규모와 업역을 가진 건축사사무소의 상생적 발전
  - 건축사법인 제도를 통해 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구성원 건축사의 실적을 공유하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건축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건축사법인 도입은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규모의 사무소들이 균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건축사사무소 대외 신인도 및 경쟁력 강화
  - 개별 건축사들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서로 협동하여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 체계와 재무 구조를 갖출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대외 신인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건축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법인 구성원 및 소속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 합리화
  - 건축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 구성원과 소속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적 관리를 합리화할 경우, 소속 건축사가 수령 기간을 거쳐 구성원 건축사가 되거나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자신이 행한 업무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